



www.jarip.or.kr



2014년
**자립정착금
사용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CONTENTS



I

006 서론

II

010 이론적 배경

010 1. 자립정착금 개념 및 현황

- 010 가. 자립정착금의 개념
- 011 나. 자립정착금 현황

014 2. 자립지원정책 현황

- 014 가. 디딤씨앗통장(CDA)
- 015 나.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 및 운영
- 016 다. 주거지원
- 018 라. 대학등록금 등 진학 및 취업지원

III

022 자립정착금 사용 실태조사 결과

022 1. 조사개요

- 022 가. 조사절차 및 내용
- 024 나. 자료분석

024 2. 일반적 특성

026 3. 자립정착금 인식 및 관련교육 이수현황

- 026 가. 자립정착금 인식
- 028 나. 관련교육 이수현황

030 4. 자립정착금 사용계획 및 입금방식

- 030 가. 수령시기
- 031 나. 사용계획
- 038 다. 입금안내 및 방법

040 5. 자립정착금 사용현황

- 040 가. 평균수령금액
- 041 나. 실제 사용항목 및 사용금액
- 048 다. 추가 사용항목 및 사용금액
- 052 라. 추가비용 마련방법 및 마련금액
- 055 마. 자립정착금 미사용분에 대한 사용계획
- 057 바. 대출현황

059 6. 자립정착금의 도움 및 만족도

- 059 가. 초기자립 도움정도
- 060 나. 금액에 대한 만족도
- 061 다. 자립에 필요한 기간
- 063 라. 초기정착에 필요한 사용항목
- 068 마. 자립의 어려움
- 070 바. 도움이 가능한 기관 또는 사람
- 073 사. 자립인식 및 자립생활 향상정도



2014년 자립정착금
사용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077 **7. 자립상황**
 077 가. 과거 및 현재 기초생활수급 경험 비교
 079 나. 과거 및 현재 주거형태 비교
 083 다. 과거 및 현재 직업 비교
 084 라. 과거 및 현재 직종 비교

085 **8. 소결**

IV
**자립정착금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델파이 조사를 중심으로**

090 **1. 조사개요**
 090 가. 조사대상
 090 나. 조사도구 및 자료분석

091 **2. 조사결과**
 091 가. 1차 델파이조사 결과
 095 나. 2차 델파이조사 결과

102 **3. 소결**

V

108 자립정착금 자립비용

108 **1. 수령한 자립정착금에
따른 자립비용**

110 **2. 개별 지출항목에 따른
자립비용**

111 가. 주거비용
 112 나. 생활비용
 112 다. 학업비용
 113 라. 의료비용

113 **3. 소결**

VI

116 결론 및 제언

125 [참고문헌]

126 [부록] 자립정착금 사용 실태조사
설문지



I. 서론

1. 서론



“아동복지시설에 수용된 청소년들 가운데 매년 3천5백여명이 별다른 준비나 대책도 없이 사회로 ‘내던져지고’ 있어 퇴소 후 주거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 퇴소 시 정착금을 포함한 돈은 … 대부분이 월세 보증금 조차 마련하지 못했다고 … 현재 당면한 어려움으로 주거문제와 생활고를 꼽고 있어 …”¹⁾

“보육원 출신들이 당장 맞닥뜨리는 건 지독한 생활고라고 … 수입이 없다보니 지원금은 바로 바닥이 났다. … 보육원을 나오면 대부분 자립생활관-고시원-단칸방 등 불안정한 형태의 주거지를 전전한다. 일부는 노숙자로 전락하기도 …”²⁾

위의 두 글은 아동복지시설 아동은 퇴소 후 주거문제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으며, 자립정착금 지원을 받고 있지만 불안정한 주거지로 전전할 수밖에 없는 시설 퇴소아동의 현실을 담은 내용이다. 두 개의 글에서 다른 점을 찾아본다면, 위의 글은 지금으로부터 23년 전, 1992년 2월 보도자료 내용을 발췌한 것이며, 아래의 글은 2014년 4월 보도자료의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23년이 지난 지금도 시설 퇴소아동은 여전히 주거문제와 생활고를 걱정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시점에서 또다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의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은 입소와 함께 만18세에 맞닥뜨리게 될 ‘자립’을 준비하게 된다. 이들 뿐 아니라 모든 아동들도 자립을 목표로 살아가야 한다. 하지만 이들의 자립은 일반아동의 자립과 같지 않다. 일반아동에게 자립은 원가족으로부터 분리되어 나가는 것으로써 독립의 시기를 본인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선택’으로, 심리·정서적 또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때 기댈 곳이 있다는 점에서 구분된

다. 반면 시설 퇴소아동의 대부분은 5년에서 10년 이상 시설의 보호를 받다가 만18세에 이르러 시설 밖으로 나가게 된다. 본인의 선택보다는 법에 의해 분리를 경험하는데, 시설 퇴소아동에게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적인' 자립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의 보호가 종결되는 시기는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전환되는 시점이자, 아동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삶의 방향을 정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보호가 필요한 퇴소자에 대한 자립서비스를 제공하고, 퇴소 이후 삶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끔 주거, 진학, 취업 등의 자립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별, 보호체계별 자립지원이 차이가 발생한다.

1981년 아동복지법의 전면개정³⁾ 이후 2000년까지 시설 퇴소아동에 대한 자립비용 지급에 대한 근거가 명시되었다. 아동복지시설 보호종결아동에 대한 생활자금(생업자금) 조항이 추가되며 당시 자립정착금은 국가와 지자체가 100분의 80이상을 부담하며, 보조금 과부족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교부하거나 반납하도록 되어 있었다.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당시에도 지자체별 자립정착금이 상이하였지만 국가와 지자체의 비용부담을 통해 보호아동에 대한 책임이 상호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05년 자립정착금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고 '12년도 가정위탁보호아동이 보호대상자로 확대됨에 따라 자립정착금 지원이 어려운 사각지대가 발생하였다. 현재 정부에서는 자립정착금을 300만원 이상 지급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그 지급액이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로 상이하며, 심지어 자립정착금이 미지급되고 있는 시도와 보호체계도 있다. 이 뿐 아니라 퇴소아동의 안정적인 자립지원의 기초자산이 되는 자립정착금은 지난 33년간 지급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적절한 금액산출이 전무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시설 퇴소아동과 가정위탁 보호종결아동이 지금까지 수령한 자립정착금을 어떠한 용도로 얼마를 사용하였는지 사용현황을 파악하고 자립의 의미와 기준을 살펴봄으로써 자립비용에 대한 최저금액을 제안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 퇴소아동 및 가정위탁 보호종결아동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지원대책 시급". 연합뉴스, 1992. 2. 26.

2) "500만원 쥐고 보육원 나서는 그들". 중앙일보, 2014. 4. 8.

3) 1981년 아동복지법 "제27조 제4호 아동의 보호 관리에 요하는 비용(시설퇴원 시의 생업자금을 포함한다)" 조항 추가



II. 이론적 배경

II. 이론적 배경



1. 자립정착금 개념 및 현황

가. 자립정착금의 개념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보호아동은 만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보았을 때에 퇴소 또는 위탁종료를 하게 되는데, 이후 보호종결아동은 자립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놓인 아동에게 안정적인 사회정착에 따른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자립정착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38조 자립지원에 대한 조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그 내용으로는 “1. 자립에 필요한 주거, 생활, 교육, 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지원, 3.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5. 그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인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관련 교육,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의 지원”이 의무조항으로 기재되어 있다.

'03년도 아동복지사업안내에서 자립정착금의 지원 목적을 살펴보면,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만18세 이상의 아동이 사회에서 자립하는데 필요한 생활용품 구입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자립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정착금은 자립에 필요한 생활용품 구입에 대한 부분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하지만 현재 자립정착금의 경우 시도 및 보호체계에 따라 지원액뿐만 아니라 지원여부도 크게 달라진다. 이는 같은 보호체계일지라도 다른 지역에서 보호를 받았을 경우 자립정착금의 차

이가 발생하며, 자립초기에 생활의 질에 대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외에도 자립정착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제도가 있는데, 북한에서 이탈한 주민의 정착지원제도이다. 북한이탈주민은 오랫동안 살아왔던 터전에서 벗어나 새로운 터전을 찾아 살아가려는 사람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의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여 진다. 하지만 보호종결아동에 대한 자립정착금이 생필품 구입 등으로 초점 맞추어져 있어 ‘보호종결아동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이라는 의미에 부합하는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진다.

정부의 보호에서 벗어나 새로운 환경에서의 자립과 사회정착이라는 점을 비추어 본다면 아직까지 자립정착금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적절하다고 보여 진다. 또한 아동복지법 상 자립정착금이란 용어를 명시하고 있고, 아동복지사업안내에서 자립지원정착금과 자립정착금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어 자립정착금이라는 용어를 본 연구에서도 그대로 사용하고자 한다. 또한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과 가정위탁 보호종결아동으로 구분된 명칭을 아동복지정책의 보호를 종결한 의미에서 ‘보호종결아동’으로 총칭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나. 자립정착금 현황

1981년 아동복지법의 전면개정 이후 아동복지시설 보호종결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금의 지급근거가 명시되었다. 하지만 2005년 자립정착금 지원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고, 2012년 가정위탁아동 보호대상자가 확대되면서 시도별 자립정착금의 지급여부 및 지급액 간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간극을 좁히고자 자립정착금 300만원 이상 지급을 권장하고 있다.

2013년도 지방 재정자립도의 전국평균은 51.1%로 전체 지자체 중 절반 가까이가 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양육시설의 경우, 1981년 생업자금⁴⁾부터 지금의 자립정착금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자립지원이 되어왔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지원액이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매우 큰 폭으로 차이가 발생한다. 이에 비해 공동생활가정과 가정위탁의 경우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의 영향을 받아 자립정착금 지원제도가 미비하다.

4) 1981년 아동복지법 제27조 제4호 “아동의 보호간리에 요하는 비용(시설지원 시의 생업자금을 포함한다)”에 대한 지급조항이 추가. 그에 따른 비용은 국가와 지자체가 100분의 80이상을 부담하며, 보조금 과부족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교부하거나 반납(1982년 생활보호법 제36조 제1항 제4호)

〈표 II-2〉 2013년 시도별 재정자립도⁵⁾

(단위 :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자립도	90.2	57.4	52.8	71.0	46.6	58.3	71.2	72.6	26.9	34.2	35.5	26	21.4	28.3	43.3	28.5

2013년도 보호종결아동에 대한 자립정착금 지원은 총 1,348명, 약 66억 원이었다. 자립정착금의 100%를 지원하는 시도가 있는가 하면, 자립정착금의 일부만 지원하는 시도가 있었다.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자립정착금은 100~500만원까지 전체 17개 시도에서 100%지원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부산지역(400만원)과 제주지역(500만원)은 자립정착금이 상향조정되었다. 양육시설의 자립정착금은 시도 간 금액차이 뿐만 아니라 시도 내 군구단위에서도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급방식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면, 한 시도에서는 시단위에서 자립정착금 300만원을 지급하고 있었으며, 예산확보가 가능한 군구단위에서 100만원을 추가지급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같은 지역에서도 자립정착금 지원액의 편차가 발생하고 있었다. 만약 군구단위에서 자립정착금의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다면, 추가적으로 지급하던 자립정착금 지급액은 지역마다 매년 변경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또 한 지역은 양육시설 보호종결아동에게 400만원을 지급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400만원 중 주거안정비 3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자립정착금은 단지 100만원뿐이었다. 만약 보호종결아동이 LH전세주택지원을 받을 경우 400만원 중 자립정착금 100만원만 지급되어 실제로 생필품을 구입하고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비용으로는 부족하였다. 위 지역의 양육시설은 100% 지원이 가능하더라도 그 기준과 지원액이 상이하였다.

공동생활가정은 '13년에 총 17개 시도 중 10개 지역(58.8%)에서 자립정착금을 지급하였으며, '14년도에는 정착금이 지급이 부재하였던 일부지역에서도 자립정착금 지급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자립정착금 조사 중 한 지역은 공동생활가정 보호종결아동에 대한 자립정착금 계획은 있었으나, 신청자의 부재로 인해 지급이 전무하였던 경우도 있었다. 또 한 예로, 한 지역에서는 두 개의 시를 제외한 시군단위의 공동생활가정 퇴소아동은 자립정착금 지원이 부재한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가정위탁 보호종결아동에 대한 '13년도 자립정착금은 17개 시도 중 7개 시도

5) 안전행정부,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현황.

(41.2%)만이 지급하고 있으며, 2014년 계획도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도 7개 지역에서 2014년 8개 지역으로 1개 지역이 추가된 것이다. 2012년 아동복지법 개정 이후 가정위탁 보호종결아동까지 대상자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자립정착금 지급에 대한 추이는 지속적으로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 진다. 하지만 2004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을 통해 아동복지시설로 전환되었던 공동생활가정의 자립정착금 지급 현황을 비추어 보았을 때, 전체 가정위탁 보호종결 아동에 대한 자립정착금 지급방식 및 지급액이 안정되기까지는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자립정착금의 지급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되기 때문에 다수의 아동이 종결하는 연초에 소진되어 이후 발생하는 보호종결아동에 대한 정착금 지급이 어려워지는 문제점 또한 안고 있다.

〈표 II-3〉 '13년 보호체계별 자립정착금 지급 현황 및 '14년 지급계획

(단위 : 만원)

구분	2013년 지급(1인당)			2013년 결산액		2014년 계획(1인당)		
	아동양육 시설	공동생활 가정	가정위탁	인원	금액	아동양육 시설	공동생활 가정	가정위탁
서울	500	500	500	236	118,000	500	500	500
부산	300	300	300	250	75,500	400	400	400
대구	300	300	-	65	146,250	300	300	-
인천	500	500	100	45	22,500	500	500	100
광주	400	400	100	56	18,200	400	400	100
대전	300	-	-	32	9,600	300	-	-
울산	500	500	500	32	16,000	500	500	500
세종	500	-	-	2	1,000	500	-	-
경기	500	500	-(시군별)	136	68,000	500	500	-(시군별)
강원	100	300(시군별)	-	26	2,600	100	300	300(시군별)
충북	500	500	500	80	40,000	500	500	500
충남	500	-	-	50	25,000	500	500	-
전북	300	300	-	72	21,600	500	300	-
전남	300	-	-	91	27,300	300	-	-
경북	500	-	-	60	30,000	500	-	-
경남	300	-	-	80	24,000	300	-	-
제주	300	-	300	35	10,500	500	500	500
합 계	-	-	-	1,348	656,050	-	-	-

[출처] 아동자립지원사업단. 전국 17개 시도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2014년도 지급현황 및 계획조사(2014.10.~11.)

2. 자립지원정책 현황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 보호아동의 자립지원은 자립준비 역량강화 및 위탁종결 후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자립실현을 추구한다. 아동복지법 제38조에 의해서도, 아동복지시설 퇴소 또는 보호아동의 위탁종료 이후 자립에 필요한 주거, 생활, 교육, 취업 등의 지원과 자립을 위한 자산형성지원, 자립정착금 지원 등 퇴소 및 위탁종결아동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국내 자립지원정책과 자립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으로는 앞서 설명한 자립정착금 지원 외에도 자산형성지원을 위한 아동발달지원계좌(CDA), 시도 아동자립지원단 운영, 주거지원인 자립지원시설(자립생활관) 운영, LH 전세주택 및 영구임대아파트, 대학등록금 지원 등 진학 및 취업지원 등이 있다. 이러한 자립지원은 자립정착금과 더불어 보호종결아동의 안정적인 자립을 돕는 데에 자원으로써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가. 디딤씨앗통장(CDA)⁶⁾

2007년 4월부터 부모가 보호 양육하지 못하여 국가에서 보호하는 시설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가정위탁보호아동, 장애인시설 보호아동, 가정복귀아동,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아동 등 63,000여 명의 아동에 대하여 정부는 아동발달지원계좌인 디딤씨앗통장사업을 최대 18년간 지원한다.

아동이 후원자의 지원을 받아 월 3만원 이내의 기본적립금을 적립하면 정부(지자체)에서도 만 18세에 달할 때까지 동일한 금액을 3만원 내에서 매칭계좌에 입금하게 된다. 적립금은 만 18세 이후 사회진출 시 학자금, 기술습득비용, 창업비용, 주거마련 비용, 의료비, 결혼자금 등으로 자립목적에 사용하도록 용도를 제한하고 있다. 보호아동의 자산형성 지원뿐만 아니라 경제/금융교육 등을 통해 아동이 자신의 자산 및 자기관리능력을 기르도록 하고 있다.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경제활동에 소요되는 초기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일은 빈곤을 예방할 수 있다.

6) 디딤씨앗통장사업 홈페이지. www.adongcda.or.kr

〈표 II-4〉 2014년 디딤씨앗통장 가입자 수

(단위 : 명)

구분	합계	시설보호 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소년소녀 가정아동	공동생활 가정아동	장애인시 설아동	가정복귀 아동	기초생활 수급자가정 아동
가입자수	63,607	18,536	15,617	1,075	2,629	2,982	2,447	20,321

나.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 및 운영

지자체는 아동복지법 제40조에 의해 보호종결아동의 자립을 위해 각 지역에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현재 서울, 부산, 인천, 강원, 충남, 경북, 총6개 시도에서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17개시도 중 35.3%만이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립지원전담기관은 자립지원을 위한 사업개발 및 운영, 지역 내 자립지원데이터 관리,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례관리협의체를 구성하여 월1회 이상의 사례회의 운영, 지역사회 자원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007년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퇴소(위탁종결)아동의 자립을 돕기 위해 각 시설별 자립지원전담요원을 배치하는 제도를 마련되었다. 아동복지시설은 10명 이상의 아동양육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30명 이상의 자립지원시설에 1명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며(100명 이상일 경우 1명 추가), 공동생활가정은 시도별 아동 100명당 1명씩 배치를 권고하고 있다.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지역센터별 자립지원전담요원 1명을 반드시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양육시설 및 보호치료시설의 경우 배치기준에 맞게 자립지원전담요원이 100% 배치된 상태이며,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전체 17개시도 중 광주, 전남, 강원지역을 제외한 13개소에 배치되었고 추가배치 중에 있다. 하지만 공동생활가정은 아직 전담인력의 미배치되어 있다.

자립지원전담인력은 아동이 입소 후 3개월 이내 원가족 복귀계획 수립하고, 아동의 연령별·영역별 자립기술 평가 및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또한 만15세 이상인 아동에 대한 자립기술평가 및 자립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 입력, 퇴소에정인 아동의 자립정착금 사용 계획서 작성을 지원하고 보호종결 후 5년 이내 아동의 사례관리를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배치된 자립지원전담요원이나 기존의 인력을 활용하여 보호 중인 아동과 퇴소한 아동을 대상으로 자립지원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다. 이는 2006년 에 개발되었으

며, 아동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일상생활기술, 자기보호기술, 사회적 기술, 진로탐색 및 자기취업기술, 돈관리기술, 지역사회자원활용기술, 직장생활기술, 다시 집 떠나기, 총8개의 핵심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다. 주거지원

국토교통부에서는 아동복지시설 보호종결아동 및 가정위탁 보호아동에 대한 주거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해당 지원사업은 국민주택기금으로 전세주택을 마련하여 지원함으로써 사회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주거생활 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국토교통부, 2014).

LH 전세주택 지원은 아동복지시설 보호종결아동이 만22세가 되는 때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신청은 만22세가 되기 6개월 전에 해야 한다. 아동복지시설 보호종결아동은 시설의 장 또는 아동자립 지원사업단의 장에게 신청하고, 대리양육 및 친인척 위탁가정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 담당 사회복지사나 공무원에게 신청할 수 있다. 만20세까지는 무이자로 지원되며, 만20세 이후에는 지원금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게 된다. 또한 2년 단위로 3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며 그 지원금액은 수도권, 광역시, 그 밖의 지역마다 다르다(국토교통부, 2014).

지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소년소녀가장,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위탁가정 등을 대상으로 전세주택 8,459호를 지원하였다(국토교통부, 2014). 이는 연평균 약939.9세대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013년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1,150명⁷⁾ 중 전세주택을 지원받은 수는 총376세대(명)로써, 이는 당해년도 전체 퇴소아동 대비 32.7%, 전세주택 연평균 지원호수인 939.9세대 중 약 40%가량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LH 전세주택 지원은 일반가정위탁을 제외한 대리양육 및 친인척 위탁가정을 지원하고 있다. 위탁가정은 아동복지시설 보호종결아동과는 달리 보호 중인 경우에만 LH 전세주택이 지원되어 만18세 이후 종결되는 아동에 대한 주거지원이 전무하다. 이 뿐 아니라 일반가정위탁 보호종결아동은 혈연관계인 대리양육 및 친인척위탁가정의 보호종결아동보다 주거문제에 취약할 수 있다.

위의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의 LH전세주택 지원 이외에도 대학생 전세주택이 지원되고 있다. 아동복지시설 보호대상 중 18세에 달하여 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퇴소한 자로서 만23세 이하의 자로

7)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 '09~'13년 퇴소아동 현황.

타 지역 출신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영구임대아파트는 무주택자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에 대해 시설의 장 추천서 작성 후 퇴소아동의 거주희망지역 시도지사에 입주를 신청할 수 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거지원은 가정위탁보호 중이나 퇴소 후 갈 곳 없는 대상자의 중요한 자원이며, 추후 지속적으로 그 지원내용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진다.

이뿐 아니라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기획사업으로 지원하고 아동자립지원사업단이 주관하는 월세지원사업은 현재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을 대상으로 초기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주거(월세)를 지원하고 있다. 이렇듯 주거와 관련된 다양한 지원의 활용은 퇴소아동의 초기정착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

〈표 II-5〉 2013년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전세임대 지원 현황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지원인원(명)	73	48	24	12	13	21	2	83
구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지원인원(명)	4	4	31	14	6	24	13	4

[출처] 국토교통부, 2013년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전세임대 지원 현황 자료.

자립생활관은 전국 7개 지역에서 12개소의 자립지원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아동복지시설 보호종결아동 및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를 대상으로 만18세에서 만25세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자립지원시설이다. 이들에게 일정기간 숙소를 제공하여 안정된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국 12개의 자립생활관에서는 주거, 상담, 정서, 자립서비스 등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자립지원시설은 단 7개 지역에 위치한 12개소의 자립생활관이 보호종결아동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그 수가 매우 적다.

또한 아동복지시설 보호종결아동이 대학진학 시 일정비율을 정하여 대학기숙사에 우선 배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각 대학별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였을 때, 아동들의 자립을 위한 주거마련의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안고 있다.

아동복지시설 보호종결아동의 불안정한 주거문제를 위한 대안으로 서울지역에서는 5~7명의 아동이 모여 자립하여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도록 '자립형 그룹홈' 10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운영자가 함께 거주하지는 않지만 실질적인 자립을 돕기 위한 자격증 취득이나 취업지원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라. 대학등록금 등 진학 및 취업지원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2014년 평균대학등록금 현황⁸⁾에 의하면, 4년제 대학 평균등록금은 554.5만원이며,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은 571.6만원이다. 현재 보호종결아동이 대학진학 시, 정부는 학기 대학등록금 지원을 지자체에 권고하고 있다. 해당 지자체 예산 확보여부에 따라 시도별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이 상이하게 나타난다. 다음의 <표 II-6>에 의하면, 17개시도 중 아동양육시설은 13개시도(76.5%), 공동생활가정은 9개시도(52.9%), 가정위탁은 8개시도(47.1%)가 대학등록금을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2014년 현재 대학등록금을 지급하고 있는 지역의 평균 등록금은 약 317만원으로, 전체대학의 평균 대학등록금인 554만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다만 대전지역의 아동양육시설을 대상으로 실비를 지급하고 있어 가장 현실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해당지원이 현실적인 지원을 토대로 지급하고 있는 지역이 확대된다면 실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여 진다.

<표 II-6> 2014년 시도별 대학등록금 현황

(단위: 만원)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세종	울산	경기
양육시설	300	400	250	300	-	실비	-	500	400
공동생활가정	300	400	-	300	-	-	-	500	-
가정위탁	300	400	-	300	-	-	-	500	-
구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양육시설	200	200	500	200	100	-	-	300	
공동생활가정	200	200	500	200	-	-	-	300	
가정위탁	200	200	500	200	-	-	-	-	

[출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국 17개시도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2014년도 대학등록금 조사 실시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대학등록금 외에도 정부에서는 한국폴리텍대학 진학 시 입학 우선권 부여 및 외부장학재단을 통한 장학금 100%를 지급하고 있다. 퇴소아동이 해당학교에 입학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 강서, 정수 캠퍼스를 제외한 24개의 캠퍼스에 성적과 관계없이 입학우선권을 부여하여 철저한 학업관리 및 자력증 취득 지원을 통해 퇴소아동의 안정적인 취업을 돕고 있으며, 학비도 무료이거나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을 통해 100%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4).

8) 대학알리미 홈페이지. www.academyinfo.go.kr

또한 정부에서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국가장학금도 첫 학기에는 아무런 조건 없이 학자금을 지급하고 있다. 다만 2학기부터는 어느 정도의 성적을 유지하는 조건 안에서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진학뿐만 아니라 취업지원도 진행되고 있다. 지원내용으로는 고용노동부의 고용센터를 활용한 자격증 취득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 취업서비스 제공, 직업능력지식포털, 커리어넷 등이 있으며, 그 밖에도 민간에서 지원하는 자격증 취득비 지원사업 등이 있다.

위의 자립정착금, 대학등록금, 주거마련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지원현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1-7〉 2014년 보호체계별 지자체 지원현황

(단위 : 만원)

구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자립정착금 ⁹⁾	주거마련비	대학등록금	기타비용	자립정착금 ¹⁰⁾	주거마련비	대학등록금	기타비용	자립정착금 ¹¹⁾	주거마련비	대학등록금	기타비용
서울	500	-	300	-	500	-	300	-	500	-	300	-
부산	400	-	400	-	400	-	400	-	400	-	400	-
대구	300	-	250	-	-	-	-	-	-	-	-	-
인천	500	-	300	-	500	-	300	-	100	-	300	-
광주	400	-	-	-	400	-	-	-	100	-	-	-
대전	300	-	실비	-	-	-	-	-	-	-	-	-
울산	500	-	500	100	500	-	500	100	500	-	500	100
세종	500	-	-	-	-	-	-	-	-	-	-	-
경기	500	-	400	-	500	-	-	-	-	-	-	-
강원	100	300	200	-	300 ¹²⁾	-	200	-	-	-	200	-
충북	500	-	200	-	500	-	200	-	500	-	200	-
충남	500	-	500	-	500	-	500	-	-	-	500	-
전북	300	-	200	-	300	-	200	-	-	-	200	-
전남	300	-	100	-	-	-	-	-	-	-	-	-
경북	500	-	-	-	-	-	-	-	-	-	-	-
경남	300	-	-	-	300	-	-	-	-	-	-	-
제주	500	-	300	-	500	-	300	-	500	-	-	-

※ 기타비용: 취업준비를 하는 퇴소예정인 아동을 대상으로 취업지원비로 지급

9) 시설퇴소 및 위탁종결 시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자립정착금으로써 주거마련 및 생필품 구입 등 다양한 항목의 자립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음.

10) 상동

11) 상동

12) 나전세주택 지원 또는 그 외 주거지원을 받을 경우 중복지원 불가.



Ⅲ. 자립정착금 사용 실태조사 결과

Ⅲ. 자립정착금 사용 실태조사 결과



1. 조사개요

본 조사는 전국의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종결아동 4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자립정착금 인식 및 관련 교육 이수현황, 자립정착금 사용계획 현황, 자립정착금 사용현황, 자립정착금 입금방법, 초기정착의 필요항목 및 자립정착금 만족도, 자립상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가. 조사절차 및 내용

1) 설문 초안 마련 및 전문가 자문

자립정착금 사용 실태파악에 대한 기존 연구가 없어 기본적으로 자립정착금 사용용도와 사용금액, 자립정착금 외 추가 지출된 항목과 금액 등을 고려하여 설문문항을 개발하였으며, 2012년 아동양육 시설 퇴소·연장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에서 사용된 실태조사 자료 검토를 통해 자립현황에 대한 설문초안을 마련하였다.

2) 최종문항 확정 및 조사준비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문항에 대한 최종수정 및 보완이 이루어졌다. 시도 및 시군구,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의 협조를 통해 퇴소 및 종결아동의 연락처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제공받았다. 조사된 명단을 바탕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위해 웹 설문을 개발하여 시스템 오류 등을 수정하였다.

3) 본 조사 실시 (온라인 설문)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지자체 17개시도, 아동양육시설 243개소, 공동생활가정 489개소, 지역 가정위탁지원센터 17개소에서 20세 이상 30세 이하의 시설 퇴소아동 및 가정위탁 종결아동 중 연락처가 파악되어 개인정보제공에 대한 동의를 구한 종결아동 896명을 대상으로 2014년 7월 28일부터 8월 24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되었다.

퇴소 및 종결아동의 연락처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위해 시도 및 시군구,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의 협조를 받았다. 설문지 배포는 온라인으로만 이루어졌으며, 파악된 조사대상자의 전자우편으로 직접 발송하였으며,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응답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회수하였다. 이를 통해 총 415개의 활용 가능한 데이터를 수집함으로써 46.3%의 회수율을 보였으며(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72개 데이터 제외), 해당 데이터를 통계분석에 활용하였다.

〈표 II-1〉 온라인 설문지 회수 현황

구분	명단확보인원	회수인원	회수율
퇴소 및 종결아동	896명	415명	46.3%

* 데이터 활용이 어려운 72개 데이터 제외

4) 조사내용

자립정착금 사용 실태조사의 주요내용은 다음의 〈표 II-2〉와 같다.

〈표 II-2〉 자립정착금 사용 실태조사 내용

상위영역	하위영역 :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인구사회학적 특성	출생년도, 자립정착금 수령여부
	성별, 보호 중 거주지역, 현재 거주지역, 보호유형, 장애여부, 최종학력, 보호기간, 종결년도
자립정착금 인식 및 관련교육이수	자립정착금을 알게 된 시기, 자립정착금을 알게 된 경로, 자립정착금 및 관련교육이수 여부
자립 정착금 사용현황	수령시기, 지출계획, 수령금액, 정착금 사용항목 및 사용금액, 정착금 외 추가 지출이 발생한 항목 및 비용마련방법, 정착금 관리인 여부, 정착금 도움 정도, 만족도, 정착금 입금안내, 정착금 지급방법(2)
퇴소(위탁종결) 후 자립생활	과거/현재 기초생활수급여부, 과거/현재 주거형태, 과거/현재 취업 및 진학상태, 초기정착에 따른 필요항목, 조력자 여부, 자립 시 어려운 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사람, 자립을 위해 필요한 기간, 자립정도, 자립생활의 안정여부, 현재생활의 만족도

나. 자료분석

조사된 응답자료는 SPSS 20.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변수의 특성별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고, 수령한 자립정착금과 자립정착금 외 사용한 금액들의 평균값을 살펴보았다. 또한 보호체계별, 직업별, 자립정착금 금액별 교차분석을 통한 카이검증, 변수들과의 관계를 t-test나 ANOVA로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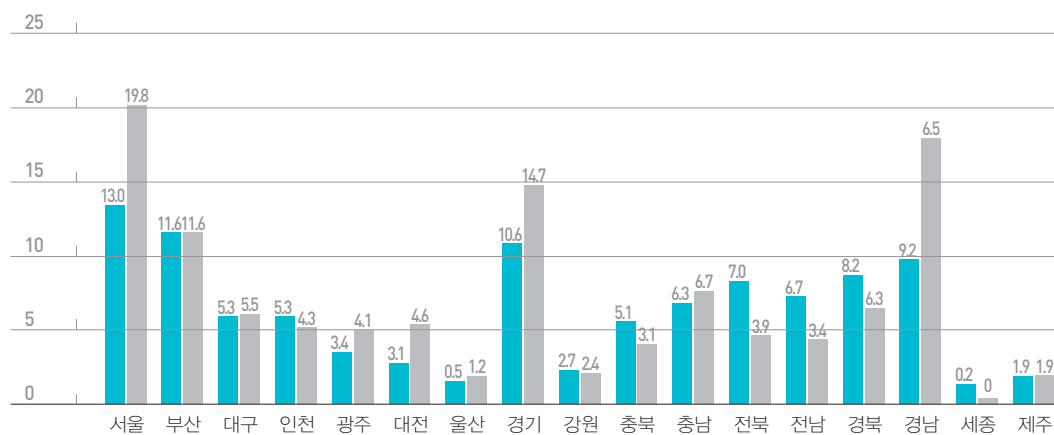
2. 조사결과

가. 일반적 특성

다음은 조사에 참여한 종결아동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전체 응답자 중 남성 48.0%, 여성 52.0%이며, 평균연령은 24세이다. 이들의 보호유형으로는 아동양육시설이 88.0%로 가장 높았으며, 공동생활가정이 7.5%, 가정위탁이 4.6%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위탁은 조부모와 함께 사는 대리가정위탁이 47.4%로 가장 높았고, 친인척가정위탁이 42.1%, 일반가정위탁이 10.5%이었다. 이들의 최종학력은 전문대졸이 36.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고졸 32.5%, 대졸 28.0%, 대학원졸이 1.7%, 중졸이하가 1.0% 순이었다. 조사대상자의 보호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이 36.5%로 가장 높았으며, 5년 이상 10년 미만 31.1%, 15년 이상 20년 미만이 24.7%, 5년 미만 7.8%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조사대상자의 84.3%가 종결이후 5년 이내의 아동이었으며, 종결된 지 평균 3.2년이 지난 것으로 나타났다(〈표 Ⅲ-3〉).

〈표 III-3〉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성별 (415)	남성	199	48.0	48.0
	여성	216	52.0	52.0
보호유형 (415)	아동양육시설	365	88.0	88.0
	공동생활가정	31	7.5	7.5
	가정위탁	19	4.6	4.6
	중졸이하	4	1.0	1.0
최종학력 (415)	고졸	135	32.5	32.5
	전문대졸(재학포함)	153	36.8	36.8
	대졸(재학포함)	116	28.0	28.0
	대학원졸(재학포함)	7	1.7	1.7
보호기간 (296)	5년 미만	23	5.5	7.8
	5년 이상 10년 미만	92	22.2	31.1
	10년 이상 15년 미만	108	26.0	36.5
	15년 이상 20년 미만	73	17.6	24.7
종결연차 (404)	1~2년차	184	44.3	45.5
	3~4년차	120	28.9	29.7
	5~6년차	71	17.1	17.6
	7~8년차	19	4.6	4.7
	9~10년차	10	2.4	2.5



〈그림 III-1〉 과거 및 현재 거주지역 비교

조사대상자의 보호 중 거주지역과 현재 거주지역을 살펴보면, 서울지역은 13.0%에서 19.8%로, 경기지역은 10.6%에서 14.7%로 두드러지게 증가하여 종결 이후 지방에서 수도권 중심으로 거주지역

을 옮기는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지난 2012년 「아동복지시설 퇴소연장아동의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중 현재 거주지역을 살펴보면, 보호종결아동의 경우 서울 21.0%, 경기 13.4%, 부산 9.6%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연장아동의 경우 부산 15.0%, 대구 12.4%, 서울 10.1% 순으로 나타나 종결 이후 대도시 지역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자립정착금 인식 및 관련교육 이수현황

가. 자립정착금 인식

1) 알게 된 시기

자립정착금에 대해 알게 된 시기를 조사한 결과는 <표 Ⅲ-4>과 같다. 전체 응답자의 56.9%는 고등학생 시기에 알게 되었고, 다음으로 중학생 시기에 28.2%, 종결이후 12.0%, 초등학교 시기나 그 이전인 경우가 2.9% 순으로 나타났다.

보호체계별로 살펴보면, 아동복지시설은 고등학생 시기에 알게 되는 경우가 57.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가정위탁의 경우 종결이후 알게 되는 경우가 47.4%로 가장 많았다. 이는 아동이 보호 중 자립정착금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기회가 적을 뿐더러, '12년 보호체계의 확대에 의한 것으로 보여 진다.

<표 Ⅲ-4> 자립정착금을 알게 된 시기

(단위 : 명, %)

구분(명)		자립정착금을 알게 된 시기			
		초등학생 시기나 그 이전	중학생 시기	고등학생 시기	종결이후
전체(415)		2.9	28.2	56.9	12
보호 체계별 (415)	아동복지시설	2.8	29	57.8	10.4
	가정위탁	5.3	10.5	36.8	47.4
직업별 (415)	진학자	1	34	49.5	15.5
	취업자	4	26.1	60.9	9.1
	무직자	1.5	27.7	52.3	18.5
정착금 금액별 (392)	100만원대		4.8	71.4	23.8
	200만원대	2.9	26.5	47.1	23.5
	300만원대	3.1	25.5	58.2	13.3
	400만원대	4.4	28.9	46.7	20
	500만원대	2.1	32	58.8	7.2

2) 알게 된 경로

다음의 <표 Ⅲ-5>는 자립정착금을 알게 된 경로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조사대상자의 69.2%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 담당자로부터 자립정착금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응답하였고, 시설선후배 또는 시설친구를 통해 알게 된 비율도 26.7%로 나타났다. 보호체계별, 직업별 자립정착금을 알게 된 경로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보호체계별로 살펴보면, 아동복지시설은 시설선후배 또는 시설친구로부터 알게 되는 비율이 27.8%인 반면, 가정위탁의 5.3%가 동일한 방법으로 알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개별적인 위탁 가정의 특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다만 가정위탁 보호종결아동은 지자체 담당공무원을 통해 알게 된 비율이 15.8%로 아동복지시설과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무직자는 진학자 또는 취업자에 비해 시설 등 자립 담당자로부터 정착금을 알게 된 경우가 가장 높았고, 시설선후배 또는 시설친구로부터 정착금을 알게 된 경우 무직자가 가장 낮게 나타나 무직자는 시설친구 또는 시설선후배보다 시설종사자 등 담당자로부터 정착금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으로 보여진다.

〈표 Ⅲ-5〉 자립정착금을 알게 된 경로

(단위 : 명, %)

구분(명)	자립정착금을 알게 된 경로							
	본인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시설종사자 또는 가정위탁 담당자	원가족	위탁부모 (조부모, 친인척 포함)	지자체 담당 공무원	시설선후배 또는 시설친구	기타	
전체(415)	0.2	69.2	0.5	0.5	1.9	26.7	1	
보호 체계별 (415)	아동복지시설		69.4	0.5	0.3	1.3	27.8	0.8
	가정위탁	5.3	63.2		5.3	15.8	5.3	5.3
$\chi^2=57.589^* \quad df=12$								
직업별 (415)	진학자		70.1		1	2.1	26.8	
	취업자		66.4	0.4	0.4	2	30.4	0.4
	무직자	1.5	78.5	1.5		1.5	12.3	4.6
$\chi^2=28.191^* \quad df=12$								
정착금 금액별 (392)	100만원대		61.9				38.1	
	200만원대		76.5			2.9	20.6	
	300만원대		65.3		1	1	31.6	1
	400만원대		62.2			6.7	31.1	
	500만원대		70.6	1	0.5	1.5	24.7	1.5
$\chi^2=14.3951 \quad df=12$								

나. 관련교육 이수현황

다음의 〈표 Ⅲ-6〉는 자립정착금 및 경제 교육 이수여부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전체 응답자의 58.1%가 자립정착금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교육을 받았으며, 다음으로 자립정착금 활용방법 및 계획(53.5%), 자립정착금 지급과정 및 내용(53.0%), 현실에 맞는 지출계획 및 올바른 소비방법(34.7%), 은행을 활용한 저축방법(31.3%), 카드의 종류 및 올바른 신용카드 사용법(16.4%), 없다(15.7%), 공과금 종류 및 요금납부방법(14.5%)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절반이상이 경제교육(평균 24.2%)보다 자립정착금에 대한 교육(평균 54.8%)을 더 많이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보호체계에서 자립정착금에 대해 골고루 교육을 진행한 반면, 경제교육 중 현실에 맞는 지출계획 및 올바른 소비방법에 대한 교육이 34.7%로 가장 높았다.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취약한 교육영역은 공과금 종류 및 납부방법과 신용카

드 사용법에 대한 교육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공동생활가정은 공과금 종류 및 납부 방법에 대한 교육이 아동양육시설과 가정위탁보다 우세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시설종사자와 소그룹으로 생활하며 자연스럽게 경제교육이 진행되었을 기회가 더 많았던 것으로 보여진다. 가정위탁의 경우 대부분 대리·친인척 가정위탁으로 공과금 납부와 관련된 일들은 전부 조부모 또는 친인척이 맡았거나 일상생활의 한 부분으로써 별도의 교육이 없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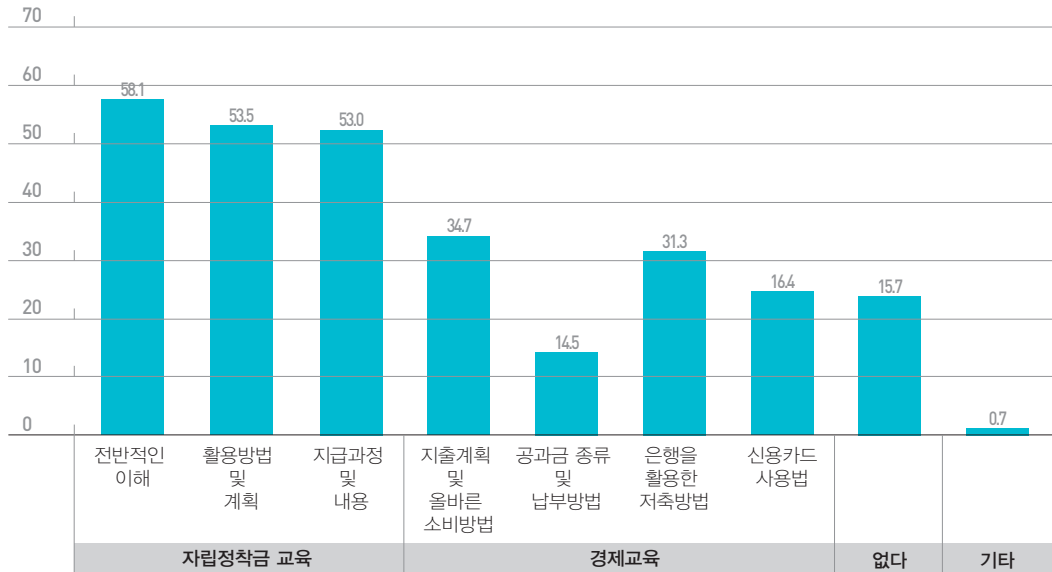
자립정착금 금액별로 살펴보면, 자립정착금 및 경제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100만원대에서 33.3%로 가장 높았고, 200만원대에서 23.5%, 300만원대에서 15.3%, 400만원대에서 8.9%, 500만원대 14.9% 순으로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자립정착금 및 경제교육은 자립생활 시 돈 관리 문제와 직결된 가장 현실적인 문제라서 보호보호 종결아동대상 집중적인 경제교육이 필요하며, 관련기관 간 상호보완적이며 전문적인 교육진행이 필요하다.

〈표 III-6〉 자립정착금 및 경제교육 여부(중복응답)

(단위 : 명, %)

구분(명)		자립정착금 및 경제교육 여부								
		자립정착금			경제				없다	기타
		전반적인 이해	활용 방법 및 계획	지급 과정 및 내용	지출계획 및 올바른 소비방법	공과금 종류 및 납부방법	은행을 활용한 저축방법	신용카드 사용법		
전체(415)		58.1	53.5	53	34.7	14.5	31.3	16.4	15.7	0.7
보호 체계별 (415)	아동양육시설	60.5	54.2	54.2	34.2	14	31	16.7	15.1	0.8
	공동생활가정	41.9	58.1	45.2	38.7	22.6	35.5	16.1	12.9	
	가정위탁	36.8	31.6	42.1	36.8	10.5	31.6	10.5	31.6	
직업별 (415)	진학자	57.1	53.6	45.7	35.7	17.9	33.6	17.9	18.6	
	취업자	58	53.5	56	32.5	12.5	31.5	16.5	12	1
	무직자	60	53.3	58.7	38.7	13.3	26.7	13.3	20	1.3
정착금 금액별 -392	100만원대	47.6	23.8	33.3	28.6	9.5	19	9.5	33.3	4.8
	200만원대	44.1	38.2	47.1	26.5	5.9	20.6	8.8	23.5	2.9
	300만원대	56.1	50	51	26.5	16.3	27.6	19.4	15.3	
	400만원대	64.4	57.8	55.6	48.9	13.3	37.8	20	8.9	
	500만원대	58.8	59.3	53.6	34	13.9	33.5	14.4	14.9	



〈그림 Ⅲ-2〉 자립정착금 및 경제교육 여부

4. 자립정착금 사용계획 및 입금방식

가. 수령시기

다음의 <표 Ⅲ-7>는 자립정착금 수령시기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조사결과, 종결일로부터 6개월 미만에 자립정착금을 수령한 비율이 81.2%로 가장 높았으며, 종결일로부터 6개월 이상 1년 미만 이 13.0%, 종결일로부터 1년 이상 3년 미만이 5.1%, 종결일로부터 3년 이상 5년 미만이 0.7% 순으로 나타났다.

보호체계별로 살펴보면, 아동양육시설과 가정위탁은 공동생활가정에 비해 자립정착금을 종결일로부터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시기에 수령한 비율이 더 높았다.

자립정착금 금액별로 살펴보면, 대부분 종결일로부터 6개월 미만의 기간에 자립정착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00만원대는 종결일로부터 6개월 이상 1년 미만에 자립정착금을 수령한 비율이 23.8%로 가장 높았다. 또한 200만원대는 1년 이상 3년 미만에 수령한 비율이 17.6%로 다른 금액대에 비해 매우 높았다.

〈표 III-7〉 자립정착금 수령시기

(단위 : 명, %)

구분(명)		자립정착금 수령시기			
		종결일로부터 6개월 미만	종결일로부터 6개월 이상 1년 미만	종결일로부터 1년 이상 3년 미만	종결일로부터 3년 이상 5년 미만
전체(415)		81.2	13	5.1	0.7
보호 체계별 (415)	아동양육시설	80.8	13.4	4.9	0.8
	공동생활가정	90.3	3.2	6.5	
	가정위탁	73.7	21.1	5.3	
직업별 (415)	진학자	82.5	10.3	6.2	1
	취업자	80.2	15.4	4	0.4
	무직자	83.1	7.7	7.7	1.5
정착금 금액별 (392)	100만원대	71.4	23.8	4.8	
	200만원대	76.5	5.9	17.6	
	300만원대	79.6	17.3	3.1	
	400만원대	88.9	6.7	2.2	2.2
	500만원대	82.5	12.4	4.1	1

나. 사용계획

1) 사용계획 여부

자립정착금 사용계획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 III-8〉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61.4%는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을 하였다고 응답하였고, 38.6%는 자립정착금 사용에 대한 계획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립정착금 금액별로 살펴보면, 100만원대의 자립정착금을 수령한 응답자 중 절반이상이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이 없었으며, 200만원대에 44.1%, 500만원대에 42.8%, 400만원대에 37.8%, 300만원대에 25.5%가 사용계획을 하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표 Ⅲ-8〉 자립정착금 사용계획 여부

(단위 : 명, %)

구분(명)		자립정착금 사용계획 여부	
		예	아니오
전체(415)		61.4	38.6
보호 체계별 (415)	아동양육시설	60.5	39.5
	공동생활가정	67.7	32.3
	가정위탁	68.4	31.6
직업별 (415)	진학자	63.9	36.1
	취업자	61.3	38.7
	무직자	58.5	41.5
정착금 금액별 (392)	100만원대	47.6	52.4
	200만원대	55.9	44.1
	300만원대	74.5	25.5
	400만원대	62.2	37.8
	500만원대	57.2	42.8

2) 사용계획에 따른 주요 고려사항

자립정착금 사용계획 시 주요하게 고려한 지출항목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결과는 〈표 Ⅲ-9〉과 같다. 조사대상자가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게 되는 부분은 가전제품 및 가구집기 구입비가 73.3%로 가장 높았고, 수도광열비 등 관리비 64.7%, 대학등록금 및 교재비 42.0%,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을 위한 학원등록비 34.5%,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가 18.4%, 교양오락비 13.7%, 의료비 9.4%, 교통통신비 9.0%, 결혼자금 및 기타 8.2%, 피복신발 및 생필품 등 생활비 7.5%, 식료품 등 주부식비 3.5%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내용으로는 적금, 졸업전시비용, 호주워킹홀리데이 참여가 있었다.

보호체계별로 살펴보면, 아동양육시설은 가전제품 및 가구집기 구입비에 대해 73.3%가 지출을 계획하였으며, 대학등록금과 결혼자금에 대한 지출계획이 다른 보호체계에 비해 적었다. 공동생활가정은 대학등록금 및 교재비와 가전제품 및 가구집기 구입비를 자립정착금 사용계획 시 가장 많이 고려하였으며, 가정위탁의 경우 다른 보호체계와 마찬가지로 가전제품 및 가구집기 구입비에 대한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을 하였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진학자는 취업자 또는 무직자에 비해 대학등록금 및 교재비와 의료비를 자립

정착금으로 지출하고자 하는 비율이 다소 높았다. 취업자는 가전제품 및 가구집기 구입비와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을 위한 학원등록비에 대한 지출계획이 진학자 또는 무직자에 비해 높았다. 무직자의 경우 교양오락비와 결혼자금에 대한 지출계획이 진학자 또는 취업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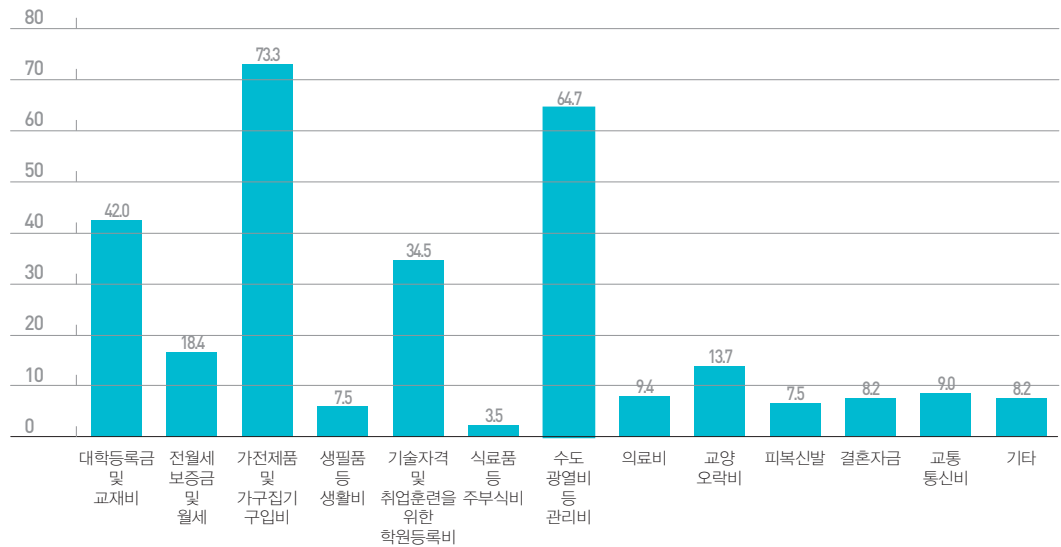
자립정착금 사용계획 시 주요하게 고려한 지출항목을 순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Ⅲ-10〉). 1순위에서는 가전제품 및 가구집기 구입비가 41.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대 학등록금 및 교재비가 29.0%, 수도 광열비 등 관리비가 9.8%로 나타났다. 2순위에서는 수도광열비 등 관리비가 28.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가전제품 및 가구집기 구입비 24.3%, 기술자 격 및 취업훈련을 위한 학원등록비 12.9%로 나타났다. 3순위 또한 수도광열비 등 관리비가 26.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을 위한 학원등록비가 14.9%, 전월세 보 증금 및 월세가 8.2%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조사대상자는 종결이후 자립정착금으로 가전제품 및 가구집기 구입비와 수도광열비 등 관리비에 대한 지출을 고려하고 있었다. 이는 초기 자립 시 필요한 가전제품 등 집기류 구입과 매월 납부해야 하는 공과금에 대한 부담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여 진다.

〈표 III-9〉 자립정착금 사용계획 시 주요하게 고려한 지출항목(전체)

(단위 : 명, %)

구분(명)	자립정착금 사용계획 시 주요하게 고려한 지출항목(전체)													
	대학 등록금 및 교재비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	가전제품 및 가구집기 구입비	생필품 등 생활비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을 위한 학원등록비	식료품 등 주부식비	수도 광열비 등 관리비	의료비	교양 오락비	피복 신발	결혼 자금	교통 통신비	기타	
전체(415)	42	18.4	73.3	7.5	34.5	3.5	64.7	9.4	13.7	7.5	8.2	9	8.2	
보호 체계별 (415)	아동양육시설	39.4	17.6	75.1	8.1	35.7	3.6	66.5	9	13.1	8.1	6.8	9.5	7.2
	공동생활가정	61.9	23.8	61.9		23.8		52.4	19	14.3		19	4.8	19
	가정위탁	53.8	23.1	61.5	7.7	30.8	7.7	53.8		23.1	7.7	15.4	7.7	7.7
직업별 (415)	진학자	70.2	15.5	66.7	6	25	4.8	61.9	15.5	9.5	4.8	4.8	8.3	7.1
	취업자	25.8	18.5	81.5	7.3	44.4	3.2	65.3	7.3	12.1	8.9	7.3	9.7	8.9
	무직자	34	23.4	63.8	10.6	25.5	2.1	68.1	4.3	25.5	8.5	17	8.5	8.5
정착금 금액별 (392)	100만원대	40		60		30	10	90	20	30		10	10	
	200만원대	52.6	26.3	84.2	5.3	21.1	5.3	63.2	10.5	10.5		5.3	15.8	
	300만원대	28.8	19.2	74	16.4	37	1.4	58.9	9.6	16.4	8.2	5.5	11	13.7
	400만원대	46.4	25	57.1	3.6	28.6	7.1	71.4	10.7	14.3	10.7	14.3	7.1	3.6
	500만원대	45.9	17.1	76.6	3.6	35.1	2.7	64.9	9	12.6	7.2	9	8.1	8.1



〈그림 III-3〉 자립정착금 사용계획 시 주요하게 고려한 지출항목

〈표 III-10〉 자립정착금 사용계획 시 주요하게 고려한 지출항목(순위별)

순위	1순위	%	순위	2순위	%	순위	3순위	%
	지출계획항목			지출계획항목			지출계획항목	
1	가전제품 및 가구집기 구입비	41.2	1	수도광열비 등 관리비	28.2	1	수도광열비 등 관리비	26.7
2	대학등록금 및 교재비	29	2	가전제품 및 가구집기 구입비	24.3	2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을 위한 학원등록비	14.9
3	수도광열비 등 관리비	9.8	3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을 위한 학원등록비	12.9	3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	8.2
4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을 위한 학원등록비	6.7	4	대학등록금 및 교재비	7.5	4	가전제품 및 가구집기 구입비	7.8
5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	3.5	5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	6.7	5	교양오락비	6.7
6	피복신발/교양오락비/기타	2	6	교양오락비	5.1	6	결혼자금/교통통신비	5.9
7	생필품 등 생활비	1.6	7	의료비	3.5	7	대학등록금 및 교재비/의료비	5.5
8	결혼자금/교통통신비	0.8	8	생필품 등 생활비	2.7	8	기타	3.9
9	식료품 등 주부식비/의료비	0.4	9	교통통신비/기타	2.4	9	피복신발	3.5
			10	피복신발	2	10	생필품 등 생활비	3.1
			11	결혼자금	1.6	11	식료품 등 주부식비	2.4
			12	식료품 등 주부식비	0.8			

3) 사용계획 시 도움을 준 사람

다음의 <표 Ⅲ-11>는 자립정착금 사용계획 시 도움을 준 사람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시설종사자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 담당자가 60.8%로 가장 많은 도움을 주었지만, 사용계획을 도움을 준 사람이 없었다는 비율도 23.1%로 4명 중 1명은 자립정착금에 대한 사용계획에 도움을 준 사람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체계별로 살펴보면, 아동복지시설은 시설종사자 또는 도움을 준 사람이 없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진학자의 경우 시설종사자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 담당자에게 도움을 받은 비율이 취업자 또는 무직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자립정착금 금액별로 살펴보면, 금액이 낮을수록 사용계획을 도움을 받지 않았다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Ⅲ-11>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에 도움을 준 사람

(단위: 명, %)

구분(명)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에 도움을 준 사람							
		시설종사자 또는 가정위탁 지원센터 담당자	원가족	위탁부모 (조부모, 친인척 포함)	시군구 담당 공무원	시설 친구 또는 시설 선후배	이성 친구 또는 배우자	없다	기타
전체(415)		60.8	8.2	1.6	.4	4.7	.4	23.1	.8
보호 체계별 (415)	아동양육시설	60.6	8.6	.9	.5	5.4	.5	22.6	.9
	공동생활가정	71.4						28.6	
	가정위탁	46.2	15.4	15.4				23.1	
직업별 (415)	진학자	69.4	4.8	1.6		4.8		17.7	1.6
	취업자	59.4	6.5	1.3	.6	5.2	.6	25.8	.6
	무직자	52.6	21.1	2.6		2.6		21.1	
정착금 금액별 (392)	100만원대	50.0	10.0					40.0	
	200만원대	57.9			5.3	10.5		26.3	
	300만원대	61.6	5.5			6.8		24.7	1.4
	400만원대	53.6	17.9	7.1				21.4	
	500만원대	62.2	9.0	1.8		3.6	.9	21.6	.9

4) 자립정착금 관리인

다음의 <표 III-12>는 수령한 자립정착금 관리인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조사대상자의 81.4%는 본인 스스로 관리하였다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시설종사자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 담당자가 11.6%, 원가족 2.7%, 위탁부모 2.2%, 이성친구 또는 배우자 0.7%, 시설친구 또는 시설선후배 및 타 기관 선생님이 각 0.2% 순으로 나타났다.

보호체계별로 살펴보면,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은 시설종사자가 자립정착금을 관리해기도 하지만, 가정위탁의 경우 위탁부모가 관리하는 경우와 이성친구 또는 배우자가 관리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진학자는 취업자 또는 무직자에 비해 시설종사자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 담당자가 자립정착금을 관리해주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업자는 원가족이 관리하는 경우가 진학자 또는 무직자에 비해 낮았다.

자립정착금 금액별로 살펴보면, 시설종사자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 담당자가 자립정착금을 관리하는 비율이 100만원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II-12> 수령한 자립정착금 관리인

(단위: 명, %)

구분(명)	수령한 자립정착금 관리인							
	본인 스스로 관리	원가족	시설종사자 또는 가정위탁 지원센터 담당자	시설친구 또는 시설 선후배	위탁부모 (조부모, 친인척 포함)	타 기관 선생님	이성 친구 또는 배우자	기타
전체(415)	81.4	2.7	11.6	.2	2.2	.2	.7	
보호 체계별 (415)	아동양육시설	81.6	3.0	11.8	.3	1.6	.3	.8
	공동생활가정	80.6		16.1				3.2
	가정위탁	78.9				15.8	5.3	
직업별 (415)	진학자	72.2	4.1	19.6	1.0	3.1		
	취업자	84.6	1.6	9.1		2.0	.4	1.6
	무직자	83.1	4.6	9.2		1.5	1.5	
정착금 금액별 (392)	100만원대	76.2		23.8				
	200만원대	91.2		8.8				
	300만원대	84.7	2.0	8.2		3.1	1.0	1.0
	400만원대	91.1		8.9				
	500만원대	76.8	4.1	12.4	.5	3.1	.5	1.0 1.5

다. 입금안내 및 방법

1) 입금안내

다음의 <표 Ⅲ-13>는 자립정착금을 수령했을 당시 입금에 대한 안내를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이다. 전체 응답자의 86.3%는 시설종사자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 담당자에게 안내를 받았다고 응답하였고, 6.5%는 아무도 안내해 주지 않았다, 4.8%는 시군구 공무원에게 안내를 받았다고 나타났다.

보호체계별로 살펴보면, 아동양육시설은 시설종사자에게서 안내를 받은 비율이 87.7%, 아무도 안내해주지 않았다는 응답이 6.6%, 시군구 공무원에게서 안내를 받은 비율이 3.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위탁의 경우 가정위탁지원센터 담당자에게 안내를 받은 비율은 52.6%로 가장 높았지만 다른 보호체계에 비해 그 비율이 다소 낮았다. 하지만 위탁부모, 시군구 공무원에게 안내를 받은 비율이 각 15.8%이었고, 그 누구에게도 안내를 받지 못한 비율 또한 15.8%였다. 이는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전달체계에 대한 차이로 보여 진다.

자립정착금 금액별로 살펴보면, 100만원대 자립정착금을 수령한 응답자는 시설종사자 또는 가정위탁 담당자가 입금안내를 한 비율이 다른 금액대보다 낮았으며, 아무도 안내해 주지 않은 비율이 14.3%를 차지하며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Ⅲ-13> 자립정착금 입금 안내

(단위: 명, %)

구분(명)	자립정착금 입금 안내					
	시설종사자 또는 가정위탁 지원센터 담당자	위탁부모 (조부모, 친인척 포함)	시군구 담당 공무원	아무도 안내해주지 않았다	기타	
전체(415)	86.3	1.2	4.8	6.5	1.2	
보호 체계별 (415)	아동양육시설	87.7	.5	3.8	6.6	1.4
	공동생활가정	90.3		9.7		
	가정위탁	52.6	15.8	15.8	15.8	
직업별 (415)	진학자	87.6	1.0	3.1	7.2	1.0
	취업자	87.0	.8	5.5	5.5	1.2
	무직자	81.5	3.1	4.6	9.2	1.5
정착금 금액별 (392)	100만원대	61.9		9.5	14.3	14.3
	200만원대	91.2		2.9	5.9	
	300만원대	87.8	4.1	1.0	6.1	1.0
	400만원대	84.4		6.7	8.9	
	500만원대	86.6	.5	6.2	6.2	.5

2) 입금방법

다음의 <표 III-14>는 자립정착금의 입금방법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전체 응답자의 94.7%는 본인 통장에 한꺼번에 입금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자립정착금은 시군구 공무원에 의해 아동 계좌로 입금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 시설종사자 또는 위탁부모 등과 동의하에 자립정착금을 관리하고 아동에게 매달 용돈의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표 III-14> 자립정착금 입금 방법

(단위: 명, %)

구분(명)		자립정착금 입금 안내	
		자립정착금 전액이 한꺼번에 본인통장으로 입금되었다 (일시지급)	일정기간 동안 단계별로 본인통장으로 입금되었다 (분할지급)
전체(415)		94.7	5.3
보호 체계별 (415)	아동양육시설	95.6	4.4
	공동생활가정	87.1	12.9
	가정위탁	89.5	10.5
직업별 (415)	진학자	92.8	7.2
	취업자	95.7	4.3
	무직자	93.8	6.2
정착금 금액별 (392)	100만원대	90.5	9.5
	200만원대	97.1	2.9
	300만원대	94.9	5.1
	400만원대	97.8	2.2
	500만원대	95.4	4.6

3) 바람직한 자립정착금 입금방법

다음의 <표 III-15>는 자립생활에 도움이 되는 자립정착금 입금방법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전체 응답자의 62.2%는 일시지급이 자립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으며, 쓰임에 따라 일시지급과 분할지급이 구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27.2%, 일정기간 단계별로 지급하는 편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10.6%로 나타났다.

〈표 Ⅲ-15〉 자립생활에 도움이 되는 자립정착금 입금 방법

(단위: 명, %)

구분(명)	자립생활에 도움이 되는 자립정착금 입금 방법			
	일시지급 하는 편이 자립하는데 도움이 된다(일시지급)	일정기간 내 단계별로 지급하는 편이 자립하는데 도움이 된다(분할지급)	쓰임에 따라 일시지급 되는 항목과 분할지급 되는 항목의 구분이 필요하다	
전체(415)	62.2	10.6	27.2	
보호 체계별 (415)	아동양육시설	63.6	10.1	26.3
	공동생활가정	45.2	19.4	35.5
	가정위탁	63.2	5.3	31.6
직업별 (415)	진학자	58.8	13.4	27.8
	취업자	64.0	8.7	27.3
	무직자	60.0	13.8	26.2
정착금 금액별 (392)	100만원대	76.2	19.0	4.8
	200만원대	64.7	14.7	20.6
	300만원대	61.2	10.2	28.6
	400만원대	60.0	6.7	33.3
	500만원대	63.4	9.8	26.8

5. 자립정착금 사용현황

가. 평균수령금액

자립정착금 사용현황은 조사대상자 중 수령한 자립정착금을 기재한 392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수령한 자립정착금을 받은 조사대상자는 보호가 종결된 지 평균 3.2년이 지난 상황에서 설문에 응답하였다. 수령한 평균 자립정착금은 393만원이었다.

보호체계별로 살펴보면, 자립정착금으로 받은 금액 중 500만원대가 49.5%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300만원대가 25.0%, 400만원대가 11.5%, 200만원대가 8.7%, 100만원대가 5.4% 순으로 나타났다(〈표 Ⅲ-16〉).

특별시 및 광역시 등 대도시의 경우 더 많은 금액을 자립정착금으로 지원하고 있었다. 이렇듯 지역 규모별 수령한 자립정착금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6〉 수령한 자립정착금

(단위: 명, %)

구분(명)		자립정착금 입금 안내				
		100만원대	200만원대	300만원대	400만원대	500만원대
전체(392)		5.4	8.7	25.0	11.5	49.5
보호 체계별 (392)	아동양육시설	5.5	8.1	25.5	11.3	49.6
	공동생활가정	6.7	10.0	23.3	6.7	53.3
	가정위탁		17.6	17.6	23.5	41.2
지역 규모별 (392)	대도시 (광역시·특별시)	3.5	8.0	7.1	9.7	71.7
	그 외지역	6.1	9.0	32.3	12.2	40.5
직업별 (392)	진학자	5.3	9.9	18.3	11.5	55.0
	취업자	5.8	9.9	28.8	9.4	46.1
	무직자	5.8	9.9	28.8	9.4	46.1

나. 실제 사용항목 및 사용금액

1) 실제 사용항목

다음의 〈표 III-17〉는 자립정착금 실제 사용항목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실제 자립정착금으로 사용한 평균금액은 393만원 중 92만원의 잔액이 있었으며, 실제 사용한 금액은 301만원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는 수령한 자립정착금을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42.3%)로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생필품 등 생활비 41.8%, 가전제품 및 가구집기 구입비 26.9%, 대학등록금 및 교재비 22.5%, 교통통신비 17.6%, 식료품 등 주부식비 15.9%, 수도광열비 등 관리비 및 피복신발 14.6%,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을 위한 학원등록비 10.0%, 의료비 9.5%, 교양오락비 7.4%, 기타 3.6%, 부모·친척·형제에게 빌려줌 2.6%, 유흥비 및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가족 등 본인 외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 2.3%, 친구에게 빌려줌 0.5%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무직자는 생필품 등 생활비와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을 위한 학원등록비, 교통통신비에 대한 지출이 진학자 또는 취업자에 비해 그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학자 또는 취업자에 비해 교양오락비의 지출 비율이 더 낮았다.

자립정착금 금액별로 살펴보면, 100만원대의 자립정착금을 수령한 응답자는 다른 금액대에 비해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에 대한 비율이 낮았고 반면, 가전제품 및 가구집기 구입비 또는 생필품 등 생

활비로 자립정착금을 사용한 비율이 더 높았다. 200만원대에서는 의료비에 대한 지출이 다른 금액대보다 높았으며, 400만원대에서 식료품 등 주부식비로의 지출이 다른 금액대보다 많았다. 자립정착금을 받았을 때에 100만원대의 생필품 등 생활비로(57.1%)로, 200만원대 및 300만원대는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로 각각 50.0%, 45.9%로, 400만원대는 저축액으로 42.2%로, 500만원대는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 41.2%로 사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지난 2012년도 아동양육시설 퇴소아동·연장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에 의하면, 전세 또는 월세보증금의 마련을 본인 스스로 마련하는 경우가 49.3%, 자립정착금으로 하는 경우가 33.8%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결과에서도 자립정착금으로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를 마련하는 비율이 42.3%, 본인 스스로 마련하는 비율이 31.9%로 높게 나타나(〈표 Ⅲ-26〉) 퇴소아동의 주거마련이 매우 중요한 사항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II-17〉 자립정착금 사용 항목(중복응답)

(단위: 명, %)

구분(명)	자립생활에 도움이 되는 자립정착금 임금 방법																			
	대학 전월세 등록금보증금 및 교재비	대학 전월세 등록금보증금 및 교재비	가전 제품 및 가구	생필품 등 생활비	기술 자격 및 취업 훈련을 위한 학원 등록비	식료품 등 주부 식비	수도 광열비 등 관리비	의료 비	교양 오락비	피복 신발	결혼 자금	교통 통신 비	유형 비	부모, 친척, 형제에게 빌려 줌	친구,에게 빌려 줌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가족 등 본인 외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	기타	일부 잔액	잔액 사용 (잔액 없음)	
전체(392)	22.4	42.3	26.8	41.8	9.9	15.8	14.5	9.4	7.4	14.5	.8	17.6	2.3	2.6	.5	2.3	3.6	8.4	17.4	
보호																				
이동양육시설	21.2	43.2	27.8	40.0	10.1	15.7	13.9	9.0	6.7	14.2	.9	17.7	2.0	2.9	.6	2.0	3.5	8.4	17.7	
공동생활가정(415)	40.0	33.3	16.7	53.3	6.7	20.0	13.3	13.3	16.7	20.0		16.7	6.7				6.7	6.7	20.0	
가정위탁	17.6	41.2	23.5	58.8	11.8	11.8	29.4	11.8	5.9	11.8		17.6				11.8		11.8	5.9	
진학자	47.3	37.4	21.4	48.1	6.9	14.5	13.0	9.2	9.2	15.3		18.3	2.3	3.1		1.5	3.1	11.5	14.6	
직업별(415)																				
취업자	8.4	44.0	28.8	31.9	7.3	15.2	12.0	8.4	7.9	13.1	.5	14.1	3.1	2.1	1.0	2.1	2.1	4.7	23.0	
무직자	14.3	47.1	31.4	57.1	22.9	20.0	22.9	12.9	2.9	17.1	2.9	25.7		2.9		4.3	8.6	12.9	7.1	
100만원대	23.8	28.6	33.3	57.1	14.3	14.3	4.8	4.8	4.8	9.5		14.3						4.8		
200만원대	17.6	50.0	26.5	41.2	5.9	14.7	20.6	20.6	8.8	11.8		14.7	5.9						14.7	
300만원대	17.3	45.9	26.5	42.9	13.3	13.3	10.2	9.2	2.0	13.3	1.0	18.4	1.0			2.0	5.1	7.1	10.2	
400만원대	24.4	40.0	28.9	37.8	11.1	24.4	13.3	8.9	15.6	20.0	2.2	22.2	4.4			2.2		15.6	26.7	
500만원대	25.4	41.5	25.9	40.9	8.3	15.5	17.1	8.3	8.3	15.0	.5	17.1	2.1	4.7	1.0	3.1	4.7	9.3	21.2	

2) 실제 사용 금액

다음의 <표 Ⅲ-18>는 종결당시 지출항목별 자립정착금 평균 사용 금액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조사대상자가 수령한 자립정착금의 평균금액은 393만원이며, 그 중 현재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한 자립정착금은 평균 301만원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는 수령한 자립정착금 301만원 중 34.9%인 105만원을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로 사용하였고, 대학등록금으로 50만원(22.4%), 생필품 등 생활비로 35만원(8.9%), 가전제품 및 가구집기 구입비로 32만원(16.6%),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을 위한 학원등록비 9만원(3.0%), 교통통신비로 8만원(2.7%), 식료품 등 주부식비 7만원(2.3%), 수도광열비 등 관리비 및 피복신발 6만원(2.0%) 등의 순이었다.

보호체계별로 살펴보면, 아동복지시설에서는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로 107만원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으며, 대학등록금 및 교재비로 51만원, 생필품 등 생활비로 33만원, 가전제품 및 가구집기 구입비로 32만원 등의 순으로 사용하였다. 그에 반해 가정위탁은 71만원을 생필품 등 생활비로 가장 많이 사용하였으며,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로 68만원, 가전제품 및 가구집기 구입비로 45만원, 의료비로 32만원, 조모의 의료비 등 가족과 함께 사용한 금액으로는 29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복지시설은 가정위탁에 비해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 대학등록금 및 교재비에 대한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생필품 등 생활비, 가전제품 및 가구집기 구입비,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을 위한 학원등록비, 수도광열비 등관리비, 의료비, 가족과 함께 사용하는 비용이 아동복지시설에 비해 가정위탁의 경우 더 많은 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 두 보호체계의 자립정착금에 대한 쓰임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진학자는 취업자, 무직자에 비해 대학등록금 및 교재비로 많이 사용하였다. 이는 자립정착금의 1/3에 해당하는 비용이 대학등록금 및 교재비로 지출되고 있어 대학등록금 마련을 위한 외부지원이 부족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진학자는 다른 직업에 비해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는 더 적게 사용하였다. 무직자는 진학자 또는 취업자에 비해 현재 남아 있는 자립정착금 잔액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립정착금 금액별로 살펴보면, 100만원대의 자립정착금을 수령한 대상자는 주요하게 대학등록금 및 교재비,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 가전제품 및 가구집기 구입비, 생필품 등 생활비, 4가지의 항목을 사용하였으며, 200만원대부터 500만원대까지는 자립정착금으로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로 가장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는 수령한 자립정착금의 평균금액인 393만원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실제 사용한 금액과는 차이가 있다.

〈표 III-18〉 자립정착금 사용 금액

(단위: 명, 만원, %)

구분(명)	자립생활에 도움이 되는 자립정착금 임금 방법																		
	대학 전월세 등록금보조금 및 교재비	월세	대학 등록금보조금 및 교재비	생필품 등 생활비	기술 및 자격 취득 훈련을 위한 학원 등료비	식료품 등 광열비 등 주부 식비 관리비	수도 의료 비	교양 오락비	피복 신발	결혼 자금	교통 통신 비	유형 비	부모, 친척, 형제에게 빌려 줄	친구, 애제에게 빌려 줄	특정할 목적을 가지고 가족 외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 ¹³⁾	기타	잔액		
전체	합계(301)	50	105	32	35	9	7	8	7	5	6	2	8	1	7	1	6	12	92
보호 체계별	퍼센트(%)	16.6	34.9	10.6	11.6	3.0	2.3	2.6	2.3	1.7	2.0	.7	2.7	.3	2.3	.3	2.0	4.0	-
	응답자 수(명)	88	166	105	164	39	62	57	37	29	57	3	69	9	10	2	9	14	33
	아동복지시설	51	107	32	33	9	7	8	5	6	2	2	8	1	7	1	5	13	94
직업별	가정위탁	28	68	45	71	24	6	28	32	2	2	2	7				29		50
	진학자	109	76	23	46	4	6	6	6	3	7	7	5		8		3	7	94
	취업자	20	123	38	20	8	7	8	6	6	6	1	7	2	6	1	8	10	106
정착금 금액별	무직자	23	113	37	56	23	10	13	8	3	6	10	14	0	8	0	5	28	50
	100만원대	23	22	26	24	5	3	2			3	3	3						2
	200만원대	26	61	24	20	4	4	13	8	2	5		9	2					30
정착금 금액별	300만원대	27	99	28	33	14	7	8	6	2	7	3	10	1			4	13	41
	400만원대	54	83	27	22	18	12	4	4	5	5	9	9	4	7		4	30	137
	500만원대	68	130	38	43	7	7	10	8	7	7	1	6	1	12	1	9	19	128

13) 할머니의 의료비로 사용

3) 사용계획 및 실제 사용항목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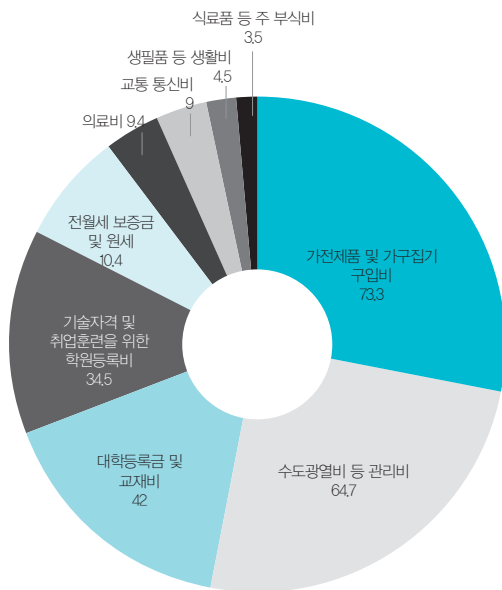
다음의 <표 Ⅲ-19>를 통해 자립정착금 사용계획 시 고려했던 사항과 실제 지출내용이 다르게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가전제품 및 가구집기 구입비와 수도광열비 등 관리비로 지출할 것을 계획하였으나, 실제 자립정착금 사용내역은 주거마련을 위한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와 생필품 등 생활비의 지출이 가장 높았다. 이는 보호 중 자립에 대한 인식과 실제 자립생활에 발생하는 차이가 다음의 결과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 진다.

실제 사용내역에서 1순위로 나타난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는 사용계획 시 5순위였으며, 실제 사용내역 2순위인 생필품 등 생활비는 사용계획 당시 10순위로 나타났다. 또한 사용계획 1순위였던 가전제품 및 가구집기 구입비는 실제 사용내역 3순위로 밀려났으나, 여전히 상위권에 머물러 있었다. 반면, 사용계획 2순위였던 수도광열비 등 관리비는 실제 사용내역에서 7순위로 밀려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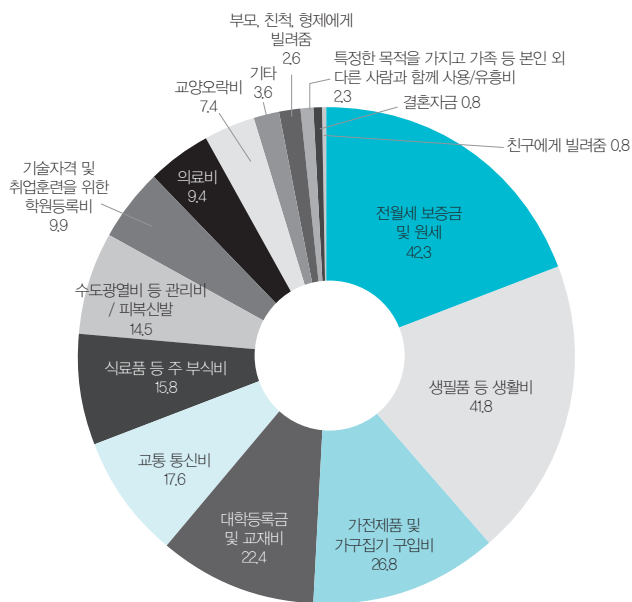
<표 Ⅲ-19> 자립정착금 사용계획 및 실제 사용 항목 비교(중복응답)

순위	사용계획	%	순위	실제 사용내역	%
1	가전제품 및 가구집기 구입비	73.3	1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	42.3
2	수도광열비 등 관리비	64.7	2	생필품 등 생활비	41.8
3	대학등록금 및 교재비	42.0	3	가전제품 및 가구집기 구입비	26.8
4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을 위한 학원등록비	34.5	4	대학등록금 및 교재비	22.4
5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	18.4	5	교통통신비	17.6
6	교양오락비	13.7	6	식료품 등 주부식비	15.8
7	의료비	9.4	7	수도광열비 등 관리비 / 피복신발	14.5
8	교통통신비	9.0	8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을 위한 학원등록비	9.9
9	결혼자금 / 기타	8.2	9	의료비	9.4
10	생필품 등 생활비 / 피복신발	4.5	10	교양오락비	7.4
11	식료품 등 주부식비	3.5	11	기타	3.6
			12	부모, 친척, 형제에게 빌려줌	2.6
			13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가족 등 본인 외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유흥비	2.3
			14	결혼자금	.8
			15	친구에게 빌려줌	.5

자립정착금 사용계획 (단위 : %)



자립정착금 실제 사용 항목 (단위 : %)



〈그림 III-4〉 자립정착금 사용계획 및 실제 사용항목

다. 추가 사용항목 및 사용금액

1) 추가 사용항목

다음의 <표 Ⅲ-19>는 자립정착금 외 추가적으로 발생한 지출항목이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종결이후 추가적으로 발생한 지출항목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50.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생필품 등 생활비 22.7%,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 17.6%, 교통통신비 15.3%, 가전제품 및 가구집기 구입비 14.8%, 식료품 등 주부식비 12.8%, 피복신발 11.5%, 대학등록금 및 교재비 11.2%, 수도권 광열비 등 관리비 11.0%, 의료비 9.2%, 교양오락비 7.4%,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을 위한 학원등록비 4.3%, 유희비 2.6%, 기타 2.0%, 결혼자금 1.3%로 나타났다.

보호체계별로 살펴보면, 아동양육시설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을 제외한 사용내역 중 생필품 등 생활비가 20.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가 17.7% 등의 순이었다. 공동생활 가정 또한 없다고 응답한 비율을 제외한 사용내역 중 생필품 등 생활비가 33.3%로 가장 높았고, 가전제품 및 가구집기 구입비 및 식료품 등 주부식비가 26.7%로 나타났으며, 대학등록금 및 교재비, 가전제품 및 가구집기 구입비, 교양오락비, 피복신발비가 다른 보호체계에 비해 추가지출이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위탁의 경우 생필품 등 생활비가 41.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에 비해 대학등록금 및 교재비에 대한 추가지출 비율이 낮았으며, 교통통신비는 다른 보호체계에 비해 추가지출에 대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진학자는 취업자와 무직자에 비해 대학등록금 및 교재비의 추가지출 비율이 높았고, 취업자의 추가 지출한 피복신발비는 진학자와 무직자에 비해 다소 낮았다. 또한 무직자의 경우 수도권광열비 등 관리비에 대한 추가 지출비율이 진학자와 취업자에 비해 비교적 낮게 나타났고, 의료비는 진학자와 취업자에 비해 다소 높았다.

지난 2012년 퇴소아동·연장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에 의하면, 퇴소아동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는 이유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가 63.4%로 그 비율이 매우 높았다. 또한 아르바이트 주당 근로시간이 25.25시간으로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진학자의 경우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학교생활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6.8%로 높았다. 이는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했듯이, 생활비에 대한 비용이 추가로 지출되는 경우가 22.7%로 가장 높았고, 추가비용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대다수가 본인소득(70.9%)이라고 응답하였다(<표 Ⅲ-21>). 이는 전반적인 자립생활을 질적으로 저해하는 요소로 나타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진다.

〈표 III-19〉 자립정착금 외 추가 사용 항목(중복응답)

(단위: 명, %)

구분(명)		자립생활에 도움이 되는 자립정착금 임금 방법														
		대학 등록금 및 교재비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	가전 제품 및 가구집기 구입비	생필품 등 생활비	기술 자격 및 취업 훈련을 위한 학원 등록비	식품 주부 식비	수도 광열비 등 관리비	의료 비	교양 오락비	피복 신발	결혼 자금	교통 통신 비	유형 비	없다	기타
전체(392)		11.2	17.6	14.8	22.7	4.3	12.8	11.0	9.2	7.4	11.5	1.3	15.3	2.6	50.0	2.0
보호 체계별 (392)	아동양육시설	10.4	17.7	13.9	20.9	3.8	11.0	11.3	9.6	6.7	10.4	1.4	14.5	2.0	50.7	1.7
	공동생활가정	23.3	16.7	26.7	33.3	10.0	26.7	13.3	10.0	16.7	20.0		16.7	6.7	46.7	6.7
	가정위탁	5.9	17.6	11.8	41.2	5.9	23.5			5.9	17.6		29.4	5.9	41.2	
직업별 (392)	진학자	26.0	16.8	18.3	26.7	6.9	13.7	14.5	8.4	9.2	13.7		18.3	3.8	44.3	2.3
	취업자	4.2	18.8	14.1	20.4	2.6	11.0	10.5	7.9	5.8	8.9	1.0	12.6	2.1	53.9	2.1
	무직자	2.9	15.7	10.0	21.4	4.3	15.7	5.7	14.3	8.6	14.3	4.3	17.1	1.4	50.0	1.4
정착금 금액별 (392)	100만원대	9.5	9.5	19.0	28.6		9.5	9.5			9.5		19.0		57.1	
	200만원대	14.7	26.5	26.5	26.5	8.8	17.6	14.7	5.9		17.6	5.9	20.6		38.2	
	300만원대	11.2	18.4	11.2	27.6	3.1	13.3	10.2	11.2	5.1	11.2	1.0	17.3	1.0	44.9	2.0
	400만원대	8.9	22.2	8.9	15.6	2.2	17.8	8.9	11.1	8.9	8.9		8.9	4.4	48.9	2.2
	500만원대	11.3	15.5	15.5	20.6	5.2	10.8	11.3	9.3	10.3	11.3	1.0	14.4	3.6	54.1	2.6

2) 추가 사용금액

다음의 <표 Ⅲ-20>는 자립생활을 하면서 자립정착금 외 추가 사용된 금액을 조사한 결과이다. 조사대상자는 자립초기 평균 147만원의 추가비용이 든 것으로 나타났다.

자립정착금 외 추가적으로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59만원)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대학등록금 및 교재비로 25만원, 생필품 등 생활비로 15만원, 가전제품 및 가구집기 구입비로 11만원 등의 순으로 지출하였다.

보호체계별로 살펴보면, 아동복지시설은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 60만원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대학등록금 및 교재비로 26만원, 생필품 등 생활비로 14만원 등으로 지출하였다. 가정위탁도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 34만원을 가장 많이 지출하였으며, 생필품 등 생활비로 32만원, 식료품 등 주부식비로 21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학자는 취업자 또는 무직자에 비해 대학등록금 및 교재비에 대한 비율이 매우 높았다. 이 또한 대학등록금에 대한 외부자원의 활용도가 낮아 발생한 결과로 보여 진다. 대학등록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부분의 외부 지원은 대학성적을 반영한다. 2012년 아동자립지원사업단의 조사결과, 보호종결아동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주당 25.25시간을 일해야 하는 환경에 놓여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학점을 일정하게 유지하며 외부지원을 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로 보여 진다.

위의 결과는 추가적으로 지출한 평균금액인 147만원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써, 실제 추가 사용한 금액과는 차이가 있다.

〈표 III-20〉 자립정착금 외 추가 사용 금액

(단위: 만원, 명, %)

구분(명)	자립생활에 도움이 되는 자립정착금 임금 방법														
	대학 등록금 및 교재비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	기전 제품 및 가구집기 구입비	생활품 등 생활비	기술 자격 및 취업 훈련을 위한 학원 등록비	식품 등 주부 식비	수도 광열비 등 관리비	의료 비	교양 오락비	피복 신발	결혼 자금	교통 통신 비	유형 비	기타	
전체	합계(146)	25	59	11	15	3	6	2	4	3	4	5	4	1	4
	퍼센트(%)	17.0	40.1	7.5	10.2	2.0	4.0	1.4	2.7	2.0	2.7	3.4	2.7	.7	2.7
	응답자 수(명)	44	69	58	89	17	50	43	36	29	45	5	60	10	7
보호 체계별	아동복지시설	26	60	11	14	3	5	2	4	3	4	5	4	1	4
	가정위탁	1	34	12	32	9	21	0	0	3	12	0	6	1	0
직업별	진학자	58	61	11	21	6	8	3	5	4	5		3	3	5
	취업자	9	63	13	10	2	4	2	3	2	3	6	3	1	2
	무직자	11	46	7	14	2	7	2	8	4	5	9	3	.3	6
	100만원대	8	24	13	13		2	1			1		3		
정착금 금액별	200만원대	21	56	14	11	8	8	2	8		5	35	3		
	300만원대	14	70	6	15	1	8	1	3	2	3	.2	5	.2	2.
	400만원대	61	37	6	8	1	6	1	3	2	1		1	1	9
	500만원대	25	64	15	17	4	5	3	5	4	5	3	4	2	4

라. 추가비용 마련방법 및 마련금액

1) 추가비용 마련방법

다음의 <표 Ⅲ-21>는 추가적으로 발생한 지출항목이 있다고 응답한 조사대상자 중 자립정착금 외 추가비용을 마련했었던 방법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전체 응답자의 70.9%가 본인소득으로 추가 비용을 마련하였으며, 디딤씨앗통장으로 20.6%로, 정부지원금으로 18.1%, 개인후원금으로 14.6%, 한국장학재단으로 12.1%, 원가족의 도움 7.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호체계별로 살펴보면, 가정위탁의 경우 위탁부모에 대한 의존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본인소득으로 마련하였다는 비율이 다른 보호체계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타 보호체계보다 개인후원금에 대한 비율이 낮고, 디딤씨앗통장과 신용대출에 대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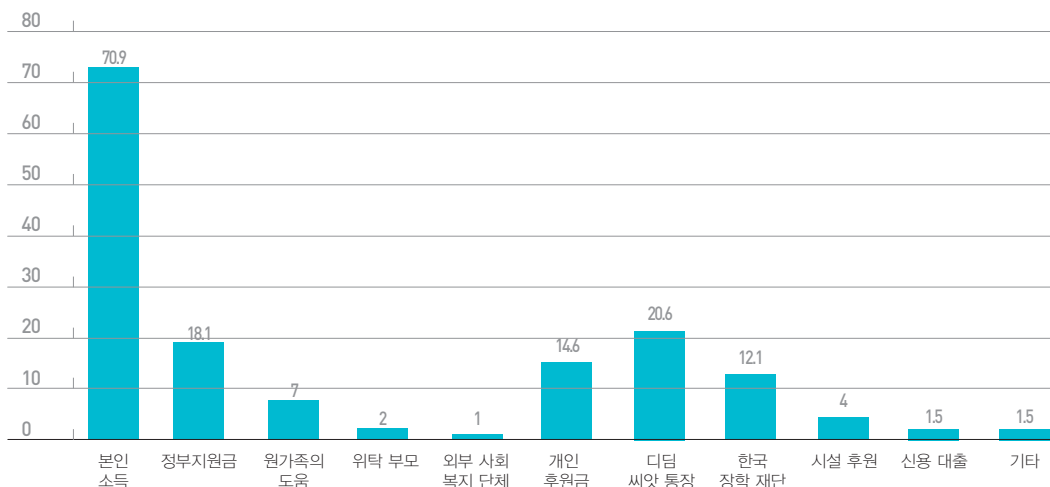
직업별로 살펴보면, 진학자는 취업자 또는 무직자에 비해 정부지원금인 수급비에 대한 사용비율이 높았으며, 디딤씨앗통장과 한국장학재단을 활용하는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무직자는 진학자 또는 취업자보다 원가족의 도움을 받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자립정착금 금액별로 살펴보면, 100만원대의 정착금을 수령한 응답자는 100% 본인 소득으로 추가 지출금액을 마련하였다. 200만원대는 본인소득과 디딤씨앗통장을 활용하는 경우가 높았고, 정부지원금을 활용하는 경우도 높게 나타났다. 또한 300만원대는 다른 금액대의 정착금을 수령한 응답자보다 한국장학재단을 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1〉 자립정착금 외 추가 비용 마련방법(중복응답)

(단위: 명, %)

구분(명)	자립정착금 입금 안내											
	본인 소득	정부 지원금	원 가족의 도움	위탁 부모 (조부모, 친인척 포함)	외부 사회 복지 단체	개인 후원금	디딤 씨앗 통장	한국 장학재단	시설 후원	신용 대출	기타	
전체(199)	70.9	18.1	7.0	2.0	1.0	14.6	20.6	12.1	4.0	1.5	1.5	
보호 체계별 (199)	아동양육시설	71.1	16.8	7.5	1.7	1.2	15.6	19.7	11.6	4.0	.6	1.2
	공동생활가정	81.3	25.0				6.3	37.5	18.8	6.3	12.5	6.3
	가정위탁	50.0	30.0	10.0	10.0		10.0	10.0				
직업별 (199)	진학자	67.1	37.0	5.5		2.7	15.1	27.4	30.1	4.1	1.4	4.1
	취업자	78.9	4.4	4.4	2.2		15.6	15.6	2.2	2.2	1.1	
	무직자	58.3	13.9	16.7	5.6		11.1	19.4		8.3	2.8	
정착금 금액별 (199)	100만원대	100.0	11.1	11.1				11.1				
	200만원대	71.4	33.3	4.8		4.8	14.3	38.1	14.3		4.8	
	300만원대	69.6	14.3	8.9			16.1	10.7	7.1	5.4		1.8
	400만원대	73.9	26.1		4.3		13.0	26.1	17.4			
	500만원대	67.8	15.6	7.8	3.3	1.1	15.6	22.2	14.4	5.6	2.2	2.2



〈그림 III-5〉 자립정착금 외 추가비용 마련방법

2) 추가비용 마련방법

다음의 <표 Ⅲ-22>는 자립정착금 외 추가발생된 비용 마련방법에 따른 사용금액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조사대상자는 본인소득에서 평균 64만원을 추가 발생된 비용을 충당하였으며, 다음으로 개인후원금 20만원, 디딤씨앗통장 19만원, 신용대출로 18만원, 한국장학재단에서 17만원 등의 순으로 사용하였다.

보호체계별로 살펴보면, 아동복지시설은 가정위탁보다 본인소득, 개인후원금, 신용대출로 사용하는 금액이 더 많았던 것에 비해 가정위탁은 정부지원금이나 원가족의 도움, 위탁부모의 도움으로 받았던 금액이 더 많았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취업자는 진학자 또는 무직자에 비해 본인소득, 신용대출, 개인후원금에 대한 사용금액 비중이 컸으며, 진학자는 다른 취업자 또는 무직자에 비해 정부지원금과 디딤씨앗통장, 한국장학재단에 대한 사용금액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립정착금 금액별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본인소득에 대한 부분으로 추가 비용을 충당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디딤씨앗통장, 개인후원금, 한국장학재단의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2> 자립정착금 외 추가비용 마련방법(중복응답)

(단위: 명, %)

구분(명)	자립정착금 입금 안내											
	본인 소득	정부 지원 금	원 가족의 도움	위탁 부모 (조부모, 친인척 포함)	외부 사회 복지 단체	개인 후원 금	디딤 씨앗 통장	한국 장학 재단	시설 후원	신용 대출	기타	
전체	합계(170)	64	5	5	1	1	20	19	17	6	18	14
	응답 퍼센트(%)	38.0	3.0	3.0	.6	.6	11.8	11.2	10.0	3.5	10.6	8.2
	응답자 수(명)	141	36	14	4	2	29	41	24	8	3	3
보호 체계별	아동복지시설	66	5	5	1	1	20	19	18	6	19	15
	가정위탁	28	11	12	7		12	18	12			
직업별	진학자	57	12	7		3	18	27	44	12	.2	42
	취업자	75	1	5	1		25	13	6	1	37	
	무직자	46	3	4	2		7	19		6	1	
정착금 금액별	100만원대	46	2	2				4				
	200만원대	101	9	1		6	17	41	18		1	
	300만원대	63	4	5			23	15	9	11		2
	400만원대	45	4		2		31	32	41			
	500만원대	64	6	8	1	1	18	15	18	6	4	27

마. 자립정착금 미사용분에 대한 사용계획

다음의 <표 III-23>는 앞서 제시한 <표 III-17>에서 ‘일부 또는 전액 사용하지 않음(저축포함)’이라고 응답한 조사대상자에 한하여 그 사용계획을 질문한 조사결과이다. 조사대상자의 55.9%가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7.3%, 결혼자금으로 24.5%, 대학등록금 및 교재비로 17.6%, 생필품 등 생활비로 16.7%,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을 위한 학원등록비 14.7%, 가전제품 및 가구집기 구입비 9.8%, 의료비 6.9% 등으로 나타났다.

보호체계별로 살펴보면, 아동양육시설은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로 28.9%, 사용하지 않음 16.7%, 결혼자금 12.3% 등 순으로 응답하였고, 공동생활가정은 사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37.5%로 가장 높았고, 대학등록금 및 교재비, 생필품 등 생활비, 결혼자금 각각 12.5% 응답하였다. 가정위탁은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와 결혼자금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비율이 18.2%로 가장 높았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진학자의 경우 잔여 자립정착금에 대해 사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23.2%로 가장 높았으며, 전월세보증금 19.6%, 대학등록금 및 교재비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7.9%로 나타났다. 취업자의 경우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로 사용하겠다는 응답이 29.7%로 가장 높았고, 결혼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한 비율이 진학자 또는 무직자에 비해 최대 3배 정도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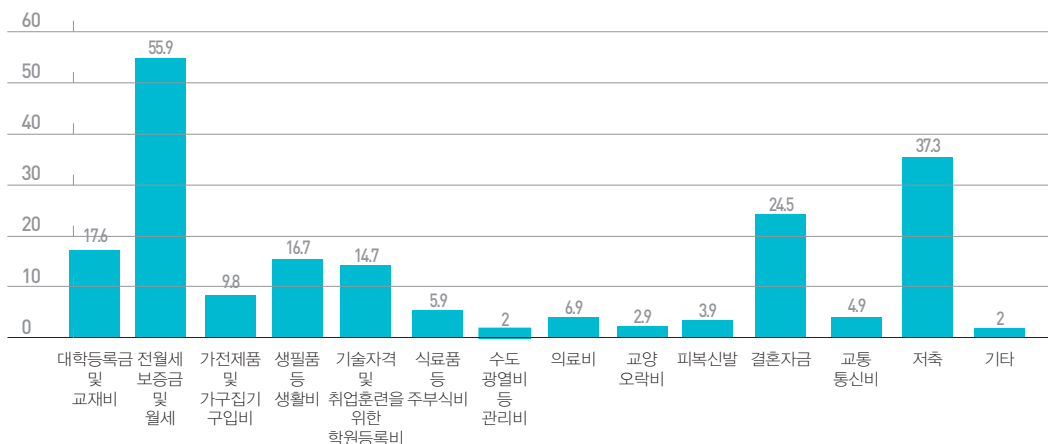
자립정착금 금액별로 살펴보면, 100만원대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비율이 100%이며, 200만원대는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와 결혼자금으로 각 30%, 대학등록금 및 교재비로 20%, 의료비와 사용하지 않겠다는 비율이 10%로 나타났다. 또한 300만원대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비율이 25.8%로 가장 높았고,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가 22.6%로 나타났다. 400만원대는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로 사용하겠다는 비율이 30.4%, 사용하지 않겠다는 비율이 15.2% 등으로 나타났고, 500만원대 역시 전월세 보증금으로 사용하겠다는 비율이 27.0%로 가장 높았으며, 사용하지 않겠다는 비율이 17.2%, 결혼자금 13.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립정착금 지원 금액이 클수록 추후 사용계획에 대한 사용 폭이 넓어짐을 알 수 있다. 자립정착금 미사용분 사용계획에 대해 100만원대에서는 1개의 항목, 200만원대에서는 5개 항목, 300만원대에서는 10개 항목, 400만원대에서는 12개 항목, 500만원대에서는 15개 항목으로 늘어났다.

〈표 III-23〉 사용하지 않은 자립정착금에 대한 추후 사용계획(중복응답)

(단위: 명, %)

구분(명)	자립정착금 입금 안내															
	대학 등록금 및 교재비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	가전 제품 및 가구 집기 구입 비	생필 품 등 생활 비	기술자 격 및 취 업 훈 련 을 위 한 학 원 등 료 비	식료 품 등 주 부 식 비	수도 광 열 등 관 리 비	의료 비	교양 락 비	피복 신 발	결혼 자 금	교통 신 비	부모, 친 척, 형 제 에 게 빌 려 줄	사 용 하 지 않 음 (저 축 포 함)	기타	
전체(392)	17.6	55.9	9.8	16.7	14.7	5.9	2.0	6.9	2.9	3.9	24.5	4.9	1.0	37.3	2.0	
보호 체계별 (392)	아동양육 시설	8.3	28.9	4.9	8.3	6.4	3.4	.5	2.9	1.5	2.0	12.3	2.0	.5	16.7	1.5
	공동생활 가정	12.5	6.3		12.5	6.3		6.3	6.3			12.5			37.5	
	가정위탁	9.1	18.2	9.1	9.1	9.1			9.1			18.2	9.1		9.1	
직업별 (392)	진학자	17.9	19.6		8.9	8.9	1.8	1.8	5.4		1.8	8.9	1.8		23.2	
	취업자	5.1	29.7	7.2	8.0	5.1	2.9		2.2	1.4	2.2	15.9	2.2	.7	15.2	2.2
	무직자	8.1	27.0	2.7	10.8	8.1	5.4	2.7	5.4	2.7		5.4	2.7		18.9	
정착금 금액별 (392)	100만원대														100.0	
	200만원대	20.0	30.0						10.0			30.0			10.0	
	300만원대	3.2	22.6	6.5	9.7	6.5	6.5		6.5		3.2	9.7			25.8	
	400만원대	8.7	30.4		10.9	10.9	2.2		6.5	2.2	4.3	4.3	2.2		15.2	2.2
	500만원대	9.0	27.0	6.6	7.4	6.6	2.5	1.6	.8	1.6	.8	13.9	3.3	.8	17.2	.8



〈그림 III-6〉 사용하지 않은 자립정착금에 대한 사용계획

바. 대출현황

1) 빌린 돈 또는 대출금 여부

다음의 <표 III-24>는 현재 빌린 돈 또는 대출금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조사대상자의 11.6%는 현재 빌린 돈이나 대출금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보호체계별로 살펴보면, 공동생활가정 25.8%로 빌린 돈이나 대출금이 있다고 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가정위탁 15.8%, 아동양육시설 10.1%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무직자의 경우 진학자나 취업자에 비해 빌린 돈 또는 대출한 비율이 낮았다. 자립정착금 금액별로 살펴보았을 때, 200만원대에서 돈을 빌린 비율이 다른 자립정착금 금액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4〉 현재 빌린 돈 또는 대출금 여부

(단위: 명, %)

구분(명)		현재 빌린 돈 또는 대출금 여부	
		예	아니오
전체(415)		11.6	88.4
보호 체계별 (415)	아동양육시설	10.1	89.9
	공동생활가정	25.8	74.2
	가정위탁	15.8	84.2
직업별 (415)	진학자	12.9	87.1
	취업자	12.0	88.0
	무직자	8.0	92.0
정착금 금액별 (392)	100만원대		100.0
	200만원대	23.5	76.5
	300만원대	11.2	88.8
	400만원대	11.1	88.9
	500만원대	11.3	88.7

2) 대출금액

다음의 〈표 Ⅲ-25〉는 현재 빌린 돈 또는 대출금이 있다고 응답한 조사대상자의 금액을 조사한 결과이다.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를 빌린 비율이 42.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가 19.1%, 100만원 미만이 17.0% 등의 순이었으며, 이들의 평균 부채액은 857만원이다.

보호체계별로 살펴보면, 아동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은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대출금이 각각 41.7%, 62.5%, 가정위탁의 경우 100만원 미만이 66.7%로 가장 높았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진학자의 50%와 취업자의 39.1%가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돈을 빌린 것으로 보여 진다.

자립정착금 금액별로 살펴보면, 300~400만원대의 자립정착금을 받은 응답자는 100만원 미만의 대출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500만원대의 자립정착금을 받은 응답자는 61.9%가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대출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5〉 현재 빌린 돈 또는 대출금

(단위: 명, %)

구분(명)		현재 빌린 돈 또는 대출금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3000만원 이상
전체(415)		17.0	42.6	19.1	12.8	2.1	6.4
보호 체계별 (415)	아동양육시설	16.7	41.7	19.4	11.1	2.8	8.3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62.5	25.0	12.5		
직업별 (415)	진학자	22.2	50.0	16.7	5.6	5.6	
	취업자	8.7	39.1	17.4	21.7		13.0
	무직자	33.3	33.3	33.3			
정착금 금액별 (392)	100만원대						
	200만원대		25.0	25.0	25.0	12.5	12.5
	300만원대	36.4	27.3	18.2	9.1		9.1
	400만원대	40.0	20.0	20.0	20.0		
	500만원대	9.5	61.9	14.3	9.5		4.8

6. 자립정착금의 도움 및 만족도

가. 초기자립 도움정도

자립정착금의 초기자립 도움정도는 보호종결아동이 초기 자립생활을 시작할 때에 자립정착금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것이다(〈표 III-26〉). 조사대상자의 자립정착금에 대한 초기자립 도움정도의 평균점수는 5점 중 4.19점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초기자립 도움정도의 점수범위는 최소 1점에서 최대 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초기자립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상태를 의미한다. 초기자립의 도움정도 차이는 보호체계에 따라 집단 간 평균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양육시설의 평균은 4.15점, 공동생활가정은 4.39점, 가정위탁은 4.58점으로 전체적으로 도움정도를 높게 평가하였다.

직업별, 자립정착금 금액별 초기자립의 도움정도는 집단 간 평균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직업별로 취업자의 평균은 3.99점으로 진학자 4.31점과 무직자 4.49점에 비해 평균이 다소 낮게 나타났

다. 조사대상자가 수령한 자립정착금 금액이 높을수록 초기자립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Ⅲ-26〉 초기자립의 도움 정도 차이

(단위: 명, %)

구분(명)		자립정착금에 대한 초기자립의 도움 정도			
		N	평균(M)	표준편차(SD)	F
전체(415)		415	4.19	.961	
보호 체계별 (415)	아동양육시설	365	4.15	.985	2.493
	공동생활가정	31	4.39	.761	
	가정위탁	19	4.58	.607	
직업별 (415)	진학자	140	4.31	.866	9.633*
	취업자	200	3.99	1.047	
	무직자	75	4.49	.760	
정착금 금액별 (392)	100만원대	21	3.14	1.062	10.752*
	200만원대	34	3.79	1.149	
	300만원대	98	4.08	.970	
	400만원대	45	4.16	1.065	
	500만원대	194	4.39	.802	

*p<.05

나. 금액에 대한 만족도

조사대상자가 수령한 자립정착금 금액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 Ⅲ-27〉과 같다. 자립정착금 금액 만족도 평균점수는 최대 5점 중 3.47점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자립정착금의 초기자립 도움정도의 평균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자립정착금 금액에 따라 조사대상자가 수령한 금액에 대한 만족도는 집단 간 평균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보호체계별로 살펴보면, 아동양육시설의 평균은 3.45점, 공동생활가정은 3.42점, 가정위탁은 3.74점으로 가정위탁을 제외한 아동복지시설에서의 평균점수는 전체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종결 당시 직업별로 살펴보면, 취업자의 평균은 3.35점으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자립정착금 금액별로 살펴보았을 때에는 금액이 높을수록 금액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7〉 자립정착금 금액에 대한 만족도 차이

(단위: 명, %)

구분(명)		자립정착금 금액에 대한 만족도			
		N	평균(M)	표준편차(SD)	F
전체(415)		415	3.47	1.118	
보호 체계별 (415)	아동양육시설	365	3.45	1.125	.602
	공동생활가정	31	3.42	1.119	
	가정위탁	19	3.74	.991	
직업별 (415)	진학자	140	3.52	1.096	2.475
	취업자	200	3.35	1.133	
	무직자	75	3.67	1.095	
정착금 금액별 (392)	100만원대	21	2.48	.981	10.710*
	200만원대	34	2.74	1.163	
	300만원대	98	3.34	1.074	
	400만원대	45	3.53	1.100	
	500만원대	194	3.67	1.030	

다. 자립에 필요한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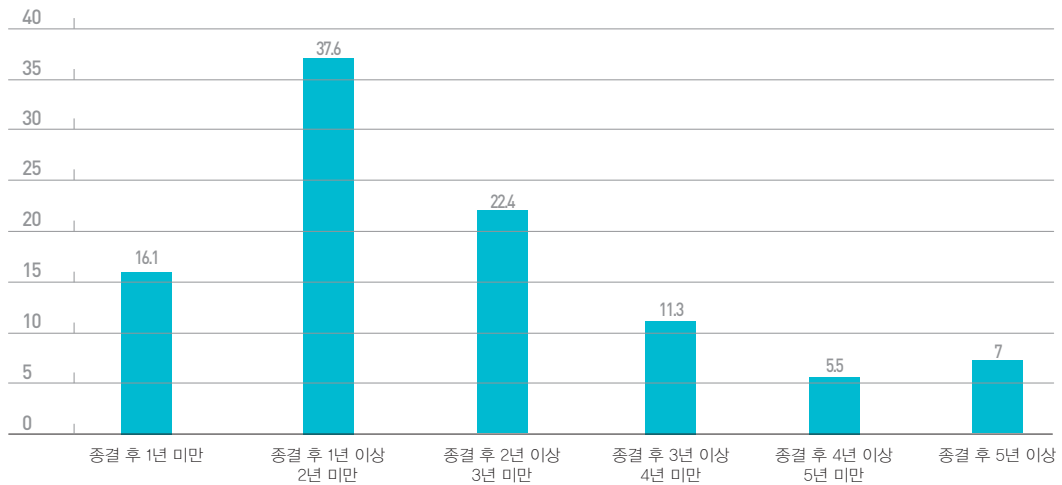
다음의 〈표 III-28〉는 종결이후부터 자립하기까지 필요한 기간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전체 응답자의 37.6%는 종결 후 1년 이상 2년 미만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종결 후 2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22.4%, 종결 후 1년 미만의 기간을 16.1%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보호체계별, 직업별, 자립정착금 금액별 종결 후 자립하기까지 필요한 기간에 대해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보호체계별로 살펴보면, 아동양육시설은 38.9%가 종결 후 1년 이상 2년 미만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공동생활가정은 종결 후 2년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8.0%로 나타났다. 가정위탁의 경우 종결 후 2년 이상 3년 미만이 31.6%로 가장 높았고 종결 후 1년 이상 2년 미만과 종결 후 5년 이상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각 26.3%를 차지하여 아동복지시설의 퇴소아동과는 자립하기까지 그 기간을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표 III-28〉 종결 후 자립하기까지 필요한 기간

(단위: 명, %)

구분(명)	종결 이후 자립하기까지 필요한 기간						
	종결 후 1년 미만	종결 후 1년 이상 2년 미만	종결 후 2년 이상 3년 미만	종결 후 3년 이상 4년 미만	종결 후 4년 이상 5년 미만	종결 후 5년 이상	
전체(415)	16.1	37.6	22.4	11.3	5.5	7.0	
보호 체계별 (415)	아동양육시설	15.6	38.9	22.2	11.2	5.8	6.3
	공동생활가정	29.0	29.0	19.4	16.1	3.2	3.2
	가정위탁	5.3	26.3	31.6	5.3	5.3	26.3
직업별 (415)	진학자	17.5	35.1	16.5	12.4	10.3	8.2
	취업자	16.6	37.5	25.3	10.3	3.2	7.1
	무직자	12.3	41.5	20.0	13.8	7.7	4.6
정착금 금액별 (392)	100만원대	14.3	47.6	14.3	14.3		9.5
	200만원대	8.8	20.6	32.4	17.6	8.8	11.8
	300만원대	20.4	43.9	16.3	9.2	6.1	4.1
	400만원대	22.2	28.9	22.2	13.3	4.4	8.9
	500만원대	13.4	39.7	24.2	10.3	5.7	6.7



〈그림 III-7〉 종결 후 자립하기까지 필요한 기간

라. 초기정착에 필요한 사용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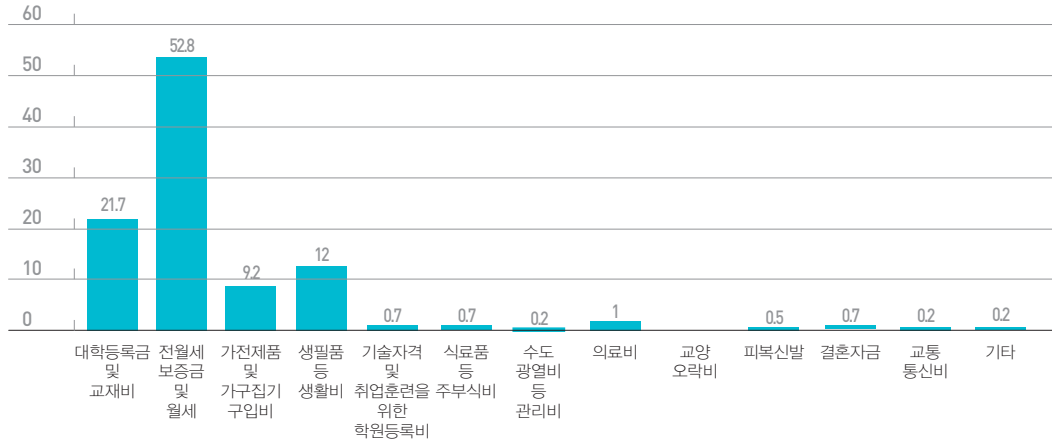
다음의 <표 III-29>, <표 III-30>, <표 III-31>는 종결 당시 초기 정착하는데 필요한 항목에 대한 조사한 결과이다.

종결 당시 초기 정착하는데 필요한 항목에 대해 조사응답자는 초기정착 시 가장 필요한 항목 1순위로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52.8%)를 꼽았다. 다음으로 대학등록금 및 교재비 21.7%, 생필품 등 생활비 12.0%, 가전제품 및 가구집기 구입비 9.2% 등의 순이었다. 가정위탁은 다른 보호체계에 비해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에 대한 비율이 낮았던 반면, 생필품 등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2배 정도 높았다.

초기정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항목에 대한 2순위는 생필품 등 생활비에 대한 비율이 32.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가전제품 및 가구집기 구입비가 22.7%,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 16.6%, 대학등록금 및 교재비 6.7% 등의 순이었다. 가정위탁의 경우 다른 보호체계보다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을 위한 학원등록비와 식료품 등 주부식비에 대한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2순위에서 진학자는 취업자 또는 무직자에 비해 전월세 보증금이 가장 많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초기정착을 위해 필요한 항목에 대한 3순위 또한 생필품 등 생활비에 대한 비율이 31.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가전제품 및 가구집기 구입비와 식료품 등 주부식비가 각 10.4%, 수도광열비 등 관리비가 9.9%,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을 위한 학원등록비 8.0%, 교통통신비 7.7%, 의료비 6.0% 등의 순이었다. 아동양육시설은 공동생활가정과 가정위탁에 비해 대학등록금 및 교재비가 필요하다는 비율이 약 3~4배 이상 낮았고, 가정위탁은 식료품 등 주부식비와 교통통신비에 대한 비율이 다른 보호체계보다 높았다.

초기정착 시 진학자에게 필요한 항목 1순위로 대학등록금 및 교재비가 가장 높았으며, 2순위로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 3순위는 생필품 등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취업자와 무직자의 경우 초기정착 시 필요한 항목에 대해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를 1순위로 꼽았으며, 2, 3순위로 생필품 등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Ⅲ-8〉 초기정착 시 필요항목(1순위)

〈표 III-29〉 초기 정착 시 필요항목(1순위)

(단위: 명, %)

구분(명)	자립정착금 임금 안내												
	대학 등록금 및 교재비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	가전제품 및 가구집기 구입비	생필품 등 생활비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을 위한 학원등록비	식료품 등 주식비	수도 광열비 등 관리비	의료비	교양 오락비	피복 신발	결혼 자금	교통신비	기타
전체(392)	21.7	52.8	9.2	12.0	.7	.7	.2	1.0		.5	.7	.2	.2
보호 체계별 (415)	아동양육 시설	20.8	54.2	9.9	10.7	.8	.8	.3	1.1	.5	.5	.3	
	공동생활 가정	25.8	51.6	3.2	16.1								3.2
	가정위탁	31.6	26.3	5.3	31.6						5.3		
직업별 (415)	진학자	49.5	32.0	10.3	8.2								
	취업자	11.9	61.3	8.3	12.3	.8	1.2	.4		.8		.4	.4
	무직자	18.5	50.8	10.8	16.9	1.5						1.5	
정착금 금액별 (392)	100만원대	23.8	42.9	19.0	4.8	9.5							
	200만원대	17.6	61.8	5.9	11.8		2.9						
	300만원대	13.3	59.2	12.2	8.0	1.0	1.0					1.0	1.0
	400만원대	26.7	44.4	4.4	22.2		2.2						
	500만원대	24.7	51.0	8.2	12.9	.5				1.0		1.0	.5

〈표 III-30〉 초기 정착 시 필요항목(2순위)

(단위: 명, %)

구분(명)	자립정착금 입금 안내													
	대학 등록금 및 교재비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	가전제품 및 가구집기 구입비	생필 품 등 생활 비	기술자격 및 취업 훈련을 위한 학원등 료비	식료품 등 주 부식비	수도 광열비 등 관리비	의 료 비	교양 오락 비	피복 신발	결혼 자금	교통 신 비	기타	
전체(415)	6.7	16.6	22.7	32.3	6.0	4.6	4.1	2.1	.2	1.4	.7	2.4	.2	
보호 체계별 (415)	아동양육 시설	7.1	16.2	22.0	32.9	5.5	4.4	4.1	2.5	.3	1.4	.8	2.7	.3
	공동생활 가정	6.5	16.1	35.5	29.0	3.2	3.2	3.2			3.2			
	가정위탁		26.3	10.5	26.3	21.1	10.5	5.3						
직업별 (415)	진학자	7.2	30.9	18.6	26.8	6.2	2.1	2.1	1.0		2.1		3.1	
	취업자	5.1	13.4	25.7	34.8	5.9	5.5	4.0	1.6	.4	1.2		1.6	
	무직자	12.3	7.7	16.9	30.8	6.2	4.6	7.7	4.6	3.1	1.5		4.6	
정착금 금액별 (392)	100만원대	9.5	23.8	9.5	38.1	4.8	4.8	9.5						
	200만원대	5.9	20.6	35.3	23.5	8.8								
	300만원대	5.1	7.1	22.4	45.9	2.0	6.1	6.1					1.0	
	400만원대	4.4	24.4	20.0	22.2	4.4	6.7	6.7			2.2		2.2	
	500만원대	7.2	17.5	24.7	28.9	7.7	4.6	2.1		.5	2.6		3.1	

〈표 III-31〉 초기 정착 시 필요항목(3순위)

(단위: 명, %)

구분(명)	자립정착금 임금 안내													
	대학 등록금 및 교재비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	가전제품 및 가구집기 구입비	생필품 등 생활비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을 위한 학원등록비	식료품 등 주부식비	수도 광열비 등 관리비	의료비	교양 오락비	피복 신발	결혼 자금	교통신비	기타	
전체(415)	4.6	3.6	10.4	31.8	8.0	10.4	9.9	6.0	.7	5.1	1.7	7.7	.2	
보호 체계별 (415)	아동양육 시설	3.6	4.1	9.9	31.2	8.2	9.9	10.1	6.6	.8	5.8	1.9	7.7	.3
	공동생활 가정	12.9		12.9	41.9	9.7	9.7	6.5				6.5		
	가정위탁	10.5		15.8	26.3		21.1	10.5	5.3			10.5		
직업별 (415)	진학자	7.2	3.1	10.3	42.3	4.1	8.2	9.3	5.2	1.0	3.1		6.2	
	취업자	4.0	4.0	10.7	29.6	9.5	9.9	10.3	6.7	.4	4.0		8.3	
	무직자	3.1	3.1	9.2	24.6	7.7	15.4	9.2	4.6	1.5	12.3		7.7	
정착금 금액별 (392)	100만원대	9.5	4.8	4.8	38.1	9.5	4.8	4.8	4.8	4.8	4.8		9.5	
	200만원대	2.9		11.8	35.3	2.9	17.6	14.7	2.9		2.9		8.8	
	300만원대	3.1	9.2	9.2	23.5	7.1	5.1	8.2	10.2	1.0	7.1		13.3	
	400만원대	4.4	4.4	11.1	33.3	13.3	13.3	8.9	6.7	2.2			2.2	
	500만원대	4.6	1.5	9.8	35.1	8.2	11.9	10.3	4.6	.5	5.7		6.2	

마. 자립의 어려움

다음의 <표 Ⅲ-32>는 자립생활에 가장 어려웠던 부분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조사대상자의 44.1%는 생활비 등 자립자금의 부족으로 어려웠다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어려움은 21.9%, 안정적인 주거지의 부재 14.5%,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의 부재 8.9%, 기타 4.6%, 원가족 등 연고자의 부재 4.3%, 시설 또는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사회적 편견 1.7% 순이었다. 기타 의견으로 외로움이 있다. 직업별 자립생활에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보호체계별로 살펴보면, 안정적인 주거지의 부재로 어려웠다는 응답이 가정위탁보다 아동복지시설인 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에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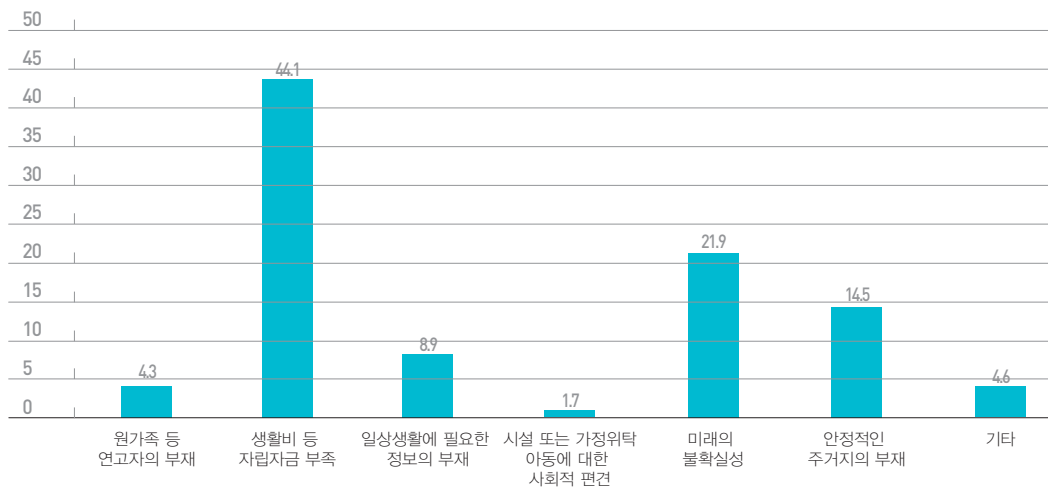
직업별로 살펴보면, 진학자는 취업자 또는 무직자에 비해 생활비 등 자립자금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에 대한 응답비율이 더 높았고, 무직자는 진학자 또는 취업자에 비해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어려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업자 또는 무직자는 진학자에 비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의 부재로 인한 어려움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2〉 자립생활에 가장 어려웠던 부분

(단위 : 명, %)

구분(명)	자립정착금을 알게 된 경로							
	원가족 등 연고자의 부재	생활비 등 자립자금 부족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 보의 부재	시설 또는 가정위탁 아동에 대한 사회적 편견	미래의 불확실성 (진로, 장래희 망의 부재)	안정적인 주거지의 부재	기타	
전체(415)	4.3	44.1	8.9	1.7	21.9	14.5	4.6	
보호 체계별 (415)	아동복지시설	4.4	43.0	9.0	1.9	21.9	14.8	4.9
	공동생활가정	6.5	51.6	9.7		16.1	12.9	3.2
	가정위탁		52.6	5.3		31.6	10.5	
$\chi^2=5.883$ $df=12$								
직업별 (415)	진학자	4.1	55.7	5.2		13.4	19.6	2.1
	취업자	5.1	42.7	10.3	2.8	20.2	12.6	6.3
	무직자	1.5	32.3	9.2		41.5	13.8	1.5
$\chi^2=30.182^*$ $df=12$								
정착금 금액별 (392)	100만원대	9.5	47.6	9.5	4.8	9.5	19.0	
	200만원대	2.9	52.9	5.9		11.8	23.5	2.9
	300만원대	4.1	50.0	8.2	1.0	16.3	14.3	6.1
	400만원대	2.2	33.3	13.3	4.4	28.9	8.9	8.9
	500만원대	4.6	42.8	8.8	1.5	25.3	12.9	4.1
$\chi^2=23.316$ $df=24$								

*p<.05



〈그림 III-9〉 자립생활에 가장 어려웠던 부분

바. 도움이 가능한 기관 또는 사람

1)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또는 사람

다음의 <표 Ⅲ-33>는 긴급한 상황에 처하게 될 때에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또는 사람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전체 응답자 중 시설종사자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 담당자의 도움을 받는 비율이 37.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없다 29.9%, 원가족 26.0%, 친구 22.7%, 시설친구 또는 시설선후배 12.8%, 이성친구 또는 배우자 7.0%, 위탁부모 6.3%, 후원자 5.1%, 사회복지단체 및 재단 3.6%, 기타 1.4% 순이었다.

긴급한 상황에서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비율이 29.9%에 이르러 종결이후 보다 철저한 사례관리와 긴급지원에 대한 자원의 확보가 시급함을 보여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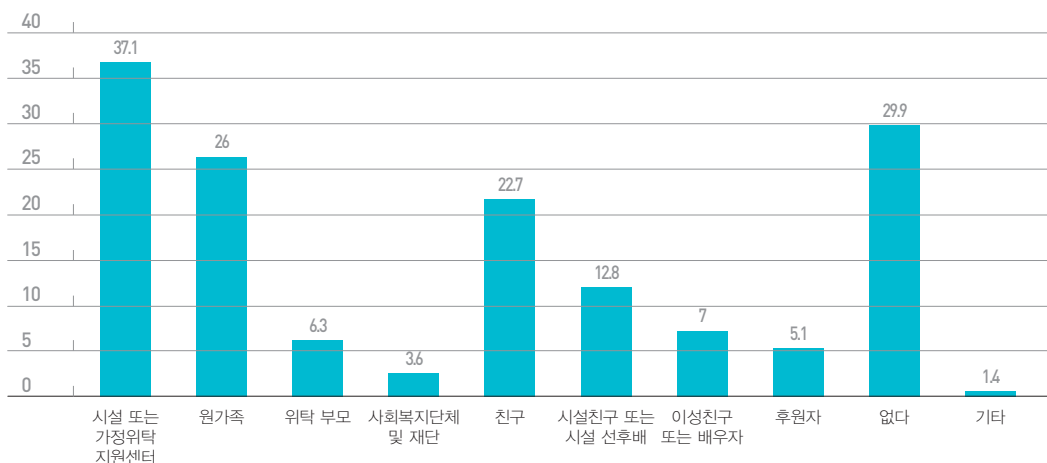
보호체계별로 살펴보면,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이 시설의 도움을 받는 것에 비해 가정위탁 보호종결아동은 가정위탁지원센터라는 자원의 활용도가 낮았으며, 위탁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이 31.6%로 더 높은 것으로 보여 진다.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은 원가족과 친구에게 경제적 도움을 기대할 수 있다는 비율이 가정위탁보다 높았다.

현재 직업별로 살펴보면, 무직자는 진학자와 취업자에 비해 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와 친구라는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비율이 더 낮았으나, 원가족과 이성친구 또는 배우자라는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비율은 더 높게 나타났다.

〈표 III-33〉 긴급한 상황에서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또는 사람(중복응답)

(단위 : 명, %)

구분(명)	긴급한 상황에서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또는 사람											
	시설 또는 가정위탁 지원센터	원가족	위탁 부모 (조부모, 친인척 포함)	일상 생활에 필요한 정보의 부재	사회복지 단체 및 재단	친구	시설친구 또는 시설 선후배	이성친구 또는 배우자	후원자	없다	기타	
전체(415)	37.1	26.0	6.3	3.6	22.7	12.8	7.0	7.0	5.1	29.9	1.4	
보호 체계별 (415)	아동양육시설	38.4	26.6	5.5	4.1	22.5	13.7	7.1	7.1	5.5	29.0	1.6
	공동생활가정	35.5	29.0			29.0	6.5	3.2	3.2	3.2	35.5	
	가정위탁	15.8	10.5	31.6		15.8	5.3	10.5	10.5		36.8	
직업별 (415)	진학자	44.3	22.7	8.2	4.1	27.8	15.5	4.1	4.1	7.2	24.7	1.0
	취업자	36.4	26.1	4.7	2.8	22.1	13.0	6.3	6.3	4.3	32.8	1.6
	무직자	29.2	30.8	9.2	6.2	16.9	7.7	13.8	13.8	4.6	26.2	1.5
정착금 금액별 (392)	100만원대	28.6	19.0		4.8	19.0	4.8	4.8	4.8		47.6	
	200만원대	38.2	29.4	11.8	5.9	26.5	8.8	8.8	8.8	2.9	20.6	
	300만원대	36.7	26.5	1.0	2.0	17.3	12.2	9.2	9.2	5.1	33.7	1.0
	400만원대	26.7	22.2	11.1	2.2	31.1	17.8	13.3	13.3		31.1	
	500만원대	40.2	28.9	7.7	4.1	23.2	14.4	4.6	4.6	7.7	26.8	2.6



〈그림 III-10〉 긴급한 상황에서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또는 사람

2) 지금까지 도움을 준 사람

다음의 <표 Ⅲ-34>는 종결 이후 지금까지 도움을 준 사람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조사응답자 중 53.0%는 시설종사자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 담당자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15.9%, 원가족 12.5%, 시설친구 또는 시설선후배 5.8%, 이성친구 또는 배우자 5.1%, 위탁부모 4.3% 등의 순이었다. 보호체계별 종결이후 지금까지 도움을 준 사람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보호체계별로 살펴보면,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은 절반 이상이 시설종사자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에 비해 가정위탁 보호종결아동은 가정위탁지원센터 담당자에게 도움을 받게 되는 비율이 낮았다. 대신 가정위탁은 위탁부모와 이성친구 또는 배우자에게 도움을 받게 되는 경우가 다른 보호체계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동생활가정은 아동양육시설과 가정위탁에 비해 원가족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취업자 또는 무직자는 진학자에 비해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 없다는 비율이 더 높았다.

〈표 III-34〉 종결이후 지금까지 도움을 준 사람

(단위 : 명, %)

구분(명)	자립정착금을 알게 된 경로								
	시설종사자 또는 가정위탁 지원센터 담당자	원가족	위탁부모 (조부모, 친 인척 포함)	시군구 담당 공무원	시설친구 또는 시설 선후배	이성친구 또는 배우자	없다	기타	
전체(415)	53.0	12.5	4.3	.7	5.8	5.1	15.9	2.7	
보호 체계별 (415)	아동복지시설	53.7	12.9	3.0	.5	6.3	4.4	16.2	3.0
	공동생활가정	54.8	6.5	3.2	3.2	3.2	6.5	22.6	
	가정위탁	36.8	15.8	31.6			15.8		
$\chi^2=50.952^* \quad df=12$									
직업별 (415)	진학자	57.7	12.4	5.2	2.1	8.2	6.2	5.2	3.1
	취업자	53.0	12.6	3.2	.4	5.5	3.6	18.6	3.2
	무직자	46.2	12.3	7.7		3.1	9.2	21.5	
$\chi^2=19.916 \quad df=12$									
정착금 금액별 (392)	100만원대	52.4	14.3			4.8	4.8	19.0	4.8
	200만원대	50.0	14.7	2.9		2.9	8.8	14.7	5.9
	300만원대	45.9	12.2	4.1		10.2	6.1	19.4	2.0
	400만원대	51.1	15.6	8.9	2.2	4.4	4.4	13.3	
	500만원대	55.7	12.9	4.1	1.0	5.2	3.1	15.5	2.6
$\chi^2=18.177 \quad df=28$									

*p<.05

사. 자립인식 및 자립생활 향상정도

1) 자립인식

자립인식은 현재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에 어느 정도 자립에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것이며, 그 결과는 〈표 III-35〉과 같다. 조사대상자가 인식한 자립에 대한 평균점수는 최대 5점 중 3.45점이다. 자립인식의 점수범위는 최소 1점에서 최대 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립의 완성도가 높다는 상태를 의미한다. 보호체계별, 직업별 자립인식에 대한 차이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보호체계별로 살펴보면, 아동양육시설의 평균은 3.51점, 공동생활가정은 3.19점, 가정위탁은 2.79점으로 가정위탁의 자립인식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결당시 직업별로 살펴보면 취업자의 평균이 3.60점으로 진학자 3.35점과 무직자 3.25점에 비해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자립정착금 금

액별로 살펴보면, 조사대상자는 금액이 높을수록 자립의 완성도도 높은 것으로 인식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표 Ⅲ-35〉 자립인식에 대한 차이

(단위: 명, %)

구분(명)		자립인식			
		N	평균(M)	표준편차(SD)	F
전체(415)		415	3.45	.936	
보호 체계별 (415)	아동양육시설	365	3.51	.931	6.749*
	공동생활가정	31	3.19	.980	
	가정위탁	19	2.79	.631	
직업별 (415)	진학자	140	3.35	.839	4.946*
	취업자	200	3.60	.988	
	무직자	750	3.25	.917	
정착금 금액별 (392)	100만원대	21	3.24	.831	1.583
	200만원대	34	3.38	1.101	
	300만원대	98	3.65	.964	
	400만원대	45	3.40	.986	
	500만원대	194	3.41	.879	

2) 안정된 자립생활에 대한 향상 정도

안정된 자립생활에 대한 향상 정도는 종결 당시와 비교하였을 때에 자립생활이 얼마나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것이며, 그 결과는 〈표 Ⅲ-36〉과 같다. 조사대상자가 인식한 자립 안정도에 대한 평균점수는 최대 5점 중 3.33점이다. 자립정도의 점수범위는 최소 1점에서 최대 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현재 자립생활이 안정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보호체계별 자립안정의 향상정도는 보호체계별 집단 간 평균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아동양육시설의 평균은 3.37점, 공동생활가정은 3.16점, 가정위탁은 2.74점으로 가정위탁의 자립정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결당시 직업별로 살펴보면, 무직자의 평균이 3.13점으로 진학자 3.30점과 취업자 3.42점에 비해 평균이 다소 낮게 나타났다. 자립정착금 금액별로 살펴보면, 300만원대의 자립정착금을 수령한 조사대상자의 자립 안정도가 3.5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표 III-36〉 자립안정의 향상정도에 대한 차이

(단위: 명, %)

구분(명)		자립안정의 향상정도			
		N	평균(M)	표준편차(SD)	F
전체(415)		415	3.33	.954	
보호 체계별 (415)	아동양육시설	365	3.37	.957	4.544*
	공동생활가정	31	3.16	.860	
	가정위탁	19	2.74	.872	
직업별 (415)	진학자	140	3.30	.942	2.467
	취업자	200	3.42	.958	
	무직자	75	3.13	.949	
정착금 금액별 (392)	100만원대	21	3.10	.831	2.370
	200만원대	34	3.12	1.122	
	300만원대	98	3.53	.922	
	400만원대	45	3.13	.944	
	500만원대	194	3.32	.923	

3) 제 특성별 자립만족도 차이

자립만족도는 현재 자신의 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에 대한 것이며, 그 결과는 〈표 III-37〉과 같다. 조사대상자가 인식한 자립 만족도에 대한 평균점수는 최대 5점 중 3.31점이다. 자립정도의 점수범위는 최소 1점에서 최대 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현재 자립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조사대상자의 보호지역, 자립정착금 금액, 종결연차에 따라 자립만족도는 집단 간 평균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역·특별시 등 대도시의 자립만족도는 평균 3.21점, 그 외 지역은 3.38점으로 그 외 지역에서의 자립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자립정착금 금액에 따른 자립만족도에서 100만원대는 2점대의 점수로 다른 금액대에 비해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종결연차별로 자립만족도를 살펴보면, 조사대상자의 9~10년차의 자립만족도는 4.10점, 7~8년차가 3.58점, 5~6년차가 3.34점 등으로 나타나 평균 이상의 높은 자립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나, 1년차에서 4년차까지 평균이하의 자립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표 III-37〉 제 특성별 자립만족도에 대한 차이

(단위: 명, %)

구분(명)		자립안정의 향상정도			
		N	평균(M)	표준편차(SD)	F
전체(415)		415	3.31	.983	
성별 (415)	남	199	3.26	.995	-.989
	여	216	3.35	.972	
보호 체계별 (415)	대도시(광역시·특별시)	175	3.21	.913	-1.709*
	그 외지역	240	3.38	1.027	
보호 기간별 (415)	5년미만	23	3.13	1.100	1.214
	5년이상 10년미만	92	3.33	.951	
	10년이상 15년미만	108	3.34	.987	
	15년이상 20년미만	73	3.47	1.107	
	20년이상	1	2.00		
	모른다	117	3.20	.893	
장애 여부별 (415)	장애있음	15	3.53	.990	.912
	장애없음	400	3.30	.983	
최종 학력별 (415)	중졸이하	4	3.25	.500	1.187
	고졸	135	3.19	7.011	
	전문대졸(재학포함)	153	3.30	.981	
	대졸(재학포함)	116	3.46	.945	
	대학원졸(재학포함)	7	3.14	1.215	
보호 체계별 (415)	아동양육시설	365	3.35	.998	2.935
	공동생활가정	31	3.13	.806	
	가정위탁	19	2.84	.834	
직업별 (415)	진학자	140	3.26	.955	.273
	취업자	200	3.33	1.077	
	무직자	75	3.35	.979	
정착금 금액별 (392)	100만원대	21	2.86	.910	2.939*
	200만원대	34	3.11	1.094	
	300만원대	98	3.49	.900	
	400만원대	45	3.07	.915	
	500만원대	194	3.31	1.012	
종결 연차별 (404)	1~2년차	184	3.30	.914	2.544*
	3~4년차	120	3.18	1.012	
	5~6년차	71	3.34	1.013	
	7~8년차	19	3.58	1.071	
	9~10년차	10	4.10	.994	

*p<.05

7. 자립상황

가. 과거 및 현재 기초생활수급 경험 비교

다음은 과거와 현재 기초생활 수급여부를 비교한 표이다(〈표 III-38〉). 조사대상자의 37.8% 보호가 종결 당시 기초생활수급을 경험하였고, 현재 기초생활수급인 경우가 27.0%로 그 비율이 다소 줄어들었지만 아직까지 보호종결아동 4명 중 1명 꼴로 수급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 이들이 빈곤을 벗어나기 위한 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보여 진다.

보호체계별로 살펴보면, 가정위탁은 종결 당시에 기초생활수급을 경험하게 되는 비율이 57.9%로 다른 보호체계에 비해 그 비율이 높았고, 현재 기초생활수급의 지위를 가진 비율 또한 52.6%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종결이후에 빈곤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진학자는 기초생활수급을 경험하게 되는 비율이 72.2%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으며, 무직자는 40.0%, 취업자는 24.1% 순이었다. 이는 종결 당시와 현재 기초생활수급여부를 비교하였을 때 진학자 비율에는 변화가 없었으며, 취업자의 경우 과거 기초생활수급이었던 24.1%가 현재는 9.1%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무직자의 경우에도 과거 40.0%에 이르던 기초생활수급 경험자가 현재는 29.2%로 약 10%가량 비율이 낮아졌다.

〈표 III-38〉 과거 및 현재 기초생활 수급여부 비교

(단위: 명, %)

구분(명)	종결이후 기초생활수급 여부		현재 기초생활수급 여부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전체(415)	37.8	62.2	27.0	73.0	
보호 체계별 (415)	아동양육시설	36.7	63.3	24.9	75.1
	공동생활가정	38.7	61.3	35.5	64.5
	가정위탁	57.9	42.1	52.6	47.4
직업별 (415)	진학자	72.2	27.8	72.2	27.8
	취업자	24.1	75.9	9.1	90.9
	무직자	40.0	60.0	29.2	70.8
정착금 금액별 (392)	100만원대	28.6	71.4	19.0	81.0
	200만원대	41.2	58.8	32.4	67.6
	300만원대	25.5	74.5	19.4	80.6
	400만원대	42.2	57.8	26.7	73.3
	500만원대	42.3	57.7	29.9	70.1

다음의 <표 III-39>는 조사대상자의 보호체계에 따라 종결연차별 기초생활 수급경험에 대한 것이다. 아동복지시설은 종결당시 수급이었던 비율이 36.9%에서 현재 수급비율이 25.8%로 11.1% 가량 줄어들었다. 가정위탁도 종결당시 기초생활수급자였던 57.9%에서 5.3% 줄어든 52.6%가 현재 수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종결과 동시에 기초생활수급을 경험하게 되는 비율은 그다지 많지 않았으나, 5~6년 전부터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 이전에 발생한 보호종결아동의 지원체계가 미비하였던 것을 보여줄 뿐 아니라 근래에 이르러서는 보호종결아동의 자립이후 삶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의 지원체계를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이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자원 마련이 불가피하며 보다 적극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진다.

조사대상자의 종결연차별 수급 비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종결한지 1~2년차의 아동 중 50.4%는 종결당시 기초생활수급자인 채로 퇴소하였고, 약 1년에서 2년 정도 지난 지금 조사대상자의 수급비율은 59.2%로 퇴소이전보다 8.8% 증가하였다. 3~4년차의 퇴소아동 또한 31.9%에서 33.7%로 1.8% 가량 수급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4년 이내의 기간 동안 아동은 기초생활수급을 지속적으로 경험했거나 자립생활 중 수급 받는 비율이 증가하였던 반면, 이후 5~6년차부터 수급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었으며 9~10년차 퇴소아동의 현재 수급비율이 0%였다.

가정위탁은 종결당시 수급비율이 절반이상 차지하고 있었으며, 1~2년차와 5~6년차의 종결당시 수급비율에 비해 현재 기초생활수급 중인 비율이 각각 7.8%, 2.2% 증가하였다. 특히 1~2년차에는 또한 종결당시 수급을 받지 않았던 아동은 이후에도 수급에 의존하지 않았으며, 7~8년차에 이르러서는 수급비율이 0%로 나타났다.

<표 III-39> 보호체계에 따른 종결연차별 기초생활 수급여부 비교

(단위: 명, %)

구분(명)		자립인식			종결당시 수급		
		종결당시 수급	현재수급	변화	종결당시 수급	현재수급	변화
전체		36.9	25.8	Δ11.1	57.9	52.6	Δ5.3
종결 연차	1~2년차	50.4	59.2	8.8	70.0	77.8	7.8
	3~4년차	31.9	33.7	1.8	-	-	-
	5~6년차	13.5	5.1	Δ8.4	20.0	22.2	2.2
	7~8년차	2.8	2.0	Δ0.8	10.0	-	Δ10.0
	9~10년차	1.4	-	Δ1.4	-	-	-

나. 과거 및 현재 주거형태 비교

다음의 <표 III-40>는 종결 당시 주거형태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종결 당시 가장 많은 주거형태는 월세(29.6%)였고, 다음으로 정부지원 전세주택(LH) 18.6%, 기숙사 13.7%, 자립지원시설 11.6% 등의 순이었다. 보호체계별 과거 및 현재 주거형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며, 직업별, 자립정착금 금액별 현재 주거형태 또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보호체계별로 살펴보면, 아동양육시설은 다른 보호체계에 비해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비율이 낮았고, 기숙사에 대한 비율이 다른 보호체계 보다 약 2배가량 높았다. 또한 공동생활가정은 자립지원시설에 입소해 있는 비율이 29.0%로 아동양육시설과 가정위탁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가정위탁은 종결 당시 조사대상자의 42.1%가 위탁가정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무직자는 진학자 또는 취업자에 비해 원가족 복귀(귀가)의 주거형태가 더 높았고, 취업자는 진학자 또는 무직자에 비해 LH전세주택의 비율이 낮았다. 또한 무직자의 경우 자립지원시설에서 생활하는 비율이 4.0%로 진학자와 취업자에 비해 낮았다.

자립정착금 금액별로 살펴보면, 100만원대는 종결당시 귀가한 비율이 다른 금액대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200만원대는 다른 금액대에 비해 월세와 전세의 비율이 높았다. 종결당시 LH전세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은 500만원대에서 가장 높았으며, 200만원대에 가장 낮았다. 또한 200, 300만원대의 자립정착금을 수령한 응답자는 일정한 거처가 없거나 선후배집에 거주하고 있었던 경우도 있었다.

조사대상자의 현재 주거형태는 월세가 26.3%로 가장 높았고, LH전세주택 23.9%, 기숙사 11.3%, 전세 9.9%, 귀가 7.5%, 자립지원시설 7.2% 등의 순이었다.

보호체계별로 살펴보면, 아동양육시설은 다른 보호체계에 비해 전세에 사는 경우가 다소 높았다. 공동생활가정은 다른 보호체계에 비해 월세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숙사에 사는 비율이 다소 낮았다. 가정위탁의 경우 다른 주거형태보다 위탁가정에 계속해서 머무르는 경우가 31.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LH전세주택(21.1%)에 머물렀다. 대리·친인척 가정위탁의 경우 보호기간 중 LH전세주택지원을 받을 수 있어 연장된 것으로 보여 진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진학자의 경우 LH전세주택과 자립지원시설에 거주하는 경우가 취업자와 무직자에 비해 많았으며, 무직자는 진학자 또는 취업자에 비해 귀가의 형태로 거주하고 있는 비율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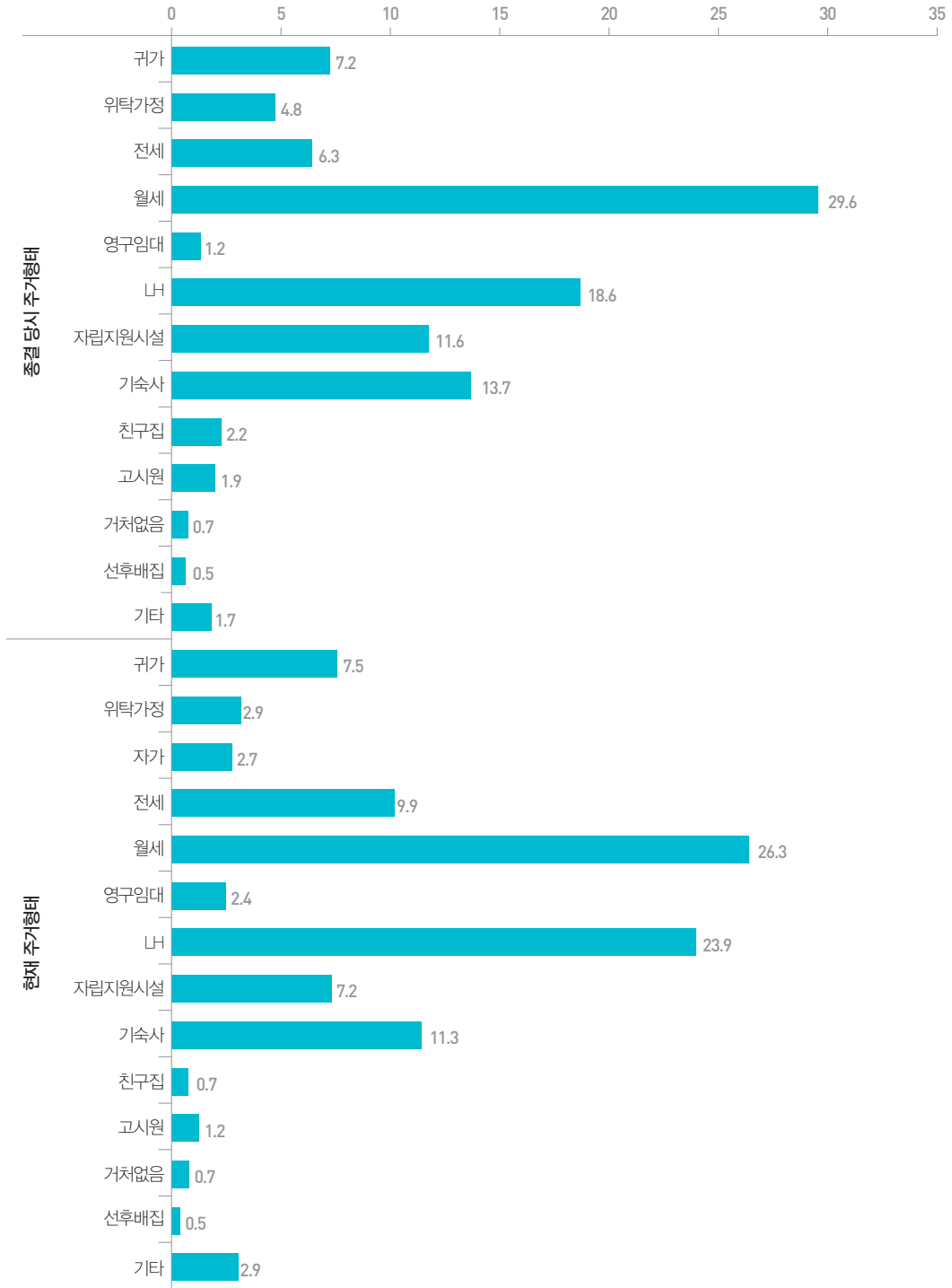
조사대상자는 과거에 비해 현재 주요하게 변화된 내용을 살펴보면, 과거에 없었던 자가의 비율이

2.7% 나타났고, 월세비율이 3.3% 가량 낮아졌으며 LH전세주택이 5.3%, 영구임대아파트 1.2%가량 상승하여 미약하나마 안정적인 주거로 변경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012년 아동양육시설 퇴소·연장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에 의하면, 퇴소아동의 주거형태는 월세 24.5%, 자립지원시설 18.6%, 정부지원 전세주택 16.0% 등의 순으로 나타나 이번 조사결과와 같게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퇴소아동이 보호 중 희망하던 주거형태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희망 주거형태로 전세 22.8%, 자가 20.0%, 정부지원 전세주택 17.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퇴소아동은 이전부터 지금까지 안정적인 주거를 선호하고 있지만 희망사항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현실을 극복할 구체적이며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진다.

조사대상자는 과거에 비해 현재 주요하게 변화된 내용을 살펴보면, 과거에 없었던 자가의 비율이 2.7% 나타났고, 월세비율이 3.3% 가량 낮아졌으며 LH전세주택이 5.3%, 영구임대아파트 1.2%가량 상승하여 미약하나마 안정적인 주거로 변경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012년 아동양육시설 퇴소·연장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에 의하면, 퇴소아동의 주거형태는 월세 24.5%, 자립지원시설 18.6%, 정부지원 전세주택 16.0% 등의 순으로 나타나 이번 조사결과와 같게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퇴소아동이 보호 중 희망하던 주거형태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희망 주거형태로 전세 22.8%, 자가 20.0%, 정부지원 전세주택 17.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퇴소아동은 이전부터 지금까지 안정적인 주거를 선호하고 있지만 희망사항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현실을 극복할 구체적이며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진다.



〈그림 III-11〉 종결당시 및 현재 주거형태

다. 과거 및 현재 직업 비교

다음의 <표 III-41>는 과거 및 현재 직업에 대한 비교표이다. 과거 조사대상자의 49.6%가 근로자로 가장 높았으며, 대학생이 33.0%, 무직 17.4% 순이었다. 현재에는 61.0%가 취업자로 가장 높았으며, 대학생 23.4%, 무직 15.6% 순으로써, 취업자의 수가 이전보다 11.4%가 더 증가하였다. 현재 취업자의 고용안정성을 보았을 때, 전체 취업자의 77.4%가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의 정규직원인 상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표 III-41> 과거 및 현재 직업 비교

(단위 : 명, %)

구분(명)		종결이후 직업					현재 직업						
		대학생	취업자				무직	대학생	취업자				무직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기타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기타	
전체(415)		33.0	34.9	9.4	2.4	2.9	17.4	23.4	47.2	7.2	2.7	3.9	15.6
보호 체계별 (415)	아동양육시설	31.5	35.9	9.9	2.5	3.0	17.3	21.1	49.0	7.4	2.7	4.4	15.3
	공동생활가정	51.6	35.5	3.2		3.2	6.5	41.9	45.2	3.2			9.7
	가정위탁	31.6	15.8	10.5	5.3		36.8	36.8	15.8	10.5	5.3		31.6
정착금 금액별 (392)	100만원대	33.3	38.1	4.8	4.8	4.8	14.3	19.0	52.4		9.5	4.8	14.3
	200만원대	38.2	29.4	20.6	2.9	2.9	5.9	29.4	44.1	5.9	2.9		17.6
	300만원대	22.4	43.9	10.2	3.1	2.0	18.4	13.3	54.1	12.2	2.0	2.0	16.3
	400만원대	33.3	22.2	11.1	4.4	2.2	26.7	17.8	37.8	8.9	6.7	6.7	22.2
	500만원대	36.6	34.0	7.7	1.5	3.1	17.0	28.4	47.4	5.7	1.0	4.6	12.9

라. 과거 및 현재 직종 비교

다음의 <표 Ⅲ-42>는 과거와 현재 직종에 대한 비교표이다. 종결이후 전문/기술직이 28.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서비스직이 16.9%, 기능직이 15.9%, 사무관리직 14.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과 단순노무직이 각 7.7% 등의 순이었다. 현재 직종을 살펴보면, 전문/기술직에 대한 비율이 증가하여 37.0%로 가장 높았으며, 서비스직이 16.5%, 사무관리직이 14.2%, 기능직이 10.2%,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이 5.9%, 단순노무직이 5.1% 등의 순이었다.

조사대상자는 자립정착금 금액별 과거 종결이후 직종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보호체계별로 살펴보면, 가정위탁은 과거 사무관리직 33.3%에서 현재 16.7%로 줄어들었고, 전문/기술직은 과거 16.7%에서 현재 50.0%로 증가하였다. 공동생활가정의 서비스직은 과거 38.5%에서 18.5% 가량 줄었고, 단순노무직과 판매직에서 각 13.3%, 6.7% 증가하였다.

<표 Ⅲ-42> 과거 및 현재 직종 비교

(단위 : 명, %)

구분(명)	종결이후 직업									현재 직업									
	사무 관리 직	전문 / 기술 직	서비 스직	판매 직	기능 직	장치 / 기계 조작 및 조립	단순 노무 직	직업 군인	기타	사무 관리 직	전문 / 기술 직	서비 스직	판매 직	기능 직	장치 / 기계 조작 및 조립	단순 노무 직	직업 군인	기타	
전체(415)	14.0	28.5	16.9	3.9	15.9	7.7	7.7	1.0	4.3	14.2	37.0	16.5	4.3	10.2	5.9	5.1	2.0	4.7	
보호 체계별 (415)	아동양육시설	14.4	27.7	15.4	4.3	17.0	8.0	7.4	1.1	4.8	14.6	36.1	16.7	4.3	10.7	6.4	3.9	2.1	5.2
	공동생활가정		46.2	38.5		7.7	7.7			6.7	46.7	20.0	6.7	6.7		13.3			
	가정위탁	33.3	16.7	16.7				33.3		16.7	50.0					33.3			
정착금 금액별 (392)	100만원대	8.3	16.7	25.0		8.3	25.0	16.7		7.1	28.6	28.6		7.1	7.1	14.3		7.1	
	200만원대	5.3	36.8		15.8	21.1		15.8	5.3	5.6	61.1	5.6	11.1	11.1			5.6		
	300만원대	17.2	34.5	13.8	3.4	15.5		6.9	1.7	6.9	18.8	44.9	11.6	4.3	10.1		4.3	1.4	4.3
	400만원대	16.7	16.7	22.2	5.6	11.1	22.2	5.6		14.3	35.7	10.7	7.1	10.7	14.3	3.6		3.6	
	500만원대	13.3	27.8	22.2	2.2	16.7	8.9	5.6		3.3	14.0	29.8	21.9	2.6	9.6	7.9	6.1	2.6	5.3

8. 소결

보호종결아동 415명을 대상으로 정착금 인식 및 관련교육이수, 정착금 사용계획, 사용현황, 만족도, 조사대상자의 자립상황 등에 대한 자립정착금 사용 실태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착금을 알게 된 시기에 대해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과의 차이를 보였는데, 아동복지시설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중고등학생 시기에 정착금에 대해 알게 되는 반면, 가정위탁의 경우 종결 후와 고등학생 시기에 더 많이 알게 되었다. 이는 가정위탁이 보호 중 가정위탁지원센터와 지자체 담당공무원과의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것으로 보여 진다. 보호아동을 둘러싼 전달체계에 대한 역할공유 및 업무환경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진다. 정착금을 알게 된 경로에 대한 조사결과를 통해서도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의 차이를 보이는데,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은 시설종사자와 시설선후배 및 친구를 통해 알게 되는 경우가 있었고 가정위탁 보호종결아동은 가정위탁담당자 또는 지자체 담당공무원을 통해 알게 되어 보호체계에 따라 주변자원의 차이가 있었다. 가정위탁의 경우 일관되지 않은 전달체계가 종결이후의 자립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는 보다 세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 진다. 또한 자립정착금 교육 참여율에 비해 경제교육 참여율이 더 낮게 나타나 자립생활에 가장 현실적이고 필요한 교육인 두 가지 교육에 대한 집중적이며,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 진다.

둘째, 조사대상자가 자립정착금을 사용하기 위해 고려했었던 점은 가전제품 및 가구집기 구입비와 수도광열비 등 관리비에 대한 지출이었다. 이는 종결 직후 초기자립에 필요한 가전제품 등 집기류 구입과 주거를 유지하기 위해 매월 납부하게 되는 공과금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것으로 보여 진다. 하지만 실제 자립정착금 사용항목과는 차이가 발생하였다. 또한 정착금에 대한 사용계획을 할 때에 도움을 준 사람에 대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4명 중 1명꼴로 나타났다. 이는 '14년 아동복지사업 지침에 기재되어 정착금 사용계획을 신청서와 같음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으며, 계획과 실제 지출하는 데에 간극을 좁혀 나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진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자립정착금을 계획할 때에는 실제 지출하였던 항목들을 고려하여 입금 당시 사례관리자와의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사용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조사대상자의 자립정착금 평균 수령금액은 393만원으로 평균 수령금액 중 92만원은 저축 등으로 잔액이 남아 있어 정착금 사용금액은 301만원이었다. 그 중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와 생필품 등 생활비에 대한 지출비율과 지출비용이 높아 주거에 대한 필요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뿐 아니라 추가적으로 자립비용으로 사용한 항목은 생필품 등 생활비와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가 높게 나

타나 정착금으로 사용한 지출항목과 같게 나타났다. 또한 자립정착금 미사용분인 92만원에 대해 주거로 사용하겠다는 비율이 높아 초기 자립생활 뿐 아니라 이후 자립생활에도 주거는 매우 중요한 자립요소라고 보여 진다. 이러한 비용부담은 대부분 본인이 부담하고 있어 주거에 대한 지원은 가장 기본적인 지원이 되어야 한다.

넷째, 자립정착금 지원은 주거를 마련하고 생활비 마련이 어려운 초기자립에 매우 도움이 되지만 그 금액이 낮을수록 만족도도 함께 낮아졌다. 이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기간으로 조사대상자는 종결 후 1년 이상 3년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응답자 중 60.0%로 해당 기간 중 주거 및 사회정착을 위한 집중적인 자립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 진다.

다섯째, 조사대상자의 3명 중 1명은 종결이후 기초생활수급을 경험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현재는 4명 중 1명꼴로 줄어들기는 했지만 온전한 자립으로 인한 것인지, 특히 종결과 함께 비수급으로 인한 빈곤을 경험하게 되는 보호종결아동에 대한 보다 세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 진다.

다음의 결과를 토대로 도출된 소결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립정착금을 활용함에 있어서 정착금 신청과 연계된 교육과 모니터링이 가능한 사후관리체계가 필요하며, 이는 안정적인 미래 준비와 계획을 위한 진로교육과 자립정착금 교육과 관련된 표준 교안 개발이 선행되어야져야 한다. 보호종결아동의 대부분은 보호 중 자립정착금에 대한 안내와 교육을 받았고, '14년도부터는 정착금 사용계획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사전에 철저한 교육과 사용계획을 하더라도 충동적으로 자립정착금을 사용할 수 있고, 특히 미래계획이나 장래희망이 부재한 경우라면 자립정착금의 사용은 더욱 무계획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보호종결아동이 자립정착금을 실제 사용함에 있어서 담당기관이나 자립지원전담요원은 그 어떤 제재나 개입을 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안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여 진다.

둘째, 자립정착금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출항목은 주거마련비용이며, 가장 높은 비용을 지출하는 것도 주거마련비용이었다. 수도권과 대도시로의 거주지 이동이 많은 보호종결아동이 주로 선택하게 되는 주거형태는 월세이며, 종결이후 안정적인 주거를 마련하고 유지하는 것은 자립생활의 질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자립정착금만으로 주거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주거를 마련하더라도 열악한 환경의 주거공간을 구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실태조사를 통해 과거와 현재의 주거상황 분석결과 최근 주거상황이 다소 미약하나마 개선되고 있는 경향을 보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보다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조사대상자는 종결 당시 아동의 기초생활수급비율(37.8%)은 현재 수급비율(27.0%)보다 10.8%가량 낮아져 4명 중 1명 꼴로 수급을 받고 있었으며, 자립생활 중 가장 어려웠던 점을 생활자금의 부족으로 꼽고 있다. 종결연차 1년부터 4년까지는 종결당시보다 현재 수급비율이 더 많이 증가하였고, 5년차 이후부터 현재 수급비율이 감소하고 있었다. 조사대상자의 수가 적어 후속연구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수급비율이 늘어나는 연차에 대한 집중적인 자립지원을 통해 빈곤의 경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극적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넷째, 종결 이후 자립생활 중 긴급하게 경제적인 지원을 받아야 할 때가 발생하기도 한다. 실태조사를 통해서도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나 단체여부에 대해 조사대상자의 약 30%가 없다고 응답하여 보호종결아동의 3.3명 중 1명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해도 도움을 받을 수 없다. 특히 의료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큰 비용이 필요한 의료비는 혼자 부담하기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다. 의료적인 문제는 즉각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후 건강상 악화되거나 더 큰 비용이 필요할 수 있어 보호종결아동의 긴급지원이 필요하다.



IV. 자립정착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 : 델파이 조사를 중심으로

Ⅳ. 자립정착금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 델파이 조사를 중심으로

1. 조사개요

본 연구에서는 시도 공무원, 현장전문가, 학계전문가들의 자립의 의미와 기준, 정부의 자립지원범위, 유형별 자립정착금 활용방안, 자립지원을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점들에 대해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개방형 질문으로 위의 내용에 대한 초안을 도출하여 질문지를 구성하고 문항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문항별 타당성을 판단하였다.

가. 조사대상

아동 자립 업무를 담당하는 시도공무원,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총 20명이 참여하였다. 시도공무원 2명, 시도 아동복지전담기관 2명, 학계전문가 5명,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4명, 공동생활가정 자립담당자 3명, 가정위탁지원센터 4명으로 구성된 전문가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기관장, 팀장, 과장, 자립지원전담요원의 직급을 델파이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나. 조사도구 및 자료분석

델파이 기법은 양적인 측정으로는 쉽게 결정될 수 없는 정책이나 쟁점이 되는 연구문제에 대해 일련의 전문가 집단의 의견과 판단을 추출하고 종합하여 집단적 합의를 도출해 내는 기법이다(박도순, 2001; 변숙영, 2013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자립지원을 통해 자립정착금 제도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살펴보고자 1차

델파이조사는 개방형 질문지를 구성하여 전자우편으로 실시하였다. 수합된 초안을 바탕으로 보호체계별 자립의 의미와 기준, 주거지원·자립지원·재정지원 등 정부지원범위, 보호체계별·직업별·주거유형별 자립정착금 활용방안, 자립지원을 위한 시급히 개선해야 하는 부분들에 대한 총 112문항의 질문지가 개발되었다. 2차 델파이조사에서는 1차 델파이조사를 통해 도출된 내용들을 토대로 구성된 질문지를 전문가들에게 5점 척도로 문항별 중요도 및 수정의견을 전자우편을 통해 수렴하여 최종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또한 수집된 자료는 SPSS 20.0을 이용하여 델파이조사 결과에 대해 각 문항의 빈도,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적 통계치를 분석하였다.

2. 조사결과

가. 1차 델파이조사 결과

개방형 질문으로 진행된 1차 델파이조사를 실시한 이후 수집된 의견 중 비슷한 의견을 분류하는 과정을 통해 총 112개의 의견이 도출되었다(〈표 IV-1〉).

〈표 IV-1〉 1차 델파이조사 결과

구분	문항(112)
자립의 의미 (14)	스스로의 힘으로 기본적인 생활유지 및 사회적 유대관계를 형성·유지 가능한 것
	시설 또는 위탁가정과의 분리를 통해 스스로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
	자신을 둘러싼 사회적 보호를 떠나 심리적 환경적으로 독립하는 것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서 지역사회 안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
	상실감이나 낮은 소속감 등 내적장애를 극복하는 것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기여하며 독립된 가정을 형성하여 생활하는 것
	종결 후 보호시설에서 떠나 자립생활관, 전월세, 고시원 등 거처를 옮겨 독립된 생활을 시작하는 것
	최소한의 공간에서 먹고, 자고, 생활하는 등 최저생활을 유지하는 것
	시설아동의 자립과 부모가정에서 성장한 아동의 자립의 중간적 의미
	위탁가정의 주거 및 경제적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것
	종결 후 위탁가정과의 지속적인 자립지원을 받으면서 분리된 독립생활을 하는 것
	부모가정에서 생활한 아동들과 동일한 의미를 가짐
	원가족 복귀 혹은 위탁가정에 남아있는 것
	위탁가정과 독립된 가정을 꾸리거나 혹은 가족원으로 함께 생활하면서 친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며, 지역사회 지원을 스스로 활용하면서 지역사회에 적응하는 것

자립기준 (23)	높은 자존감, 자기효능, 인내심, 긍정적인 자아상 등을 가진 상태에서 긍정적인 사회관계망
	원가족과의 관계회복
	대학진학, 질병 등을 구실로 종결(퇴소)을 회피하지 않는 상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거나 기존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상태
	감정을 나누고 고민을 해결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인간관계 여부
	주변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능력과 자발적인 행동에 대한 책임감
	중요한 사람들과 친밀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자기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 상태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상태
	가족을 포함한 새로운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유지
	빛이나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생활 가능한 상태
	직업생활 소득으로 저축과 생활비를 적절히 나눌 수 있을 때
	금융가치 인식 및 자산관리 능력 정도
	기본생계유지가 가능한 평균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직장생활에서 이탈하지 않는 것
	직업의 분류나 소득금액으로 자립의 기준을 정할 수 없음
	통제는 적지만 성장과 자기 충족적 독립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여부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확보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맞게 살 집을 스스로 구한다면 어떤 주거형태도 상관없음
	자취, 기숙사, 원가족 복귀 등 확보된 주거가 있는 상태
	주거종류와는 상관없이 본인이 살던 곳 지속적으로 주거지를 유지할 수 있는 상태
	원가족 복귀 또는 위탁가정 내 연속적 생활
	자립정보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태
	미래의 예측 불가능한 사건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이나 저축여부
	스스로의 자립에 대한 평가나 만족도
정부의 자립지원 범위 (22)	시도별 보호체계별 일정한 자립정착금 지급
	현실적으로 자립생활이 가능한 자립정착금 지원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에 따른 사후지도 및 모니터링 체계
	주거마련을 위한 자립정착금 1천만 원 수준에서 지급
	대도시·대학가·중소기업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내 자립지원시설의 확충
	내전세주택지원의 조건완화 및 지원확대(단, 정부가 제공하는 주거에 사는 경우는 사례관리자에 대한 기준이 필수적)
	전세금대출지원
	대학진학을 포기하거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인해 보호종결에 따른 수급권자격유지 등 면밀한 검토 및 지원연장
	사회생활 지역에서의 전월세 지원비, 가전 및 생활용품, 일정기간 생활비 지원
	종결 후 자립지원을 위한 기간 동안 실비 보험료 지원
	종결 전 경제교육과 자립생활관 이용을 통해 독립생활 훈련

	자립상담 등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
	자립선배 멘토링을 통한 독립생활지도 연계
	찾아가는 자립준비 교육시스템 마련
	종결 전 자립준비기간을 두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취업 등 자립지원서비스제공(3년)
	보호보호종결아동 자립지원 및 자립지원전담요원 간 정보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자립지원정보센터 설치
	자립유예기간을 통해 자립준비기간 확보
	센터와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열악한 지역 내 보호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한 인력확충
	용역 또는 아르바이트 수준을 벗어난 일자리 우선순위제도 도입
	아동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연계를 위한 취업지원서비스
	원가족 역량강화 및 관계회복프로그램 지원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위한 예산지원
정착금 관리자/ 지급방법 및 관리 (16)	스스로 하는 습관을 위해 자립정착금을 전액 아동에게 지급하여 관리하도록 함
	아동의 합의를 통해 신뢰관계가 형성된 시설종사자와 공동으로 관리하도록 함
	자립정착금의 총동적인 사용을 막기 위해 시설장 또는 자립전담요원에게 관리권한을 부여하여 사용 계획응도에 맞게 사용 및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자립정착금의 관리는 시설퇴소아동은 아동자립지원사업단에서, 가정위탁 보호종결아동은 거주지역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담당해야 함
	경제교육 진행과 더불어 시도별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자립정착금 및 사례관리가 필요
	접근성이 용이한 거주지역 주민센터에서 아동의 상황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자립 정착금 관리자로 적합함
	자립정착금은 아동본인이 하되, 사용계획서에 따라 사례관리자와 협의하여 정착금을 사용하도록 함
	유형비로 탕진하지 못하도록 시설장이 일정기간 동안 보관하거나 자립에 필요한 비용을 필요한 때에 직접 출수 있도록 함
	자립정착금 사용계획 및 용도평가에 따라 단계별 지급
	종결 후 자립정착금의 일시지급은 무분별한 사용이 될 수 있으므로 자립준비기간을 두고 사용계획에 맞게 지자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아동자립기금을 마련하여 지급기한 내 자립정착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원가족 또는 아동본인이 다른 용도로의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용도제한을 두어야 함
	개별 멘토링 및 경제교육을 통한 자립정착금 활용교육
	사용계획서에 따라 지출한 후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용도를 정하고 해당 용도에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
	자립정착금 관련 사례관리의 의무화
정착금 활용방법 (13)	자립정착금은 개별아동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사용할 수 있음
	시설 퇴소아동은 1차적으로 독립된 생활공간마련으로, 2차적으로는 취업관련 교육훈련에 사용
	독립적인 주거지원보다는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할 수 있는 기술지원에 활용
	가정위탁 보호종결아동은 1차적으로 취업관련 교육훈련으로, 2차적으로는 독립된 생활공간마련에 사용

	장학금 또는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재단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시설과 아동과 합의 후 자립정착금은 생활비로 사용
	전세전환을 위한 목돈마련에 사용
	무직자의 자립정착금은 취업 전 1년 동안 월세비로 매월지원
	주거여부에 따라 자립정착금의 사용용도가 달라질 수 있음(ex. 주거가 불명확할 경우 전월세보증금으로 사용하거나 가전제품 및 생활용품 등 주거환경에 관련된 비용으로 활용)
	원가족 복귀한 경우 자립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부모가 관리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 자립정착금 지원이 불필요함. 단, 원가족이 그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가정실태조사를 거쳐 아동의 직업훈련비용이나 자격취득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함
	원가족으로 복귀하는 이유, 원가족의 경제상황 등을 살펴본 후 자립정착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통해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논의하도록 함
	원가족 복귀할 경우 취업훈련과 생활비로 일부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자신의 진로나 취업, 직업훈련 등과 같은 직업소득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용도로 사용
	자립지원시설 입소와 동시에 디딤씨앗통장 또는 저축할 수 있도록 함
개선점 (24)	시도별, 보호체계별 자립정착금의 표준화 및 상향조정을 통해 현실적인 자립정착금 산정
	자립정착금, 디딤씨앗통장 등 관리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상담 등 일대일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 및 모니터링 을 위한 사후관리시스템 구축
	종결 후 지속적인 상담·교육, 사례관리 등을 통해 심리적인 측면의 지원
	퇴소아동 추적관리 시스템 구축
	자립계획 수립 및 점검을 위한 체계적인 전문가 수퍼비전
	지방에 거주하는 보호종결아동의 주거지원을 위한 전세주택지원 및 자립생활관 설치
	개별주거공간과 통합사례관리에 대한 통합주거 필요
	개별아동의 다양한 욕구 및 역량에 따른 주거지원 및 서비스 제공
	전세주택 지원조건 및 범위의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자립지원
	자립정착금과는 별도로 안정된 주거가 우선적으로 필요
	자립전담요원의 분기별 가정방문을 통해 주거관리 필요
	자립정착금을 보증금의 일부로 의무적으로 납부하게 하여 책임감을 고취시키도록 함
	쉐어하우스 또는 자립홈을 활용하여 자율적인 생활공간을 일정기간 지원
	지역사회구성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술습득과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교육(ex. 자존감향상교육)
	자립준비기간을 두어 집중적인 자립준비 체계 마련
	자립멘토의 역할모델을 통해 자립생활에 시행착오를 줄임
	디딤씨앗통장의 매칭금액과 입금한도를 높여 자산형성지원의 활성화를 통한 자립지원
	보호 중 자립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 공유 및 자립 담당자의 자립 중요성에 대한 인식
	지역사회자원연계 및 활성화를 통한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모든 보호체계 내 자립지원을 위한 인력확충
	모든 보호체계를 포괄하는 자립체험관 설치 및 전문인력 배치
종결 후 자립지원을 위한 예산	
자지체 재정상황 및 단체장 의지에 따라 달라지는 자립지원 관련사업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 필요	

나. 2차 델파이조사 결과

2차 델파이조사에서는 1차 델파이조사를 통해 도출된 내용을 토대로 구성된 질문지를 현장 및 학계전문가들의 전자우편으로 배포하여 본인의 전문분야에 대한 문항별 중요성에 따른 동의수준 및 수정의견을 수렴하였다. 현장 및 학계전문가 수정의견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평균 4.0점 이상의 문항 중 5개영역, 60개 문항으로 통합되었다. 의견수렴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전문분야가 아닌 경우 해당문항에 대한 결측값이 발생하였으며, 결측값을 제외한 각 문항의 빈도, 평균, 표준편차는 다음과 같다.

1) 자립의 의미

공통/아동복지시설에서는 스스로의 힘으로 기본적인 생활유지 및 사회적 유대관계를 형성·유지할 수 있는 부분(4.75점)에 대하여, 가정위탁은 독립된 가정을 꾸리거나 위탁가정의 가족원으로 함께 생활하면서 친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며, 지역사회 자원을 스스로 활용하면서 지역사회에 적응하는 것(4.75점)으로 나타났다. 자립의 의미는 자립지원의 기본 전제로 제공되어야 함을 나타낸다.

〈표 IV-2〉 자립의 의미

(단위: 명, %)

구분		N	M	SD
공통/ 아동복지시설	스스로의 힘으로 기본적인 생활유지 및 사회적 유대관계를 형성·유지 가능한 것	20	4.75	.444
	자신을 둘러싼 사회적 보호를 떠나 심리적·환경적으로 독립하는 것	20	4.30	.801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기여하며 독립된 가정을 형성하여 생활하는 것	19	4.11	.937
	시설 또는 위탁가정과 분리됨을 통해 스스로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	20	4.05	1.050
가정위탁	위탁가정과 독립된 가정을 꾸리거나 혹은 가족원으로 함께 생활하면서 친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며, 지역사회 자원을 스스로 활용하면서 지역사회에 적응하는 것	16	4.75	.447

2) 자립의 기준

가) 심리적 자립의 기준

보호종결아동의 심리적 자립기준은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상태가 4.50점, 중요한 사람들과 친밀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자기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 상태가 4.45점으로 높게 나타나 자기신뢰, 책임감, 의미 있는 대인관계가 중요한 심리적 자립의 기준이라고 보았다.

〈표 IV-3〉 심리적 자립의 기준

구분	N	M	SD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상태	20	4.50	.607
중요한 사람들과 친밀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자기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 상태	20	4.45	.686
주변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능력과 자발적인 행동에 대한 책임감	20	4.40	.681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거나 기존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상태	20	4.10	.788
감정을 나누고 고민을 해결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인간관계 여부	20	4.05	.945

나) 사회경제적 자립의 기준

사회경제적 자립의 기준으로 가족을 포함한 새로운 사회적 관계형성 및 유지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4.30점), 직장을 이탈하지 않음으로 일정한 소득을 유지하는 것과 금융가치 인식 및 자산관리능력 또한 중요한 기준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 IV-4〉 사회경제적 자립의 기준

구분	N	M	SD
가족을 포함한 새로운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유지	20	4.30	.923
기본생계유지가 가능한 평균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직장생활에서 이탈하지 않는 것	20	4.25	.639
금융가치 인식 및 자산관리 능력 정도	20	4.25	.910
직업생활 소득으로 저축과 생활비를 적절히 나눌 수 있을 때	20	4.20	.894

다) 주거 자립의 기준

주거는 자립초기 보호종결아동이 감당해야 하는 주요한 자립과제이다. 주거에 대한 자립기준으로 통제는 적지만 성장과 자기 충족적 독립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가 있는지가 4.45점으로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표 IV-5〉 주거 자립의 기준

구분	N	M	SD
통제는 적지만 성장과 자기 충족적 독립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여부	20	4.45	.826
자취, 기숙사, 원가족 복귀 등 확보된 주거가 있는 상태	20	4.15	.933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맞게 살 집을 스스로 구한다면 어떤 주거형태도 상관없음	20	4.00	1.214

라) 기타 자립의 기준

기타 자립의 기준으로는 자립정보에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는 인식이 4.20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에도 스스로의 자립에 대한 평가나 만족도를 제시할 수 있는 정도 또한 보호종결아동의 자립의 기준이라고 보았다.

〈표 IV-6〉 정보접근성 등 자립의 기준

구분	N	M	SD
자립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태	20	4.20	.834
스스로의 자립에 대한 평가나 만족도	20	4.10	.852

3) 자립정착금 관리자 및 지급방법/지급관리

현재 자립정착금을 관리하는 사람은 대부분 본인이 하고 있다. 아동 스스로가 정착금을 관리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많은 부분 동의하고 있었으나, 정착금을 계획하고 실제 사용함에 있어서는 사례관리자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다. 이는 아동 본인이 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정착금 오남용 및 원가족으로의 정착금 착취로 인한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지급방법에 있어서도 사용계획과 용도에 따라 단계별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 4.16점으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그 외에도 정착금을 별도의 관리를 통해 신청에 의한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의견도 있었다. 지급하는 데에 있어서 단순히 정착금 지급만 하는 것이 아닌 멘토링 및 경제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통해 경제교육은 정착금 지출의 효용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 진다.

〈표 N-7〉 정착금 관리자 및 지급방법/관리

구분		N	M	SD
관리자	자립정착금은 아동본인이 하되, 사용계획서에 따라 사례관리자와 협의하여 정착금을 사용하도록 함	20	4.25	.910
	경제교육 진행과 더불어 시도별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자립정착금 및 사례관리가 필요	20	4.15	1.137
지급방법	자립정착금 사용계획 및 용도평가에 따라 단계별 지급	19	4.16	1.068
	아동자립기금을 마련하여 지급기한 내 자립정착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20	4.00	1.257
지급관리	개별 멘토링 및 경제교육을 통한 자립정착금 활용교육	20	4.25	1.020
	용도를 정하고 해당 용도에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	19	4.16	1.068

4) 자립정착금 활용방법

자립정착금의 활용방법을 종합해보면, 종결 이후 주거마련이 가장 중요함을 말하고 있다. 보호체계 내에서의 활용방법은 1차적으로 독립된 생활공간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4.11점이었고, 주거형태에 따라서는 주거여부에 따라 정착금 용도가 달라질 수 있음(4.55점)을 보여 주고 있다. 특히 LH전 세주택이나 자립지원시설에서 거주할 경우에는 자신의 진로에 대한 교육훈련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동의수준이 높았다. 이뿐 아니라 원가족 복귀에 대해서 취업훈련과 생활비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원가족과의 자립정착금에 대한 사용용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인식도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IV-8〉 유형별 정착금 활용방법

		구분	N	M	SD
보호 체계	공통	자립정착금은 개별아동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사용할 수 있음	20	4.25	.967
	아동복지 시설	시설 퇴소아동은 1차적으로 독립된 생활공간마련으로, 2차적으로는 취업 관련 교육훈련에 사용	19	4.11	.875
주거형태		주거여부에 따라 자립정착금의 사용용도가 달라질 수 있음 (ex. 주거가 불명확할 경우 전월세보증금으로 사용하거나 가전제품 및 생 활용품 등 주거환경에 관련된 비용으로 활용)	20	4.55	.686
		LH전세주택/자립지원시설에 거주할 경우 자신의 진로나 취업, 직업훈련 등과 같은 직업소득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용도로 사용	20	4.50	.688
		자립지원시설 입소와 동시에 디딤씨앗통장 또는 저축할 수 있도록 함	20	4.35	.933
		원가족 복귀할 경우 취업훈련과 생활비로 일부 사용할 수 있도록 함	18	4.28	.669
		원가족으로 복귀하는 이유, 원가족의 경제상황 등을 살펴본 후 자립정착 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통해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논의하 도록 함	20	4.25	.967

5) 보호종결아동의 안정적인 초기자립을 돕기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점

가) 자립정착금의 동일지급 및 모니터링 체계 마련

자립정착금에 대한 지원은 현재 시도 및 보호체계별로 다르게 지급되고 있어 모든 보호체계 보호
종결아동이 동일한 정착금을 받을 수 있고, 상향조정을 통해 현실적인 정착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인
식이 4.7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자립정착금에 대한 사후지도 및 모니터링 체계도 필요하
다는 인식이 4.60점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정착금의 본연의 의미가 퇴색된 아동본인의 계획성
없는 지출과 원가족 및 친인척으로부터 착취를 염려한 것으로 보여 진다.

〈표 IV-9〉 시도 및 보호체계별 동일한 자립정착금 지원

	구분	N	M	SD
시도별, 보호체계별 자립정착금의 표준화 및 상향조정을 통해 현실적인 자립정착금 산정		20	4.75	.444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에 따른 사후지도 및 모니터링 체계		20	4.60	.821
자립정착금, 디딤씨앗통장 등 관리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20	4.30	.865

나) 사후관리 강화

보호종결아동에 대한 사후관리는 사회적응과 관련된 심리정서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하며, 아동의 특성과 주변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는 부분, 일정기간 모니터링을 통해 사후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 외에도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퇴소아동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추적관리시스템이 필요를 인식하고 있는 부분도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종결과 함께 연락두절되는 많은 사례로 인한 것으로 보여 진다.

〈표 IV-10〉 사후관리 강화

구분	N	M	SD
종결 후 지속적인 상담·교육, 사례관리 등을 통해 심리적인 측면의 지원	20	4.65	.489
상담 등 일대일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 및 모니터링을 위한 사후관리시스템 구축	20	4.65	.671
퇴소아동 추적관리 시스템 구축	20	4.25	1.118
자립계획 수립 및 점검을 위한 체계적인 전문가 수퍼비전	20	4.20	.768

다) 주거지원의 확대

앞서 주거는 보호종결아동에게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주거에 대해 전세주택지원 요건 중 연령에 대한 조건완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4.7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뿐 아니라 지방에 거주하는 보호종결아동의 주거지원을 위한 자립생활시설을 설치하여 안정적인 주거가 필요하다는 인식도 높았다. 특히 전세주택지원이나 자립생활시설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 자립정착금과는 별도로 안정된 주거가 필요하다는 인식도 4.35점으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IV-11〉 주거지원의 확대

구분	N	M	SD
전세주택지원 조건완화 및 범위의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자립지원	20	4.70	.571
지방에 거주하는 보호종결아동의 주거지원을 위한 전세주택지원 및 자립생활관 설치	20	4.40	.598
자립정착금과는 별도로 안정된 주거가 우선적으로 필요	20	4.35	.875
개별아동의 다양한 욕구 및 역량에 따른 주거지원 및 서비스 제공	20	4.30	1.031

라) 종결 후 안정적인 자립생활유지를 위한 재정지원

연장 후 또는 종결 후 대학을 중도 포기하거나 소득의 발생 등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한 아동들의 안정적인 자립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수급권자격유지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4.50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수급자격이 유지될 때에는 정부지원으로나마 생활을 유지할 수 있으나 비수급 빈곤층으로의 진입은 빈곤의 사각지대로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이뿐 아니라 종결이후 자립기반이 견고하지 않을 때에 의료비 지출은 자립생활에 큰 어려움이 될 수 있어 보험료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조금 높게 나타났다.

〈표 IV-12〉 종결 후 안정적인 자립생활 유지를 위한 재정지원

구분	N	M	SD
대학진학을 포기하거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인해 보호종결에 따른 수급권자격유지 등 면밀한 검토 및 지원연장	20	4.50	.607
종결 후 자립지원을 위한 기간 동안 실비 보험료 지원	20	4.15	1.089

마) 자립 인식개선 및 자립지원체계 구축

보호아동에게 자립은 입소와 함께 시작되기 때문에 자립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을 공유하고 자립담당자가 하는 업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인식과 지역사회 자원연계를 통해 진로진도와 취업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4.50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자립멘토의 모델링을 통해 자립생활에 대한 시행착오를 줄이는 인식이 4.40점으로 높게 나타나, 보호종결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립지원체계의 구축에 대한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표 IV-13〉 자립 인식개선 및 자립지원체계 구축

구분	N	M	SD
보호 중 자립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 공유 및 자립 담당자의 자립 중요성에 대한 인식	20	4.50	.607
지역사회자원연계 및 활성화를 통한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20	4.50	.688
자립멘토의 역할모델을 통해 자립생활에 시행착오를 줄임	20	4.40	.821
지역사회구성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술습득과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교육 (ex. 자존감향상교육)	20	4.35	.813
자립준비기간을 두어 집중적인 자립준비 체계 마련	20	4.35	.875
디딤씨앗통장의 매칭금액과 입금한도를 높여 자산형성지원의 활성화를 통한 자립지원	20	4.25	.910
보호종결아동 자립지원 및 자립지원전담요원 간 정보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자립지원정보센터 설치	20	4.00	1.124

마) 자립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확충 및 예산 지원

아동양육시설 내 자립지원전담요원은 100% 배치되어 있고,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전담요원 배치율은 1%도 되지 못한다. 또한 가정위탁의 전담요원 배치는 시도별 1명으로 수백명의 보호아동과 보호종결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업무를 감당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든 보호체계에 대한 자립지원 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4.60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텔파이조사 중 중요도 및 동의수준이 가장 높았던 문항은 지자체 재정상황 및 단체장 의지에 따라 달라지는 자립지원 관련 사업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수준이 4.85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는 현재 자립지원사업이 지방이양사업이 되면서 일관적이고 동일한 정착금 지급수준이 어려워짐에 따라 더 나은 자립지원을 위한 국가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표 IV-14〉 자립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확충 및 예산지원

구분	N	M	SD
지자체 재정상황 및 단체장 의지에 따라 달라지는 자립지원 관련 사업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 필요	20	4.85	.366
모든 보호체계 내 자립지원을 위한 인력확충	20	4.60	.754
모든 보호체계를 포괄하는 자립체험관 설치 및 전문인력 배치	19	4.21	1.032
종결 후 자립지원을 위한 예산	20	4.50	1.000

3. 소결

본 장에서는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및 가정위탁 보호종결아동의 안정적인 자립과 관련하여 자립의 의미와 기준을 살펴보고, 그 의미와 기준에 따른 개선점에 대해 구분해보고자 하였다. 또한 자립 정착금과 관련하여 정착금 관리자/지급방법 및 지급관리, 특성별 정착금 활용방법에 대해 시도공무원,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성하였다.

첫째, 자립의 의미에 대해 학계 및 현장전문가는 스스로의 힘으로 기본적인 생활 및 사회적 유대관계를 형성·유지하는 것, 시설 또는 위탁가정과의 분리를 통해 스스로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 자신을

둘러싼 사회적 보호를 떠나 심리적·환경적으로 독립하는 것,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기여하며 독립된 가정을 형성하여 생활하는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특히 가정위탁의 경우, 독립된 가정을 꾸리거나 위탁가정의 가족원으로 함께 생활하면서 친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며, 지역사회 자원을 스스로 활용하고 지역사회에 적응하는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둘째, 자립기준에 대해 심리적, 사회경제적, 주거, 기타, 4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심리적인 자립기준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거나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상태, 감정을 나누고 고민을 해결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인간관계 여부, 주변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능력과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는 상태, 자발적 행동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상태를 제시하였고, 사회경제적 자립기준에 대해 가족 등을 포함한 사회적 관계형성 및 유지하는 것, 소득활동에 따른 올바른 소비 및 저축생활이 가능한 때, 금융가치 인식, 자산관리능력, 생계유지를 위한 평균소득을 가지고 직장에서 이탈하지 않는 것을 제안하였다. 주거에 대한 자립기준은 스스로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기 충족적 독립생활이 가능한 주거, 경제적 상황에 맞게 주거를 스스로 구할 수 있는 상태, 원가족 복귀·자취·기숙사 등 종결이후 거주할 확보된 주거가 있는 상태라고 제시하며, 기타 기준으로는 자립정보의 접근용이성, 아동본인의 자립평가나 만족도를 제시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다.

셋째, 자립정착금 관리자 및 지급방법/지급관리에 대한 제안점은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의 자립정착금 관리 및 경제교육의 진행, 사례관리자와의 협의를 통해 아동 스스로 정착금 관리하고, 정착금 사용계획 및 용도평가에 따른 단계별 지급 및 아동자립기금을 마련하여 신청에 의해 지급하는 방법, 정착금 사용용도 지급규정 및 정착금 활용교육을 제안하였다.

넷째, 정착금 활용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였다. 개별아동의 상황에 따라 정착금의 사용용도는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시설 퇴소아동은 1차적으로 독립된 생활공간이 필요하며, 2차적으로 취업관련 교육훈련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또한 주거형태에 따라 주거여부는 자립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이라고 보며, 원가족 복귀한 경우에는 원가족의 경제상황을 살펴보고 정착금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함께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자립지원시설이나 LH전세주택에 거주할 경우 진로나 취업, 직업훈련 등과 같은 직업소득으로 연결시키거나 정착금을 저축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다. 기타 취업자에 대한 제안점으로 전세전환을 위한 목돈마련에 사용이 있다.

다섯째, 보호종결아동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제안점은 자립정착금, 사례관리, 주거지원, 자립지원, 취업지원, 재정지원, 인력지원, 기타지원, 8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자립정착금 지원으로는 자립정착금의 표준화 및 상향조정, 자산관리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정착금 사후지도 및 모니터링 체계마련이 있었고, 사례관리에서는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 및 모니터링

을 위한 사후관리시스템 구축, 퇴소아동 추적관리시스템 구축, 자립계획 수립 및 점검을 위한 체계적인 전문가 수퍼비전에 대한 부분을 제안하였다. 또한 주거지원으로 보호종결아동이 취업과 진학을 위해 대도시, 대학가, 중소기업 밀집지역으로의 이주가 두드러지지만 그와 더불어 보호지역에 그대로 거주하는 보호종결아동의 전세주택지원과 자립지원시설 확충, 정착금과는 별도로 주거가 우선적으로 필요, LH전세주택 지원조건 및 범위의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주거마련, 전세금대출지원에 대한 제안이 있었다. 자립지원으로는 경제교육, 자립생활관 활용, 자립선배 멘토링 등을 통한 독립생활을 훈련, 종결 전후 자립준비기간 및 유예기간을 통해 철저한 자립준비, 자립지원정보센터 설치 및 상담 서비스 제공, 디딤씨앗통장의 매칭 및 입금한도 상향조정, 자립에 대한 장기적 비전 공유를 통해 자립담당자의 의식고취를 제안하였으며, 취업지원의 제안점은 용역 또는 아르바이트 수준을 벗어난 일자리 우선지원제도 및 아동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연계를 위한 취업지원서비스이며, 재정지원으로는 대학진학포기 또는 아르바이트 등으로 인해 보호종결에 대한 수급권자격유지, 종결 후 일정기간동안의 실비보험료 지원이 있었다. 또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보호아동에 대한 인력지원, 기타지원으로 자립지원프로그램 예산지원, 자립지원사업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 원가족 역량강화 및 관계회복프로그램 지원을 제안하였다.

본 조사를 통해 도출된 내용은 다음과 같은 제언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첫째, 의존적이지 않은 대인관계, 자발적인 행동과 그에 따른 책임감, 생계유지가 가능한 경제활동과 직장을 이탈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 자율성이 보장된 주거 마련은 보호종결아동에 대한 자립의미와 그에 따른 자립기준으로 다양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와 기준들은 안정적인 자립의 중요한 성공요인으로써 자립지원의 기준을 마련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보여 진다.

둘째, 자립정착금에 대한 관리주체는 본인이 되어야 하지만, 자립정착금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정착금이 운영되고 있는 방식으로는 정착금에 대한 사용계획은 가능하나 이후 사용하는 과정 중 개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 보편적 문제이며, 이러한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셋째, 델파이조사 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문항은 현재 자립정착금이 시도별·보호체계별 지원

액이 상이함에 따라 자립정착금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으로 나타났다. 이는 '05년도 지방이양사업이 되면서 차이가 발생하였고, 지자체의 재정상황과 단체장의 마인드에 따라 예산이 마련됨에 따라 어려움은 더해졌다. 그 뿐 아니라 자립정착금 외에 주거마련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이 필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V. 자립정착금 자립비용 산출

V. 자립정착금 자립비용



본 연구에서는 자립정착금을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의 보호가 종결되는 만18세 이상의 아동의 안정적인 초기 자립생활의 기반을 다지는 데에 있어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고자 한다. 또한 현재 지급되고 있는 자립정착금이 적절한지에 대해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최소비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자립정착금의 최소비용을 제안하는 방식은 조사대상자가 자립정착금으로 사용한 자립비용과 종결 당시 자립정착금 외 추가 지출하였던 자립비용을 토대로 산출하고자 하였다. 최소비용은 수령한 자립정착금과 개별 지출항목, 두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다음의 자립비용을 제안하였다.

1. 수령한 자립정착금에 따른 자립비용

다음의 <표 V-1>는 앞서 실태조사에 참여한 415명 전체를 대상으로 실제 사용한 자립정착금과 추가 지출된 금액에 대한 비교표이다. 조사대상자는 수령한 자립정착금 중 301만원과 추가비용으로 146만원의 지출이 발생하여 총 자립비용으로 447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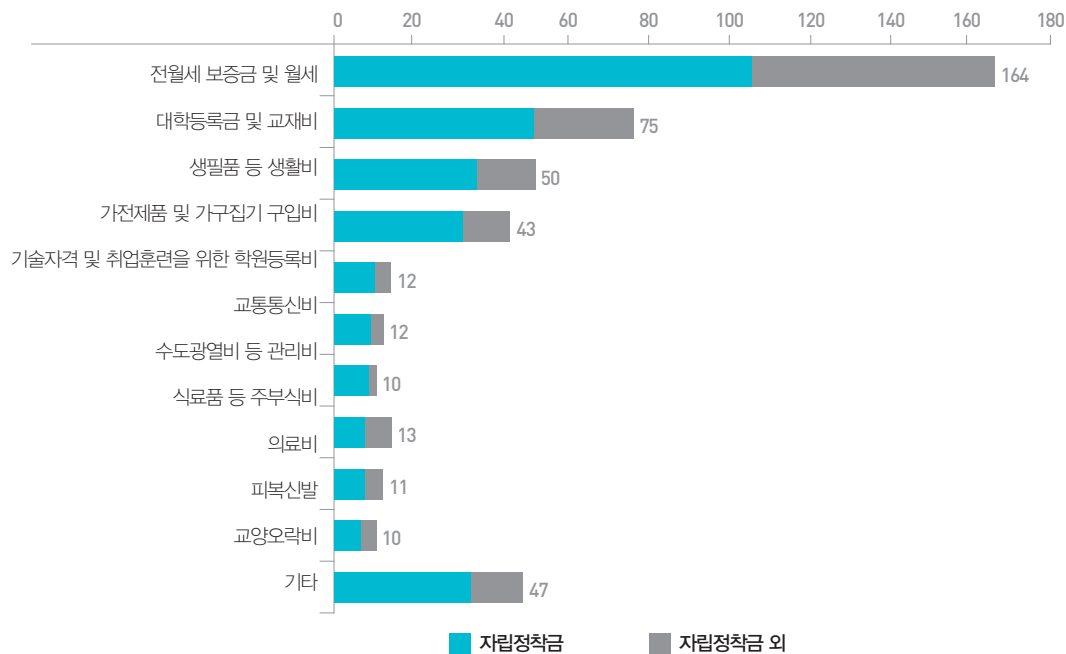
총 447만원의 자립비용 중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 평균 164만원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대학 등록금 및 교재비로 75만원, 생필품 등 생활비 50만원, 가전제품 및 가구집기 구입비 43만원, 기타 39만원, 식료품 등 주부식비 13만원,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을 위한 학원등록비 및 교통통신비 12만원, 의료비 11만원, 수도광열비 등 관리 및 피복신발 10만원, 교양오락비 8만원 순으로 사용하였다.

위의 결과를 통해 항목별 편성된 금액은 전체 조사대상자가 사용한 평균금액이다. 447만원이라는 금액은 수령한 자립정착금이라는 한정된 자원으로부터 산출근거를 삼았기 때문에 자립에 필요한 최소비용으로써 제안하고자 한다.

〈표 V-1〉 수령한 자립정착금에 따른 전체 자립비용 비교

(N=415) (단위: 만원)

실제 사용내역	금액	추가지출 사용내역	금액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	105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	59
대학등록금 및 교재비	50	대학등록금 및 교재비	25
생필품 등 생활비	35	생필품 등 생활비	15
가전제품 및 가구집기 구입비	32	가전제품 및 가구집기 구입비	11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을 위한 학원등록비	9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을 위한 학원등록비	3
교통통신비	8	교통통신비	4
수도광열비 등 관리비	8	수도광열비 등 관리비	2
식료품 등 주부식비	7	식료품 등 주부식비	6
의료비	7	의료비	4
피복신발	6	피복신발	4
교양오락비	5	교양오락비	3
기타	29	기타	10
합계	301	합계	146



〈그림 V-1〉 수령한 자립정착금에 따른 전체 자립비용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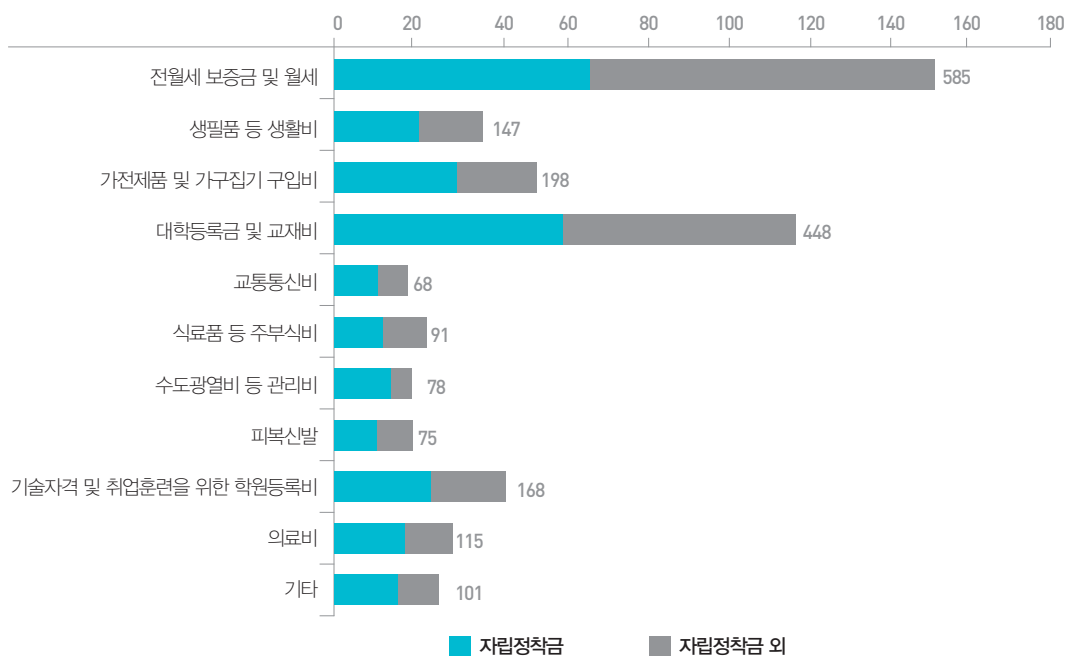
2. 개별 지출항목에 따른 자립비용

위의 내용은 본 조사에 참여한 415명의 수령한 자립정착금을 기준으로 총 자립비용을 확인하였다면, 본 장에서는 실태조사 대상자 중 실제 사용한 개별 지출금액을 토대로 자립정착금에 대한 적정한 수준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다음의 <표 V-2>를 토대로 자립에 가장 필요한 항목인 주거, 생활, 학업, 의료에 대한 자립비용을 살펴하고자 한다.

<표 V-2> 개별 지출항목에 따른 전체 자립비용 평균금액 비교

(단위: 만원)

순위	실제 사용내역	N	자립정착금	자립정착금 외	합계
1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	166	248	337	585
2	생필품 등 생활비	164	83	64	147
3	가전제품 및 가구집기 구입비	105	121	77	198
4	대학등록금 및 교재비	88	223	225	448
5	교통통신비	69	43	25	68
6	식료품 등 주부식비	62	45	46	91
7	수도광열비 등 관리비	57	58	20	78
8	피복신발	57	42	33	75
9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을 위한 학원등록비	39	95	73	168
10	의료비	37	69	46	115
11	기타	-	62	39	101



〈그림 V-2〉 개별 지출항목에 따른 전체 자립비용 평균금액 비교

가. 주거비용

조사대상자의 종결당시 주거형태는 월세가 가장 많았고, 자립정착금과 본인이 부담하여 주거를 마련하는 데에 사용한 총 금액은 585만원이었다. 이는 2012년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저소득층의 월세보증금 수준인 837만원보다 252만원이 부족한 금액이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디딤씨앗통장 적립금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실제 '11년도부터 '13년도까지 주거마련을 위해 디딤씨앗통장을 해지한 평균액은 277만원¹⁴⁾이었다.

자립정착금 248만원, 디딤씨앗통장 277만원, 본인부담액 312만원을 사용한다면, 저소득층 월세보증금 수준으로 맞출 수는 있으나 본인부담액이 상당하다.

앞서 수렴한 자립정착금을 기준으로 제안한 최소 필요금액이자 현재 최대 자립정착금 지급액인 500만원, 디딤씨앗통장으로 마련될 수 있는 277만원, 그리고 소액의 본인부담금으로 저소득층 월세

14) 디딤씨앗통장 '11년~'13년 주거마련을 위한 평균 해지금액.

보증금 수준과 비슷하게 맞출 수 있는 부분이다. 그 외 발생하는 생활비용을 본인이 부담할 수 있는 안정된 구조를 가진다면 보호종결아동의 초기자립에 대한 부담은 줄어들 수 있다고 보여 진다. 이렇듯 주거는 보호종결아동에게 자립생활의 질을 좌우할 만큼 매우 중요한 자립요소이기 때문에 정부의 주거지원이나 주거비용에 대한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나. 생활비용

가전제품 및 가구집기 구입비, 생필품 등 생활비, 식료품 등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등 관리비, 교통통신비, 피복신발을 생활비용으로 보았을 때에 총 657만원을 사용하였다. 자립정착금으로 392만원을, 그 외 추가 지출된 비용은 265만원이었다. 총 금액을 지난 '10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한 1인가구 월평균 최저생계비 532,583원과 함께 살펴보면, 위의 총 사용금액은 약 1년에 해당하는 생활비용으로 산출할 수 있었다. 조사대상자는 자립하기까지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생활비용으로 사용한 657만원은 1년이라는 최소 자립기간동안의 비용으로 산출할 수 있었다.

앞서 수령한 자립정착금을 기준으로 제안한 최소 필요금액이자 현재 최대 자립정착금 지급액인 500만원과 본인이 157만원을 부담하게 된다면, 약 1년간 108만원의 본인부담액이 절감되어 효과가 있어 그 만큼의 생활비에 대한 비용부담을 덜게 된다.

다. 학업비용

보호종결아동이 대학에 진학하게 될 경우 대학등록금 및 교재비를 마련할 때에 총 448만원을 사용하였으며, 자립정착금 223만원, 그 외 절반가량인 225만원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었다. 아동양육시설 아동을 대상으로 첫 학기의 대학등록금을 지원하는 시도는 17개 시도 중 13개 시도이다. 공동생활가정이나 가정위탁 보호종결아동의 절반가량은 이마저도 어렵다. 가장 많은 지급률을 보이는 13개 시도 양육시설의 대학등록금 평균금액은 323만원이며, 시도 및 보호체계에 따라 지급여부와 지급액이 달라 현재 자립정착금 제도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보호종결아동이 학업비용으로 자립정착금을 사용한 비용은 223만원, 지자체에서 대학등록금의 첫 학기 지원금 323만원, 디딤씨앗통장 중 '11년부터 '13년까지 학자금을 이유로 해지한 적립금 300만원을 더한 총 846만원은 조사결과 대학등록금과 교재비를 마련한 비용의 약 1.8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약 2학기 정도의 등록금 수준이다.

앞서 수령한 자립정착금을 기준으로 제안한 최소 필요금액이자 현재 최대 자립정착금 지급액인

500만원,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323만원, 그리고 디딤씨앗통장의 300만원까지 활용할 수 있다면, 약 2.5학기의 등록금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하지만 이후 5.5학기까지 2,464만원(실제 학업에 대한 자립비용 448만원×5.5학기)의 등록금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또한 대부분 학업비용은 한국장학재단을 활용하는데, 생활고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서 학업에 소홀해진 보호종결아동은 성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학업비 지원을 연속적으로 받기 어려워진다.

라. 의료비용

자립생활을 하다보면 긴급하게 병원에 가야할 일이 생길 수 있지만 그 비용을 혼자 감당할 수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는 사례들이 있다. 텔파이조사를 통해서도 종결이후 자립기반이 견고하지 못한 상황에서 의료비 지출은 자립생활을 위협하게 되어 보험료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었다.

종결이후 조사대상자가 사용한 의료비 총액은 115만원으로, 자립정착금 69만원과 그 외 추가비용으로 46만원을 사용하였다. '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의하면, '13년 가구당 의료비 평균 지출금액은 148만원으로 월 12만원을 사용하였지만, 조사대상자가 사용한 의료비는 115만원으로 월 95천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5천원의 차이를 보였다. 또한 '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30세 미만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의료비 지출이 적게 나타나 상시적으로 필요한 비용은 아닐 수도 있지만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지출이 발생할 수 있는 긴급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진다.

3. 소결

지난 1981년 아동복지법 상 시설퇴소아동 대상 생업자급에 대한 지급의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 및 적정금액에 대한 기준을 언급하지 않았으며 이후 지금까지도 그 기준에 대한 논의가 부재하였다.

그리하여 본 장에서는 자립정착금의 적정수준을 위한 최소 자립비용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립정착금의 최소비용은 500만원으로써 일부 시도 및 보호체계에 대한 자립정착금을 상향 조정하여 동일한 정착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수령한 자립정착금의 실제 사용금액과 그 외 추가 지출된 비용을 근거로 총 자립비용을 산출하였고, 총 447만원의 자립비용이 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 결국 본 장의 내용을 통해 최소 자립비용의 근사치이자 현재 지급되고 있는 최대 자립정착금인 500만원의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둘째, 더 나아가 개별 지출항목을 근거로 확인된 자립비용은 보호종결아동의 특성과 주변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자립정착금의 지원이 필요하다. 초기 자립생활을 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도나 금액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주거비용, 학업비용, 생활비용, 의료비용, 4가지로 구분하였다. 주거는 <표 V-7> 과 같이 초기정착 시 자립의 기반이 되는 가장 우선적인 지원이 필요한 항목은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가 1순위로 나타났다. 생활비용이나 학업비용 등의 필요항목들은 주거가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의료비용은 긴급한 상황에서의 지원을 위한 방안마련이 필요하다.

<표 V-7> 초기정착 시 필요항목(순위별)

구분	지출항목		
1순위	①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	② 대학등록금 및 교재비	③ 생필품 등 생활비
2순위	① 생필품 등 생활비	② 가전제품 및 가구집기 구입비	③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
3순위	① 생필품 등 생활비	② 가전제품 및 가구집기 구입비 /식료품 등 주부식비	③ 수도광열비 등 관리비



VI. 결론 및 제언

VI. 결론 및 제언

보호아동은 입소와 동시에 '자립준비와 자립'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한다. 이들에게 자립이란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와도 같다. 이 숙제를 푸는 속도는 개별아동이 가진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어떤 경우는 숙제를 다 풀기도 전에 자립에 직면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보호종결 이후 자립 시 이들에게 주어지는 자립자금은 자립정착금과 디딤씨앗통장, 개인후원금통장이 있다. 이 자립자금은 종결을 앞둔 아동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립자금으로 활용된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하다. 특히 디딤씨앗통장이나 개인후원금은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금액이 많아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유동적이다. 그에 비해 자립정착금은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초기 자립을 위한 자산이다. 본래의 특성은 보호지역과 상관없이 보호체계 내에서 자란 보호종결아동이라면 누구라도 자립정착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상 기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뿐 아니라 그 사용용도에 대해서도 그 어떤 제한도 받지 않아 자립을 위한 자금으로 매우 긍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음에 틀림없다.

지금까지 보호종결아동이 자립정착금으로 자립을 준비하는데 매우 부족하다는 것에 끊임없는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하지만 그 문제를 인식하는 것에 비해 이들에게 주어진 정착금이 얼마나 적정한지, 얼마나 필요할지에 대한 물음은 부재하였다.

보호아동이 아닌 아동 또한 유학을 가거나 부모로부터 독립해야 할 때에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부분은 주거마련이다. 주거를 마련하는 것 뿐 아니라 주거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이들은 부모로부터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거나 독립시기를 유예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보호종결아동에게도 자립을 유예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있지만 그 기준은 매우 제한적이다. 이들에게 자립을 유예할 수 있는 제한된 자립준비의 조항이 아닌, 현실적인 자립을 할 수 있게끔 도울 수

있는 보호종결아동만의 자립 요건이 필요하다.

이러한 안정적인 초기자립의 요건을 채우기 위한 자립정착금 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국가지원의 표준화된 자립정착금 지급

앞서 언급하였듯이, 표준화된 자립정착금에 대한 지원은 가장 중요하며, 보호종결아동의 자립에 있어 초기 자립의 질을 좌우한다. 지난 '05년 자립정착금 제도가 지방이양사업이 되면서 보호아동의 자립지원은 지자체의 책임이 되었고, 이후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각기 다른 기준을 가지고 보호종결아동에게 정착금이 지급되었다.

본 연구는 앞서 조사결과를 통해 자립정착금 적정수준에 대한 최소비용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 모든 보호체계 내 보호종결아동의 자립을 위해서는 자립정착금 500만원이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수령한 자립정착금 393만원 중 실제 지출금액인 301만원과 그 외 추가적으로 지출한 146만원을 더한 447만원이 총 자립비용을 사용되었으며, 현재 최대 자립정착금 지급액인 500만원의 근사치로써 보호종결아동 자립비용의 최소값으로 볼 수 있다.

'13년도 지자체에서 지급한 자립정착금은 약 66억원이다. 위의 자립정착금 최소 자립비용을 적용하여 필요비용을 산출하면, '13년도 기준 보호종결아동 2,206명에 대한 자립정착금 약 110억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13년도 지자체에서 지원한 자립정착금은 66억원에 불과하며, 이는 1,348명에 대한 지원으로 전체 보호종결아동 중 61.1%에 해당한다.

'14년 보호종결아동은 총 2,304명으로 아동양육시설 957명, 공동생활가정 73명, 가정위탁 1,274명이다(2014. 12. 18.기준). 각 지역에서 1인당 지원하는 자립정착금을 통해 산출해보면, '14년 보호종결아동에 대한 자립정착금은 총 115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지자체 지원이 부재한 지역을 제외하면 59.6억원의 자립정착금이 지원되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표 V-8〉 2013년 보호아동 및 보호종결아동 현황

(단위: 명, 백만원)

	2013년 보호아동 현황 ¹						'13년 종결아동
	계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이상*	
계(명)	14,566	3,067	3,039	3,249	2,935	2,276	2,206
아동양육시설	5,363	1,309	1,123	1,098	915	918	1,065
공동생활가정	761	191	192	180	129	69	85
가정위탁	8,442	1,567	1,724	1,971	1,891	1,289	1,056
자립정착금 지원 예산액(백만원)	72,830	15,335	15,195	16,245	14,675	11,380	11,030

[출처] 2013년 보호아동현황.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 및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전산시스템.(2013. 12. 31. 기준)

둘째, 위의 자립정착금 500만원은 그야말로 최소 자립비용이라고 볼 수 있다. 보호종결아동이 자립하는 데에는 500만원 이상의 지출비용이 든다. 또한 개인이 처한 상황이나 환경에 영향을 받아 자립정착금을 사용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종결아동의 특성과 주변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자립정착금 지원이 필요하다. 자립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은 주거비용, 학업비용, 생활비용, 의료비용 등으로 구분되지만, 실제로 보호종결아동은 자신의 상황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한, 두 가지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결국 그 밖의 자립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마련하거나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그마저도 여의치 않다.

현재 지자체 예산과 단체장의 의지가 반영되어 책정될 수밖에 없는 자립정착금 상이함에 대한 문제는 자립아동의 생활의 질을 좌우하게 되기 때문에 자립정착금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근거가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종결되기 전까지 방임했던 부모에게 자립정착금을 착취당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자립정착금 최소비용과 개별 지출항목과 관련하여 최소비용을 제안하였지만, 향후 물가변영 등을 고려한 자립정착금의 적정수준에 대한 세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진다.

2. 안정적인 자립지원을 위한 별도의 주거지원 확대

초기자립 시 가장 필요한 지원은 주거이다. 이뿐 아니라 실제 자립정착금으로 사용한 대부분의 금액도 주거를 마련하는데 사용하였다. 하지만 자립정착금으로 마련된 주거도 안정적이기보다는 불안정한 주거형태를 띄고 있다.

본 연구에서 종결당시 아동의 주거형태는 월세 비율이 가장 높았다. 현재 주거형태의 월세비율이 다소 낮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월세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불안정한 주거형태로 인해 자립생활의 질을 낮출 수 있어 안정적인 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지원이 시급할 것으로 보여 진다.

물론 일부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LH전세주택이나 자립지원시설에서 거주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LH전세주택지원은 지원연령이 제한되어 있어 연장종료가 되는 시기에 보호종결아동은 연장보호와 주택지원에 대한 부분을 선택해야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된다. 이 뿐 아니라 가정위탁 보호종결아동에 대한 종결 후 주거지원이 미비하다. 특히 친인척 또는 일반 가정위탁 보호종결아동의 경우에는 위탁종결과 함께 독립된 가정을 꾸리는 경우가 발생하여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주거지원도 필요하다.

3. 자립정착금 지원체계 및 사후관리시스템의 일원화

자립정착금에 대한 관리주체는 본인이 되어야 하지만, 자립정착금을 활용함에 있어서 정착금 신청과 연계된 교육과 모니터링이 가능한 사후관리체계가 필요하다.

현재 보호종결아동의 사후관리는 각 시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지원전담요원들만의 몫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자립정착금은 보호가 종결된 이후 지자체에서 아동계좌로 바로 입금해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현재의 지급과정으로는 보호종결아동의 욕구를 반영한 자립정착금의 활용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이렇듯 현재 정착금이 운영되고 있는 방식으로는 정착금에 대한 사용계획은 가능하나 이후 사용하는 과정 중 개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 보편적 문제이며, 이러한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

자립정착금 지원체계와 사후관리체계의 일원화를 통해 종결이후 연락두절에 대한 예방책이 될 수 있으며 자립정착금을 지원하는 과정 안에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이끌어내는 데에 용이할 수 있다. 하지만 기관별 1명의 자립지원전담요원이 자립정착금과 사후관리를 함에 있어 전담요원의 업무과다

로 인해 사후관리에 대한 질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들 보호체계에 대한 명확한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자립지원인력에 대한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진다.

4. 실효성 있는 자립정착금 교육과 표준화된 교재 마련

자립정착금 사용계획 시 도움을 준 사람으로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4명 중 1명 꼴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시설종사자로 매우 제한적이어서 돈 관리 부분에 대한 밀접한 지지체계 형성이 중요할 것이라 보여 진다. 가정위탁의 경우 종결이후에도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가정위탁지원센터 담당자 외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에 도움을 주고 있는 원가족, 위탁부모를 통해 보호종결아동의 생활비와 자립준비에 대한 비용을 구분하여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또한 관련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진다.

자립정착금 사용내역을 살펴보았을 때,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로 가장 많이 사용하였으며, 다음으로 생필품 등 생활비, 가전제품 및 가구집기 구입비, 대학등록금 및 교재비, 교통통신비 등의 순으로 사용하였다. 이는 보호 중 자립정착금으로 가전제품 및 가구집기 구입비(1순위)와 수도광열비 등 관리비(2, 3순위)로 사용하겠다는 계획과는 매우 다른 결과였다. 이는 실제 자립에 필요한 항목들에 대한 부분과 현실적인 부분에 간극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자립정착금 미사용분에 대해 조사대상자의 절반이상은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응답하고 있으며, 사용하지 않을 것, 결혼자금, 대학등록금 및 교재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다수의 보호종결아동의 특정한 목적달성을 위해 자립정착금을 가지고 있었으나, 일부 목적 없이 자립정착금을 모으는 경우도 있어 저축과 목적에 맞는 지출에 대한 계획이 필요함에 따라 보다 현실적으로 자립을 준비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과 보호종결아동의 특성과 주변 환경을 고려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보호 중 받았던 교육 중 자립정착금과 경제교육을 받은 비율은 각각 54.8%, 24.8%였다. 이 두 가지 교육은 돈 관리 문제와 직결된 매우 현실적인 문제일 뿐 아니라 안정적인 자립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중요한 교육이기 때문에 자립준비시기를 고려한 교육주체와 교육내용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립정착금을 활용함에 있어서 정착금 신청과 연계된 교육과 모니터링이 가능한 사후관리체계는 안정적인 미래 준비와 계획을 위한 진로교육과 경제 및 자립정착금 교육과 관련된 표준교안 개발이 선행되어야해야 한다.

5. 자립기금 확보를 통해 긴급서비스 지원

미국에서는 1986년 사회보장법의 개정으로 자립프로그램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어있다. 자립프로그램 참여아동 20,000명을 기준으로 1억 4천만 달러(한화 1,432억원)의 재정은 연방정부의 재정에 대한 분담금 20%를 주정부가 매칭하여 마련된다. 이를 토대로 보호아동 뿐 아니라 시설퇴소아동의 종결 이후 삶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차후에는 분산된 자립지원금에 대한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며, 이는 보호종결아동의 안정적인 자립생활을 보장하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후관리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여 진다.

종결 이후 자립생활 중 긴급하게 경제적인 지원을 받아야 할 때가 발생하기도 한다. 실태조사를 통해서도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나 단체여부에 대해 조사대상자의 약 30%가 없다고 응답하여 보호종결아동의 3.5명 중 1명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해도 도움을 받을 수 없다. 특히 의료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큰 비용이 필요한 의료비는 혼자 부담하기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다. 의료적인 문제는 즉각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후 건강상 악화되거나 더 큰 비용이 필요할 수 있어 보호종결아동의 긴급지원이 필요하다.

이뿐 아니라 종결당시 아동의 기초생활수급비율은 37.8%, 현재 수급비율은 27.0%이다. 이 외에 비수급자이면서 빈곤한 자립아동들이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할 때에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다. 이러한 빈곤의 사각지대에 있는 자립아동들까지 포함할 수 있는 적극적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와 관련하여 의의와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동안 퇴소아동의 자립지원에 대한 연구는 존재하나 자립정착금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그 사용실태와 산정기준에 대한 연구는 부재하였다. 우리는 이번 연구를 통해 종결 후 자립을 위해 사용했던 지출항목과 금액, 그 외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출항목과 필요금액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자립하는데 필요한 전체비용을 파악하고, 자립의 의미와 기준에 근거하여 자립 필요금액에 대한 최소비용을 제안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물론 향후 자립정착금 적정수준에 대한 세밀한 연구는 필요하다.

둘째, 실태조사는 모집단에 비해 적은 인원의 참여로 진행되어 가정위탁 보호종결아동에 대한 대표성이 부족하다. 하지만 가정위탁이라는 특성을 파악하고 아동복지시설과의 단순비교를 통해 그 차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 진다.

셋째, 지금까지 보호기관에는 자립을 준비하는 데에 자립정착금이 금액적으로 매우 부족하다는 데에 문제가 있어왔다. 하지만 필요한 자립정착금이 얼마인지에 대한 그 물음을 답하기에는 그동안의 연구가 부재하였다. 본 연구는 그 물음을 답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써 의미가 있다고 보여 진다.

넷째, 지난 '13년 하반기부터 아름다운재단과 함께 보호종결아동 대상 자립정착금 지원을 위한 캠페인을 시작으로 '14년도 자립정착금 지원 시범사업과 연구사업이 연말까지 진행되었다. 해당사업과 더불어 여러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 결과 '15년도에는 6개 시도가 자립정착금에 대한 지원대상을 공동생활가정 및 가정위탁으로 확대하였으며(〈표 V-9〉), 더불어 9개 시도의 자립정착금 지원액이 상향조정되었다. 또한 그 중 5개 지역에서는 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진다. 다만, 보호종결아동의 안정적인이고 지속적인 자립정착금 지원을 위한 중앙으로의 환원은 불발되었으나, 지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엿보이는 대목이라고 보여 진다. 특히 공동생활가정은 자립정착금을 지원하는 시도 비율이 64.7%에서 100%에 이르러 매우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 가정위탁 또한 '14년 자립정착금을 지원하는 시도 비율이었던 41.2%에 비해 15년에는 70.6%로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지급인원을 제한하고, 시도보다는 시군구의 예산책정비율이 더 높은 것을 감안하면 전체 보호종결아동의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역부족이다. 특히 강원지역의 경우 2015년도에도 도 단위의 지원 비율은 0%이고, 모든 자립정착금은 시군에서 100% 부담하고 있었고, 그 지원액도 100만원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강원도 내 두 개의 시군에서는 가정위탁 종결아동에 대한 자립정착금 지원할 예정이지만, 이는 예산과 지원인원이 매우 한정적이라는 측면에서 보호종결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정부와의 예산 매칭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이고 지속적인 자립정착금 지원 등 자립지원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여 진다.

〈표 V-9〉 '13~'15년 자립정착금 지급 및 계획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2015년 예산	
	2013	2014	2015	2013	2014	2015	2013	2014	2015	인원(명)	금액
서울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295	1,475
부산	300	400	500	300	400	500	300	400	500	282	1,410
대구	300	300	300	300	300	300	-	-	300	70	210
인천	500	500	500	500	500	500	100	100	300	124	482
광주	400	400	400	400	400	400	100	100	100	111	273
대전	300	300	300	-	-	300	-	-	300	34	102
울산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32	160
세종	500	500	500	-	-	500	-	-	500	2	10
경기	500	500	500	500	500	500	- (시군별)	- (시군별)	500	279	1,395
강원	100	100	100-300 (시군별)	300 (시군별)	300 (시군별)	300 (시군별)	-	-	300 (시군별)	36	60
충북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135	675
충남	500	500	500	500	500	500	-	-	-	70	350
전북	300	300	300	300	300	300	-	-	-	87	261
전남	300	300	300	-	-	300	-	-	-	112	336
경북	500	500	500	-	-	500	-	-	-	90	450
경남	300	300	500	-	-	500	-	-	500	100	2,500
제주	300	500	500	-	500	500	300	500	500	57	285
합 계	-	-	-	-	-	-	-	-	-	1,916	10,434

[출처] 2013~2015년 자립정착금 지급 및 계획. 17개시도 공무원 대상 전화조사 실시(2014. 12. 23. 기준)

* 대구: 시에서 지원하는 300만원 외 4개 군구에서는 100만원 추가지급

* 강원: 시군에서 100%부담

자립정착금은 보호가 종료되면서 아무 조건 없이 보호종결아동의 자립을 위해 주어지는 ‘사회 내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자산’의 한 형태이다. 그 금액이나 지급여부가 상이하지만 모든 보호체계 내 아동은 자립정착금을 받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자립정착금을 보호종결아동에게 있어 주거 안정에 필수적인 ‘종자돈’이자, 불특정한 미래를 위한 ‘비상금’이며, 현재 자립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생활비’로써 그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그 기능을 온전히 담당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자립정착금에 대한 기준마련과 적용, 그 외 국가적 차원의 자립지원 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미숙(2014).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의 현황과 발전방향” 「2014년 제4회 자립지원포럼: 아동의 자립기반 실태와 과제 - 자립정착금과 아동발달지원계좌를 중심으로」, 49-66.
- 노충래(2001). “한국 및 미국의 요보호아동의 자립을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 분석” 「한국아동복지학」, 15(1), 51-95.
- 변숙영(2013). “텔차이조사를 통한 가정위탁지원 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직업교육연구」, 32(4)
- 신혜령 · 노충래 · 정익중 · 이동욱 · 곽유정(2012). 「2012년 아동양육시설 퇴소 · 연장아동 자립 실태 및 욕구조사」.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사업단.
- 윤혜미 · 최은희(2013). 「가정위탁아동 가정보호실태조사 및 아동 · 부모용 지침서 개발」. 보건복지부.
- 연합뉴스. 1992. 2. 26.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지원대책 시급”.
- 중앙일보. 2014. 4. 8. “500만원 쥐고 보육원 나서는 그들”
- 통계청 · 금융감독원 · 한국은행 보도자료. 2014년 가계금융 · 복지조사 결과.

PART 1. 참여자 특성

■ 다음은 조사대상자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v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을 선택하십시오.

- ① 남성 ② 여성

2. 보호기간 중 살았던 지역을 선택하십시오.

※ 보호기간: 시설 또는 조부모, 친인척의 도움이 있었던 기간

-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 ⑨ 강원
⑩ 충북 ⑪ 충남 ⑫ 전북 ⑬ 전남 ⑭ 경북 ⑮ 경남 ⑯ 세종 제주

3.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을 선택하십시오.

-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 ⑨ 강원
⑩ 충북 ⑪ 충남 ⑫ 전북 ⑬ 전남 ⑭ 경북 ⑮ 경남 ⑯ 세종 제주

4. 귀하가 보호받았던 장소를 선택하십시오.

- ① 아동양육시설 ② 공동생활가정 ③ 가정위탁(4-1번으로 가시오) ④ 기타()

※ 아동양육시설: 지역별 아동복지시설

※ 공동생활가정: 만18세까지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사는 소규모 그룹홈

※ 가정위탁: 일정기간 동안 친인척의 집에서 지냈거나 위탁부모의 가정에서 지냈던 경우

4-1. 가정위탁의 유형을 선택하십시오.

- ① 일반 가정위탁 ② 대리 가정위탁 ③ 친인척 가정위탁

※ 일반 가정위탁: 친인척이 아닌 일반가정에서 살았던 경우

※ 대리 가정위탁: 조부모와 함께 산 경우

※ 친인척 가정위탁: 삼촌, 고모, 이모, 큰아버지 등과 함께 산 경우

5. 귀하는 장애가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6. 현재 귀하의 최종학력을 선택하십시오.

- ① 중졸 이하 ② 고교 중퇴 ③ 고졸(검정고시 포함)
④ 전문대(2,3년제) 재학(휴학포함) ⑤ 전문대졸(2-3년제) ⑥ 대학교(4년제) 재학(휴학포함)
⑦ 대졸(4년제) ⑧ 대학(교) 중퇴 ⑨ 대학원 재학(휴학포함)
⑩ 대학원졸 이상

7. 귀하의 시설 또는 가정위탁 보호기간을 기재하십시오. _____년 ____개월 (○ 모른다)

8. 귀하가 시설을 퇴소하거나 위탁가정보호가 종결된 년도는 언제입니까? _____년

★15-1. 정착금으로 사용한 지출항목과 지출금액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수령한 정착금과 표에 기재한 정착금이 같아야 함)

구 분	금 액
① 대학등록금 및 교재비	(예) 20 만원
② 주거마련을 위한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	만원
③ 가전제품 및 가구집기 구입비	만원
④ 생필품 등 생활비	만원
⑤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을 위한 학원등록비	만원
⑥ 식료품 등 주부식비	만원
⑦ 수도광열비 등 관리비(수도세, 전기료, 난방비, 가스비 등)	만원
⑧ 의료비	만원
⑨ 교양오락비(여행, 문화여가 등)	만원
⑩ 피복신발(의류, 신발)	만원
⑪ 결혼자금	만원
⑫ 교통통신비	만원
⑬ 유흥비	만원
⑭ 부모, 친척, 형제에게 빌려줌	만원
⑮ 친구에게 빌려줌	만원
⑯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가족 등 본인 외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함 (예) 조부모의 의료비로 사용했을 경우	만원
⑰ 사용하지 않았거나 잔액이 있음(저축포함) (15-1-1번으로 가시오.)	만원

15-1-1. 저축(미사용분)한 자립정착금은 추후 어떻게 사용하실 예정입니까?(중복응답가능)

- | | |
|-----------------------------------|--------------------------------------|
| ① 대학등록금 및 교재비 | ② 주거마련을 위한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 |
| ③ 가전제품 및 가구집기 구입비 | ④ 생필품 등 생활비 |
| ⑤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을 위한 학원등록비 | ⑥ 식료품 등 주부식비 |
| ⑦ 수도광열비 등 관리비(수도세, 전기료, 난방비, 가스비) | ⑧ 의료비 |
| ⑨ 교양오락비(문화여가 등) | ⑩ 피복신발(의류, 신발) |
| ⑪ 결혼자금 | ⑫ 교통통신비 |
| ⑬ 유흥비 | ⑭ 부모, 친척, 형제에게 빌려줌 |
| ⑮ 친구에게 빌려줌 | ⑯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가족 등 본인 외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 |
| ⑰ 일부 또는 전액 사용하지 않음(저축포함) | ⑱ 기타() |

⑱ 기타()	만원	
합 계	수령한 자립정착금	자립정착금
	(자동입력) 만원	(자동입력) 만원

30. 퇴소(위탁종결) 당시, 초기정착을 하는데 필요한 항목은 무엇이었습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① 대학등록금 및 교재비		② 주거마련을 위한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
③ 가전제품 및 가구집기 구입비		④ 생필품 등 생활비
⑤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을 위한 학원등록비		⑥ 식료품 등 주부식비
⑦ 수도광열비(수도세, 전기료, 난방비, 가스비) 등 관리비		⑧ 의료비
⑨ 교양오락비(문화여가 등)		⑩ 피복신발(의류, 신발)
⑪ 결혼자금		⑫ 교통통신비
⑬ 기타()		

31. 퇴소(위탁종결) 이후부터 지금까지 본인에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 있었습니까?

- | | |
|-------------------------|-----------------|
| ① 시설종사자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 담당자 | ② 원가족(친부모, 친형제) |
| ③ 위탁부모(조부모, 친인척 포함) | ④ (시군구) 담당 공무원 |
| ⑤ 시설친구 또는 시설선후배 | ⑥ 이성친구 또는 배우자 |
| ⑦ 없다 | ⑧ 기타() |

32. 퇴소(위탁종결) 이후 자립생활 할 때에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무엇입니까?

- | | |
|--------------------------|---------------------------|
| ① 원가족 등 연고자의 부재 | ② 생활비 등 자립자금 부족 |
| ③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의 부재 | ④ 시설 또는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사회적 편견 |
| ⑤ 미래의 불확실성(진로, 장래희망의 부재) | ⑥ 안정적인 주거지의 부재 |
| ⑦ 기타() | |

33. 퇴소(위탁종결) 이후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단체 또는 사람이 있습니까?(중복응답가능)

- | | |
|---------------------|-------------------|
| ① 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 | ② 원가족(친부모, 친형제자매) |
| ③ 위탁가정(조부모, 친인척 포함) | ④ 사회복지단체 및 재단 |
| ⑤ 친구 | ⑥ 시설선후배 또는 시설친구 |
| ⑦ 이성친구나 배우자 | ⑧ 후원자 |
| ⑨ 없다 | ⑩ 기타() |

34. 퇴소(위탁종결) 후 자립(사회 내 정착)하기까지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① 퇴소 후 1년 미만 | ② 퇴소 후 1년 이상 2년 미만 |
| ③ 퇴소 후 2년 이상 3년 미만 | ④ 퇴소 후 3년 이상 4년 미만 |
| ⑤ 퇴소 후 4년 이상 5년 미만 | ⑥ 퇴소 후 5년 이상 |

35. 귀하는 현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어느 정도 자립에 가까워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자립하지 못했다	자립하지 못했다	보통이다	자립하였다	완전히 자립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36. 퇴소(위탁종결) 당시와 비교하였을 때, 자립생활이 얼마나 안정적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불안정하다	불안정하다	보통이다	안정적이다	매우 안정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37. 현재 자신의 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 자립정착금 사용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발 행 : 2014년 12월 29일 초판

發行人 원장 류호영

發行處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사업단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91 센트럴프라자 7층

전 화 : 02) 715-4634

팩 스 : 02) 715-4636

홈페이지 : www.jarip.or.kr

편집/인쇄 : (주)현대아트컴 02)2266-4482

© 본 교재의 무단복제행위를 금합니다.



